



제 2 부

주요 언론조정 · 중재 사례

- 제2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13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총 2,433건의 조정사건과 190건의 중재사건 중 50건의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합니다. 주요 사례는 언론조정·중재사건이 접수된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수록되었습니다.
- 연구 목적으로 인용하고자 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또는 익명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사 례 1

국내 한 제약회사가 자사의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신고한 전직 직원을 협박했다고 보도하면서 신고자인 신청인의 신원과 사생활을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36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1. 15.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국내의 한 제약회사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수사기관에 폭로한 전 직원과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를 통해 제보자인 본인의 신원과 여자관계 등이 드러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인터넷 경향신문 :** 『○○제약, 내부제보자 입 막으려 이런 짓까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1일자)

■ **내 용 :** 국내 ○위 제약업체인 ○○제약 전·현 임직원 7명이 구매대행(에이전시) 업체를 기고 전국 병·의원에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제약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제보자에 대한 협박을 일삼고 증거자료 삭제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1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약 허 모 전무(55)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 모 전 상무(56)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제약과 계약을 맺고 리베이트 제공 역할을 맡은 에이전시 4곳의 대표이사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00여개 거래처 병·의원에 48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제약은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했다. 과거 영업사원을 통해 병·의원에 현금이나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단순한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서는 판촉을 대행하는 에이전시 4곳을 내세워 금전 외에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고 인터넷 강의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됐다.

○○제약은 에이전시(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리베이트 대상 병원 원장들에게 1,1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1,600만 원 상당의 오디오 세트를 제공했다.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병원 원장 자녀의 어학연수비 1,400만 원과 병원 소속 의사 가족의 해외여행비 790만 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해 병원 소속 의사에게 강의를 부탁한 뒤 강의료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무상 제작해주거나 병원의 지하철·버스 광고비를 대신 내준 사례도 있었다.

특히 ○○제약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제보자의 입을 막기 위해 제보자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차장 정 모 씨(44)는 퇴사한 직원 이 모 씨가 지난해 9월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씨 집을 방문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진술을 반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가 말을 듣지 않자 정씨는 본격적인 협박에 나섰다. 정씨는 이씨의 여성 관계 관련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이씨를 불러낸 후 “노트북 복원을 다했는데 재미있는 자료(피해자 여성관계 관련자료)가 많더라. 내일 경찰관 대동하고 잡으러 올 것”이라며 그를 협박했다. 정씨는 이어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면 네가 지은 죄에 대해 법무법인 통해 끝까지 고소하겠다.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게 하겠다”고 공갈을 쳤다.

정씨는 심지어 이씨의 가족에 대해서도 협박을 시도했다. 정씨는 이씨의 부인 박 모 씨를 찾아가 “남편이 언론과 검찰에 제보했다는데 사실이냐, 아니면 남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해달라, 아니면 제보한 것으로 알고 남편을 구속시키겠다. 이미 구속영장 청구한 상태다”며 이씨가 작성한 각서를 보여줬다. 각서에는 ○○제약DCC와 관련된 자료를 일체 누설하지 않고 이를 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정씨는 각서를 메시지로 부인에게 전송하며 “(이씨의) 노트북 자료를 보면 가정파탄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도 했다.

줄기찬 회사의 협박에 이씨는 결국 굴복했다. 정씨는 서울 서초동의 한 일식집에서 이씨를 만나 자필로 미리 워드까지 작성해 준비한 진정취하서와 A4 2장을 내밀었다. 정씨가 내민 취하서에는 ‘권고사직까지 당하는 바람에 서운한 마음에 복수심만 불탔기 때문에, ○○제약에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제가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주로 관련 직원으로부터 들었거나 업계에 떠도는 소문 등을 토대로 재정리 하였던 자료라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순간적인 감정에 복받쳐 제가 근무했던 회사를 음해하게 되었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종전에 했던 진정 내용은 제 추측에 기하였던 점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진정취하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씨는 이씨가 쓴 취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냈다.

○○제약은 증거 인멸에도 나섰다. ○○제약은 올해 10월 서울 ○○동 ○○제약 본사에 리베이트전담수사반의 압수수색팀이 들이닥치자 서버에서 처방금액 100만 원 이상의 일반병원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와 종합병원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2월 4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1. 2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사 례 2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19·120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2. 01.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근무하는 신청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여 채권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소속 경찰서 서장이 본인을 공갈 등으로 직무 고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신청인에 대한 허위투서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일이며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며 추후보도 및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무혐의 사실을 알리는 추후보도를 게재함과 동시에(조정성립사항 1. 참조), 보도내용이 지나치게 단정적임을 인정해 신청인에게 7,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조정성립사항 2. 참조)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협박해 돈 갈취』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0일자 20:00)

- **내 용 :** ▷ 앵커 :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찰들이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잇따라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찰이 있는가 하면 뺑소니 피의자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경찰도 있습니다. 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32살 김 모 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을 통해 서울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정 모 경위를 만났습니다.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정 경위는 김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김 모 씨(피해자) : (돈을 빌려달라고) 하루에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씩 잡아놓고 아니면 전화를 몇 십번 한다든지….

▷ 기자 : 수백만 원씩 빌려준 돈은 모두 1천5백만 원, 이 가운데 정 경위는 6백만 원은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갚지 않았습니다.

또 정 경위는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이 모 씨에게 9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 씨는 정 경위가 돈을 갚지 않자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정 경위는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이 씨를 찾아와 할부금을 대신 내라고 협박하고 2백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 이 모 씨(피해자) : 저희 집에 수차례 찾아와서, 집 앞에 잠복하고 조직폭력배들과 오고 그래서 (돈을 주었습니다).

▷ 기자 : 정 경위는 결국 내부감찰에 적발돼 해임됐습니다. 교통사고조사계 소속의 또 다른 경찰도 뺑소니 사고 피의자를 협박해 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직원 비리가 잇따르자 ○○경찰서장은 5년 이상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한 직원 8명을 모두 전보조치 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SBS-TV <SBS 8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송 진행자 (앵커)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표시 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가. 제 목 : <“조직폭력배 동원… 협박해 돈 갈취한 경찰” 보도내용 무혐의로 밝혀져>

나. 본 문 : 본 방송은 2011년 5월 30일 <SBS 8 뉴스> 프로그램에 “돈을 갚지 않겠다며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고, 돈을 뜯기 위해 협박도 서슴치 않은 경찰이 있습니다. 영화 속 부패 경찰 얘기가 아닙니다” 라는 내용으로 서울○○경찰서 소속 교통조사계 정 모 경위가 해임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경찰서장이 정 모 경위를 공갈 등으로 직무고발한 사실이 있으나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서울○○경찰서 교통조사계 정 경위는 2012년 11월 14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1. 보도문

가. 제 목 :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 협박해 돈 갈취’ 관련, 추후보도문

나.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11년 5월 30일자 SBS 8시뉴스 프로그램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 협박해 돈 갈취’ 제하의 보도에서 “서울○○경찰서 교통조사계 정 모 경위가 조폭을 동원하여 특정인을 협박, 돈을 갈취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정 경위는 위 내용과 관련 2012년 11월 14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3년 2월 22일까지 <SBS 8시 뉴스> 프로그램 말미(기상정보 전)에 진행자의 멘트로 보도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또한 제1항의 보도문을 SBS 홈페이지 원조정대상보도 하단에도 박스처리하여 별도 게재하고, 해당 보도문을 네이버, 네이트 등 포털에도 전송하여 노출되도록 한다.
3.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 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013. 02. 13.

조정성립사항 2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2월 28일까지 금 7,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그들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2. 1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추후보도문]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협박해 돈 갈취 관련’』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22일자 20:00)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1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손해배상금 7,000,000원 지급

사 례 3

신청인 회사가 산업폐기물인 절삭유 등이 함유된 알루미늄 부산물을 그대로 방치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경남조정1·2, 2013경남조정3·4(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 주식회사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남도민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13. 02. 05.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가 산업폐기물을 방치해 연마유, 절삭유 등 엄청난 양의 독극물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알루미늄 분철은 독극물이 아닌 재활용품이고, 절삭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사천시청의 현장 확인 결과 절삭유 등이 흐르거나 흘러보낸 흔적이 없었음이 확인됐으며, 정정보도 및 총 2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경남도민신문 :**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 심각』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3일자 3면)

■ **내 용 :** 행정의 이원화로 산업폐기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해 1년 여 동안 연마유와 절삭유 등 엄청난 양의 독극물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켜도 단속은커녕 사천시 관계자는 연마유와 절삭유가 지정 폐기물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업체만 두둔해 주변의 빈축을 사고 있다.

사천시는 ○○면 ○○리 ○○-○ 외 1필지에 2012년 1월 1일자로 알루미늄 부산물을 압연·압출 및 연산제품 제조업을 하는 ○·○○○·○○(주)에 공장등록을 허가했으나 그 제품 속에 함유된 연마유와 절삭유 금속가공물은 지정폐기물로서 낙동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등록 후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지도 및 단속한 사실도 없고 교육조차 시킨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업체는 ○○○로부터 기름이 함유된 알루미늄 부산물을 일반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싣고 와 시멘트 바닥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쌓아두고 생산된 제품마저도 바깥에 그대로 방치해 기름이 흘러내리는데도 사천시나 낙동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단 한 차례도 단속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천시 폐기물관리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고도 업체를 두둔하면서 기자에게 폐기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등 단속의지가 전혀 없는 가운데 유분의 80~90%는 바닥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상태다.

○·○○○·○○(주)은 지난해 12월 27일자로 7000kg을 김해시 ○○읍 ○○리에 주소를 둔 (주)○○○○에 위탁처리를 했으나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은 폐기되는 유량이 맞는지 그 어떤 조치도 없는 채 묵인하고 넘어가고 있다.

아울러 시 행정당국은 ○·○○○·○○(주가 ○○○에서 가져오는 연마유와 절삭유가 얼마만한 양이 사용되고 얼마만한 양이 수거됐는지를 확인해야 무단방출을 막을 수 있지만 이조차 따지질 않고 있는데다 이원화된 행정에 단속공무원마저 업체를 두둔하고 있어 1년에 엄청난 양의 유분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정대상보도 2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 심각』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1. 경남도민신문의 건

가. 피신청인은 2013년 1월 23일 경남도민신문 사회(3)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사천 알미늄 부산물 업체 환경오염심각”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 대상 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인터넷 경남도민신문의 건

가. 피신청인은 인터넷 경남도민신문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2)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 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 (2)를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가. 제 목 :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심각” 관련 정정보도문

“○○○○○○(주) 연마유 절삭유 마구 흘러보내” 관련 사실과 다르며 발생한 절삭유는 적법절차를 밟아 배출하였으므로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2013년 1월 23일자 사회(3)면에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심각”이라는 제목으로

① “산업폐기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해 1년 여 동안 연마유와 절삭유 등 엄청난 양의 독극물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분철은 독극물이 함유된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품으로서 2012년 12월 기준 톤(TON)당 단가가 1,106,000원으로 매입하였으며 알루미늄 분철에 묻어있는 절삭유를 압축하여 발생한 절삭유는 적법 처리하여 폐기물관리대장에 명백한 자료가 있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킨 사례가 없음이 확인된 바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② “사천시 관계자는 연마유와 절삭유가 지정 폐기물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업체만 두둔해 주변의 빈축을 사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는데, 그러나 ○○○○○○○(주)가 위탁한

경상남도 환경연구원 폐기물 검사결과에 의하면 기름성분 1%~1.6%로 나타났고 피신청인 김○○ 기자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고발하여 알루미늄 분철 시료를 채취하여 가져간 후 분석한 시료분석결과서에 따르면 기름성분 0.8%로 나타났으며 지정폐기물기준 기름성분 5%이상일 때 지정폐기물을 인정하게 되나 그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나 폐수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폐수처리 업체가 없어 할 수 없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정폐기물로 배출신고를 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사천시 관계자가 업체를 두둔하였다는 사실무근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③ “특히 이 업체는 ○○○로부터 기름이 함유된 알루미늄 부산물을 일반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신고 와 시멘트 바닥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쌓아두고 생산된 제품마저도 바깥에 그대로 방치해 기름이 흘러내리는데도 사천시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단 한 차례도 단속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였는데, 그러나 알루미늄 분철은 대부분 공장건물 내부에 적재하게 되나 수거 물량이 많아 부득이 공장내 콘크리트 바닥에 적재하고 쾌청한 날씨에는 수분이 증발되도록 놔두는 경우는 있지만 철저하게 비를 맞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보관하였으며, 피신청인 김○○ 기자가 사천시청 환경과에 고발하여 환경과 직원 4명이 현장에 와서 절삭유가 흘러내리는 흔적을 찾아보았지만 찾아볼 수 없었고, 우기시를 대비한 시정조치를 하여 신청인은 보관하기 수월하게 공장건물을 증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현재 사천시청에 건물 허가를 신청 중이며 그 후 피신청인 김○○ 기자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고발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 2명이 단속하러 왔을 때도 절삭유를 흘려보낸 흔적을 찾지 못하였지만 우기시 대비할 수 있는 주의사항과 지정폐기물 보관통에 표시판을 1개 외 통마다 부착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고 조치 내용을 통보하라고 하여 부착 후 사진첨부 통보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대장 확인 후 알루미늄 분철 시료를 채취하여 갔으며 시료분석 결과를 통보 받은바 사실과 다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④ “유분의 80~90%는 바닥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상태다. ○·○○○·○○(주)는 지난해 12월 27일자로 7000kg을 김해시 ○○읍 ○○리에 주소를 둔 (주)○○○○에 위탁처리 하였으나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은 폐기되는 유량이 맞는지 그 어떤 조치도 없는 채 묵인하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분의 80~90%는 바닥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는데 ③항에서 밝힌바 절삭유를 흘려보낸 사실이 없음이 확인 되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장지정폐기물 배출 신고 후 2012년 한 해 동안 제품생산 공정으로 발생된 절삭유는 무려 619,100kg이나 되었으며,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은 ₩82,742,000원을 지불하였는데도 터무니없는 88.4배나

축소하여 7,000kg을 위탁처리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지정폐기물은 배출업체, 운반업체, 처리업체가 일괄적으로 인계서를 교부되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도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인을 매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①②③④ 항의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가. 제 목 :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심각” 관련 정정보도문

“○○○○○○(주) 연마유 절삭유 마구 흘러보내” 관련 사실과 다르며 발생한 절삭유는 적법절차를 밟아 배출하였으므로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인터넷 홈페이지 2013년 1월 22일자 사회면에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 심각” 이라는 제목으로

① “산업폐기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해 1년여 동안 연마유와 절삭유 등 엄청난 양의 독극물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분철은 독극물이 함유된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품으로서 2012년 12월 기준 톤(TON)당 단가가 1,106,000원으로 매입 하였으며 알루미늄 분철에 묻어있는 절삭유를 압축하여 발생한 절삭유는 적법 처리하여 폐기물관리대장에 명백한 자료가 있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킨 사례가 없음이 확인된 바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② “사천시 관계자는 연마유와 절삭유가 지정 폐기물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업체만 두둔해 주변의 빈축을 사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는데, 그러나 ○○○○○○○(주)가 위탁한 경상남도 환경연구원 폐기물 검사결과에 의하면 기름성분 1%~1.6%로 나타났고 피신청인 김○○기자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고발하여 알루미늄 분철 시료를 채취하여 가져간 후 분석한 시료분석결과서에 따르면 기름성분 0.8%로 나타났으며 지정폐기물 기준 기름성분 5%이상일 때 지정폐기물을 인정하게 되나 그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나 폐수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폐수처리 업체가 없어 할 수 없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정폐기물로 배출신고를 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사천시 관계자가 업체를 두둔하였다는 사실무근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③ “특히 이 업체는 ○○○로부터 기름이 함유된 알루미늄 부산물을 일반 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신고와 시멘트 바닥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쌓아두고 생산된 제품마저도 바깥에 그대로 방치해 기름이 흘러내리는데도 사천시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단한 차례도 단속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였는데, 그러나 알루미늄

분철은 대부분 공장건물 내부에 적재하게 되나 수거 물량이 많아 부득이 공장 내 콘크리트 바닥에 적재하고 쾌청한 날씨에는 수분이 증발되도록 놔두는 경우는 있지만 철저하게 비를 맞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보관하였으며, 피신청인 김○○기자가 사천 시청 환경과에 고발하여 환경과 직원 4명이 현장에 와서 절삭유가 흘러내리는 흔적을 찾아보았지만 찾아볼 수 없었고, 우기시를 대비한 시정조치를 하여 신청인은 보관하기 수월하게 공장건물을 증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현재 사천시청에 건물허가를 신청 중이며 그 후 피신청인 김○○기자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고발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 2명이 단속하러 왔을 때도 절삭유를 흘려보낸 흔적을 찾지 못하였지만 우기 시 대비할 수 있는 주의사항과 지정폐기물 보관통에 표시판을 1개의 통마다 부착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고 조치 내용을 통보하라고 하여 부착 후 사진첨부 통보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대장 확인 후 알루미늄 분철 시료를 채취하여 갔으며 시료분석결과를 통보 받은바 사실과 다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④ “유분의 80~90%는 바닥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상태다. ○·○○○·○○(주)는 지난해 12월 27일자로 7,000kg을 김해시 ○○읍 ○○리에 주소를 둔 (주)○○○○에 위탁처리 하였으나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은 폐기되는 유량이 맞는지 그 어떤 조치도 없는 채 묵인하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분의 80~90%는 바닥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는데 ③항에서 밝힌바 절삭유를 흘려보낸 사실이 없음이 확인 되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장지정폐기물 배출 신고 후 2012년 한 해 동안 제품 생산 공정으로 발생된 절삭유는 무려 619,100kg이나 되었으며,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은 ₩82,742,000원을 지불하였는데도 터무니없는 88.4배나 축소하여 7,000kg을 위탁처리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지정폐기물은 배출업체, 운반업체, 처리업체가 일괄적으로 인계서를 교부되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도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인을 매도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①②③④ 항의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 심각’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 신문은 2013년 1월 23일자 3면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산업폐기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해 1년여 동안 연마유, 절삭유 등 엄청난 양의 독극물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분철은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품이며,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는 적법절차를 밟아 배출하였으며,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장 내에 알루미늄 분철로부터 절삭유가 흘러내리고 있거나 흘러보낸 흔적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3. 2. 21.자 <경남도민신문> 3면에 보도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주) 연마유 절삭유 마구 흘러 보내]와 동일한 크기로 2단 이상으로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2013. 2. 21. 09:00부터 2. 23. 09:00까지 2일간 <경남도민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ndomin.com/>)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경남도민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본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언론사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2. 1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경남도민신문** :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 심각’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3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 심각’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4

전력설비 납품과 관련, 신청인 회사가 발전회사 관계자를 영입해 로비를 벌였고, 100억 원 규모의 입찰에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경기조정17·18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기업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원자력신문사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13. 02. 06.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세종시에 건설 중인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된 100억 원 규모의 입찰에서 신청인 회사가 발전회사 관계자를 영입하여 로비를 펼치는 등 설비담당자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과거에도 신청인 회사를 위한 밀어주기식 입찰이 진행돼 공개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의 민원으로 입찰이 무기한 보류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회사는 입찰을 거쳐 대규모 중공업회사의 하도급 형태로 4억 원 규모의 보조설비를 납품한 사실이 있을 뿐, 발전회사 설비담당자와 유착이 있었다거나 밀어주기 입찰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2,0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사과보도를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의 신청인 관련 부분을 삭제하며,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있어서도 삭제 후의 기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인터넷 한국원자력신문 :** 『설비 납품비리…한전-5개 발전사도 만만치 않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1일자)
- **내 용 :** 전력설비 납품비리가 세간에 이목을 받는 것은 산업전반과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간산업에서 발생돼 충격이 큰 탓이다. 특히 발전설비 중지 등 사고가 잇따르고, 대부분 사고가 부품고장으로 밝혀지면서 부품선정 및 납품과정의 투명성 저하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발전시설은 보안을 이유로 외부와 단절되고, 폐쇄적으로 운영돼 부품 교체과정 등에서 납품업체들의 집중적인 로비와 더불어 긴급, 부품의 호환성 등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편의적으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방식을 지나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납품검사 담당자에게 집중된 재량권으로 특정납품업체와 유착 가능성이 높고, 제품의 납품 과정에서 부패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비리수단으로 악용되는 수의계약 남발을 방지하고, 납품검사·검수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견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 권익위, 수의계약 연관 비리 전력그룹사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는 발전회사에 전력설비가 납품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리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설비를 책임지는데도 불구하고 보안을 이유로 이들 발전회사들의 설비 납품 과정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업체들의 집중적인 로비대상이 돼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나 납품검사 담당자의 집중된 재량권으로 인한 각종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중략)

◆ 한수원 사건 못지않은 발전회사 비리정황 포착

권익위는 계약요청자인 설비담당자에게 재량권이 집중되면서 특정업체와 유착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부분 납품비리의 연루자도 설비담당자라고 지적했다. 설비담당자가 특정업체의 로비로 설비납품을 결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납품검사·검수 시 편의제공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 한해 떠들썩했던 한수원 비리사건은 납품업체 등록 및 수주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수수 한 혐의로 31명이 구속 기소되고, 1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업무의 보안성, 특수성으로 인해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주요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입찰담합, 자재납품 편의제공 및 이를 둘러싼 로비스트와의 유착관계 등 구조적 비리를 확인한 수사였다.

특히 한수원 사건은 ‘제도적 장치를 교묘히 이용한 금품수수 수법’으로 ‘신제품’, ‘신기술’, ‘친환경인증제품’ 등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의 물품구매를 발주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식이었다.

특정업체를 추천해 설비나 부품을 개발하게 한 후 이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 다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현장기술개발과제’ 제도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오히려 특정업체 밀어주기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실제로 본 지가 발전회사를 취재 중 현재 세종시에 건설 중인 복합화력발전소에 적용될 ‘확장 Zigbee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한 Heat Tracing System의 통합 감시 및 제어기술’과 관련해 100억 원 규모 입찰에 있어서 특정업체 K사와 설비담당자 유착 가능성이 포착됐으며 금품수수 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사는 건설 중인 발전소를 주관하는 발전회사의 기술본부장 출신의 P씨를 상임고문으로 영입해 로비를 펼쳤을 것으로 예측된다.

취재 과정에서 K사로 밀어주기식 입찰이 타 발전회사에도 진행돼 공개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의 민원제기로 관련 입찰이 무기한 보류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한국원자력신문(<http://www.knpnews.com>)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이 시각 주요뉴스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정정보도문의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설비 납품비리…한전-5개 발전사도 만만치 않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나. 본 문 : 본 신문은 2012년 12월 21일자 특집기획면에 “설비 납품비리… 한전-5개 발전사도 만만치 않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현재 세종시에 건설 중인 발전소는 복합화력발전소가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이며, “특정업체 K사”로 거론된 회사가 개발한 “확장 Zigbee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한 Heat Tracing System의 통합 감시 및 제어 기술”과 관련하여 발전회사에서 발주한 100억 원 규모의 입찰은 없었습니다. 위 회사가 설비담당자와 유착하거나 금품수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위 회사는 발전회사의 기술본부장 출신 P씨와 무관하며 상임고문으로 영입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위 회사가 발전회사에 로비를 하거나 발전회사에서 위 회사로 밀어주기식 입찰이 진행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본 신문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위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K사 설비 납품비리” 관련 정정보도

나. 본 문 : 본지는 지난 2012년 12월 21일『설비 납품비리… 한전-5개 발전사도 만만치 않아』 제하의 기사에서 세종시에 건설 중인 100억 원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입찰시 K사가 발전회사 기술본부장 출신의 P씨를 상임고문으로 영입해 로비를 펼치는 등 K사와 설비담당자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타 발전회사에서도 K사에 밀어주기식 입찰이 진행돼 공개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의 민원으로 입찰이 무기한 보류된 사실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현재 K사가 참여하여 세종시에 건설 중인 발전소는 복합화력발전소가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이며, K사는 ○○중공업에 하도급 형태로 4억 원 규모의 보조설비를 납품했을 뿐 입찰 규모가 100억 원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K사는 P씨를 상임고문으로 영입한 사실이 없으며, 발전회사로부터 직접 수주를 하는 형태가 아닌 하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회사 설비담당자와 유착 가능성이 있거나 밀어주기 입찰이 진행되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기사에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K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 지면을 빌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2. 피신청인은 2013. 2. 18. 09:00부터 2. 20. 09:00까지 2일간 <한국원자력신문>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npnews.com>) 초기화면 이 시각 주요뉴스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제목 및 본문 활자는 2012. 12. 21.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설비 납품비리…) 및 본문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한다. 또한, 인터넷 조정대상기사 (<http://www.kn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63>)에서 아래와 같은 신청인 관련 부분을 2013. 2. 18. 09:00까지 삭제하고 포털사이트의 기사 검색에 있어서도 삭제 후의 기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인 관련 부분〉

실제로 본지가 발전회사를 취재 중 현재 세종시에 건설 중인 복합화력발전소에 적용될 ‘확장 Zigbee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한 Heat Tracing System의 통합 감시 및 제어기술’과 관련해 100억 원 규모 입찰에 있어서 특정업체 K사와 설비담당자의 유착 가능성이 포착됐으며 금품수수 협의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K사는 건설 중인 발전소를 주관하는 발전회사의 기술본부장 출신의 P씨를 상임고문으로 영입해 로비를 펼쳤을 것으로 예측된다.

취재 과정에서 K사로 밀어주기식 입찰이 타 발전회사에도 진행돼 공개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의 민원제기로 관련 입찰이 무기한 보류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 등)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을 피신청인이 이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2. 1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한국원자력신문 : 『[K사 설비 납품비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5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 담임교사인 신청인이 사건을 방치하는 등 학교 측의 대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충북조정5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13. 02. 12.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담임 여교사가 중학생 A군과 어머니를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을 전하면서, 검찰이 최근 두 모자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 덧붙여 위 사건의 발단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A군을 위해 해당 교사 및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으며, 담임교사와 학교 측의 초기 대처가 잘 이루어졌다면 A군의 가족이 고통을 겪지 않았으리라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해당 교사인 신청인은 A군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알려옴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및 117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대처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조정대상기사를 통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노컷뉴스 :** 『중학생 담임교사 폭행의 진실?...무너진 사제의 정』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 **내 용 :** 지난해 8월 중학생과 학부모가 담임 여교사를 폭행해 파문이 일었던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다. [관련기사 2012. 8. 27 청주 중학생 여교사 폭행, “학교 폭력 방치” vs “교권 침해”, 2012. 8. 26 노컷뉴스 청주 중학생이 50대 여교사 폭행 ‘파문’]

학교 폭력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에 대한 세상의 오해는 풀렸지만 가족들에게는 씻지 못할 상처가 남았다.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담임 여교사가 폭행을 당했다며 중학생 A군과 어머니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청주지검은 최근 A군의 어머니가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조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었고 피해 교사가 누구에게 폭행을 당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소년부(민○○ 부장판사)도 최근 A군의 상해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흥분한 상태로 애초부터 교사를 폭행할 의향이 없었고 학교 폭력의 큰 상처를 입어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학교와 담임교사마저 감싸주지 않은 A군의 우발적 행동에 대해 재판부가 선처한 것이다. 재판부는 A군의 이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속된 학교 내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군의 어머니는 “14살의 어린 아들과 함께 법원과 경찰서를 오고가면서 수치심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며 “누군가를 흠집내기위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우발적 사건에 대한 오해는 풀렸지만 학교에 대한 신뢰, 친구들과의 소속감, 교사에 대한 존경심까지 무너진 A군은 6개월이 넘는 현재까지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A군의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담임교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A군이 하루빨리 상처를 씻고 학교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에게는 선생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바랄 것이 없겠다”며 “현 상태로 학교에 갔다가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들의 장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의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의 신속한 대응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A군의 아버지는 “학교 폭력으로 같은 반 4명의 친구들이 전학을 가게 돼 책임을 져야 했던 담임교사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4명의 제자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상처 받은 한 명의 제자도 생각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와 담임교사가 초기에 대처를 잘했다면 고소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있었다면 한 가정이 겪지 않았을 고통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학교 폭력에 대응하는 학교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노컷뉴스(<http://http://www.nocutnews.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중학생 담임교사 폭행에 관한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인터넷 신문은 2월 5일자 사회면에 “중학생 담임교사 폭행의 진실?...무너진 사제의 정”라는 제목으로 A군 측은 피해자의 입장이며 법원의 선처를 받아 이로써 세상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을 방치한 것이 아쉽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도와는 다르게 증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 형사재판을 받은 가족은 A군, 어머니 말고도 A군의 아버지 까지 총 3명이며 A군의 아버지는 교사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담임교사는 총 6가지의 병명으로 총 6개월간 요양 중인 사실 역시 보도에는 없습니다.

또한, A군 측이 담임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학교폭력 처리를 방치했다는 과정 상 문제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한 결과 역시 담임교사와 학교의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중학생 담임교사 폭행’ 관련 반론보도

나. 본 문 : 지난 2월 5일 본지 사회면 『중학교 담임교사 폭행의 진실?...무너진 사제의 정』 제하의 기사에서 중학교 교사가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중학생과 어머니를 고소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조사과정에 양측이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학교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었고 담임교사가 학교 폭력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조사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을 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해당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알려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및 117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해당학생과 부모를 만나고자 노력을 했으나 만나주지 않았을 뿐이지 학교폭력을 대처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13. 2. 26. 09:00부터 2. 28. 09:00까지 2일간 <노컷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http://http://www.nocutnews.co.kr>)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제목 및 본문활자는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한다. 또한,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 등)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을 피신청인이 이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2. 2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노컷뉴스 : 『중학생 담임교사 폭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6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6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을 대규모 농업회사로 제한했고, 선정된 업체에 유리온실 자리를 30년간 공짜로 빌려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대전조정9 정정청구

신 청 인 : 농림수산물식품부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13. 02. 21.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을 명목으로 공모자격을 대규모 농업회사로 제한함으로써 대기업 진출을 지원했으며, 12헥타르에 달하는 유리온실 자리를 30년간이나 공짜로 빌려주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10년 1월에 실시한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 공모 시 신청자격을 대규모 농업 회사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유리온실 자리는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 연간 6천6백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보도를 게재한 KBS미디어를 대상으로 별도로 정정청구(2013대전조정10)를 하였고, 심리결과 KBS미디어가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었다.

조정대상보도

- **대전KBS-1TV :** KBS 뉴스9(대전) 프로그램 『농림부가 대기업 지원』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8일자 21:00)
- **내 용 :** ▷ 앵커 : 대기업이 농업 생산 분야까지 진출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농림부가 간척지 시범사업을 이유로 대기업 진출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농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수출을 기치로 농업생산 분야에 진출한 ○○그룹 소유의 이 온실에서 지난해

생산한 토마토는 천 2백 톤. 그러나 주력시장인 일본을 포함한 해외 수출 물량은 60여 톤, 고작 5%에 불과합니다.

▷ 녹취(○○팜 직원) :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품질에 대한 굉장히 까다로운 요구를 하고 있고.”

▷ 리포트 : 결국 생산량의 90% 이상이 내수시장에 출하돼 농민들 몫을 잠식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 타격을 주는 것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룹의 시장 진출에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룹이 농업생산 시장 진출에 농림부가 적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출진흥을 빌미로 ○○가 경기도 화홍간척지에 세운 12헥타르에 달하는 유리온실 자리를 30년 간이나 공짜로 빌려주고 전기 등 기반시설 건설비 87억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 인터뷰(강○○, 농림수산물부 농업정책과) :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이라든지 연관 산업 발전 가능성이 대기업 쪽에서 참여를 해주는 게 농업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 리포트 : 농민들은 반 농민적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녹취(토마토 재배 농민) : “우리 농업은 이제 끝이다. 좌절이 아니고 절망을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구요.”

▷ 리포트 : 눈 앞의 성과 때문에 가뜩이나 FTA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민들을 농림부가 더 궁지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입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KBS대전 <뉴스9> 프로그램에서, 뉴스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농림부의 두 얼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1월 8일자 뉴스9에 방영된 “농림부의 두 얼굴”이라는 보도에서 “농식품부가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을 이유로 사업자 선정공모시 대규모 농업회사로 공모자격을 제한하여 대기업 진출을 지원”하였으며 “30년간이나 공짜로 빌려주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농림수산물식품부는 2010년 1월에 실시한 첨단유리온실 시범 사업 공모시 신청자격을 대규모 농업회사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장기 무상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사업자와 한국농어촌 공사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6천6백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보도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유리온실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나. 내 용 : 지난 1월 8일 “농림부가 대기업 지원” 제목의 기사에서 농림부가 첨단유리온실 시범 사업을 명목으로 공모자격을 대규모 농업회사로 제한해 대기업 진출을 지원했으며, 12헥타르에 달하는 유리온실 자리를 30년간이나 공짜로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유리온실 자리는 무상임대가 아닌 연 6천6백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 공모시 신청자격을 대규모 농업회사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3년 3월 5일 대전KBS-TV ‘뉴스9’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 등)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본 건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2. 2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대전KBS-1TV : KBS 뉴스9(대전) 프로그램 『유리온실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5일자 21:00)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7

서초구청이 구청장 차량 주차안내를 늦게 한 청원경찰에게 24시간 동안 징벌성 옥외근무를 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263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초구청

피신청인 : 주식회사 채널에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3. 03. 05.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서초구에 근무하던 청원경찰이 서초구청장 관용차량을 늦게 안내한 별로 장시간 옥외근무를 하고, 근무 직후 추위에 의한 쇼크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청원경찰이 장시간 옥외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며, 사망원인도 추위에 의한 쇼크가 아니라 급성심근경색 및 폐부종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조정대상보도의 사망원인이 오보임이 드러날 경우 별도의 정정보도를 방송하기로 합의했다.

조정대상보도

- **채널 A :** 박종진의 뉴스쇼 왜도난마 (1부) 프로그램 『서초구 오리털 파카도 사줬다... 청원경찰 돌연사 논란』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5일자 16:00)
- **내 용 :** ▷ 앵커 :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서초구 청원경찰이 징벌근무 직후에 돌연사 했다. 그래서 일이 커지고 있다. 서초구청장 관용차량 뒤늦게 안내한 그 죄로, 별로 24시간 추운겨울에 옥외근무했다. 근무 직후 이 추위 쇼크로 사망했다. 서초구청측은 사망과 관련해서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이지만 누리꾼들은 추운날씨에 옥외근무 너무 가혹, 그것도 24시간은.. 청원경찰의 정확한 사유 요구하고 있다. 지금이 군사독재시대냐? 구청장이 그렇게 높은 자리냐? 구청장 차량 늦게 안내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놈의 권위

주의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청원경찰 가족들이 얼마나 울화통이 터질까요? 본격적으로 진행하러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니까? 서초구청장입니까? 청원경찰이 원래 이렇게 군대에서도 차오면 딱 안내하고 잘해야 하는데.. 이거 잘 못한 본인 거 같은. 그렇다고 24시간 밖에서 근무해라 옥외근무하라고 하나? 문을 잠궜다 그래요. 그 초소 문을 못 들어가게 잠근 모양이다. 그래서 이분이 추위에 떨다가 지금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 이○○(정치평론가) : 할 말이 없습니다.

▷ 앵커 :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정치평론가) : 그렇다고 법조항이 있어서 무슨 파면시킬 수도 없고.. 언론에 질타 받으니 반성하실 것이다. 이○○ 후보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기사 내리라고 하고 기사 걸어왔다고 하더라. 부하직원 함부로 대하는.. 최소한 인권유린은 지양해야한다. 이○○ 후보자도 내부에서 고발 일어나고 내부에서 평판이 안 좋아 문제됐다. 내부사람 아니면 모르는 건데 부하직원 인간적으로...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의 정정보도문을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서초구청 청원경찰 돌연사 관련’ 정정보도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1월 25일 채널A 시사프로그램인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서초구 오리털 파카도 사줬다...청원경찰 돌연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자가 “서초구청장 관용차량을 뒤늦게 안내한 그 죄로, 벌로 24시간 추운겨울에 옥외 근무시키고, 근무 직후 이 추위 쇼크로 사망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기에 정정합니다. 서초구청 주차장 청원경찰은 1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하루 근무시간은 총 3시간이므로 24시간 옥외근무는 사실과 다른 보도였습니다.

구청장 차량주차 안내 지연에 대한 벌칙이란 내용도 사실에 어긋난 보도였습니다. 서초구청에는 구청장 차량 안내직원이 따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논란이 된 2013. 1. 2 11시경에는 사망 직원의 근무시간도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이 그렇게 높은 자리입니까? 그 놈의 권위주의는 어디서 배운 겁니까?”란 진행자의 멘트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논평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및 폐부종이었으며, 고인은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급성심근경색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3가지 만성질환을 모두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24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쇼크로 사망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오보였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며 서초구의 명예에 누를 끼쳐 드린 점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청원경찰 돌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나.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25일 서초구 청원경찰의 돌연사 논란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내용 중 사망한 이모 씨가 24시간 옥외근무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 확인 결과, 1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사망원인이 장시간 옥외근무에 의한 추위 쇼크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3년 3월 22일까지 채널A의 <박종진의 래도난마> 프로그램 말미에 블랙바탕에 흰자막으로 표시하되, 제1항의 보도문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20초~30초 동안 계속 표시한다.

3. 위 반론보도 중 사망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조사결과 오보로 밝혀질 경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도의 정정보도를 방송하며, 방송시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내용과 방식을 정하되, 위원회의 조정합의 양식에 준한다.
4. 신청인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그들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3. 1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채 널 A** :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2부) 프로그램 『「청원경찰 돌연사」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22일자 17:00)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8

국방부장관 후보자인 신청인이 사단장 재직 시절 부대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377, 2013서울조정378(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3. 03. 21.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신청인이 2사단장으로 복무하던 당시 부대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로 군사령부의 감찰조사를 받았으며, 감찰 결과 신청인이 로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 또한 K2 전차의 핵심부품인 파워팩 수입과 관련하여 납품업체인 독일 엠티유가 한국정부와 직거래를 희망했으나, 방위사업청이 거액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중개업체를 통한 납품을 고집했고, 그 과정에서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있던 신청인이 모종의 역할을 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2사단장으로 복무하던 당시, 부대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리베이트도 받은 사실이 없고, 어떠한 감찰조사도 받은 바가 없으며, 우리 군의 기동장비 디젤엔진 합작생산 공장 설립을 위한 자문을 위해 무기중개업체의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된 것은 사실이지만 K2 파워팩 관련 업무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한 거 례** : (1) 『김○○ 2사단장 시절 공사 ‘리베이트’ 물의』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1면)
- **내 용** : 김○○(65·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사단장으로 복무하던 1999년 부대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로 군사령부의 감찰을 받았으며, 감찰 결과 김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군 검찰 당국은 김 후보자가 이 돈을 부대 물품을 사는 데 쓴 것으로 판단해 구두경고를 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김 후보자가 사단장일 때 2사단에서 근무했던 한 장교는 “당시 2사단에는 군 아파트 신축, 사단 본청 공사, 체육관 개보수 등을 포함해 병영시설 개선을 위한 건설공사가 유난히 많았다. 당시 김 후보자가 공사 수의계약 리베이트와 관련돼 있다는 제보가 상급부대에 접수돼 군사령부에서 사단을 감찰했고,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파악돼 사적으로 썼는지 여부를 따졌다”고 밝혔다. 이 장교는 “사령부는 당시 김 후보자가 받은 돈을 위성항법장치(GPS) 장비와 공학용 계산기를 사서 예하 부대에 보급하는 데 썼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당시 김 후보자의 지휘계통에 있었던 한 예비역 장성도 “당시 2사단장과 21사단장이 업체 로비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국방부에서 들었다. 그 뒤 육군본부에서 지시를 받은 군사령부가 나서서 감찰을 했다. 결과적으로 21사단장은 군사령부 회의에서 정식으로 경고장이 나갔고, 2사단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자신이 챙긴 게 아니라 부대를 위해 썼으니 구두경고로 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참모에게 위문금으로 쓰라고 줬고, 그 돈으로 포병에게 필요한 부대 훈련장비를 샀다. 당시 받은 돈은 2,000만 원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돈을 건넨 상대방에 대해서는 “친구들”이라며 “당시 문제됐던 건설업계 사람들도 아니고, 군 쪽에 관계된 사람들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 번째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돈이 아니라 장비를 현물로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김 후보자는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해당 금액(2,000만 원)만큼의 장비를 직접 받았다. 실제로 내가 돈을 받았다면 그때 그냥 넘어갔을 리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사단장 재직 때 부대 위문금 800만 원가량을 본인 명의의 통장에 넣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통장을 관리하던 참모가 부대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 없다고 해 그런 줄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사단급 부대에서는 부대 명의의 통장 개설이 가능했다.

- **한 거 레** : (2) 『군 ‘K2 파워팩’ 중개상 끼워 구매... 김○○ 소속 업체도 43억 원 챙겨』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1~2면)
- **내 용** : K2 전차의 핵심 부품인 파워팩 사업자로 독일 군수업체 엠티유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김○○(65)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던 무기중개상 ○○○○이 43억 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독일 엠티유 임원이 독일 주재 우리 무관을 통해 중개상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납품하겠다는 뜻을 국방부에 밝혔음에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이를 묵살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간업체 배제를 희망하는 독일 업체의 의사와 달리 거액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중개 방식을 고수하게 된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일정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1일 <한겨레>가 입수한 파워팩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2012년 1월 18일 독일 주재 한국 국방무관은 엠티유 임원과의 면담 내용을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엠티유에서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파워팩 100대를 무기중개상을 통해 납품하기를 (한국 쪽이) 요청하고 있으나, 납품하는 제품이 100% 독일 생산품인데 왜 직접 납품하지 말고 생산도 하지 않는 중개상인 ○사를 통해 납품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엠티유 임원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감사원 자료에는 “정보본부장은 다음날인 1월 19일 방위사업청의 사업 관계자(장성급)에게 전달했으나 이 내용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묵살됐다”고 적혀 있다. 이후 파워팩 수입계약 협상은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는 ○○○○을 포함해 ○사, ○사 등이 중개하는 원안대로 진행됐고, 2012년 4월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과정에서 ○○○○은 중개 수수료로 43억 원(현재 환율기준)을 챙겼다. 이 수수료는 엠티유가 ○○○○에 지불하는 것이지만,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나서지 않아 중개상의 개입을 방치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쪽의 커미션 등이 발생하면서 구매비용이 높아져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커미션(중개 수수료)을 없애면 무기 구입 예산 20%를 줄일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한 뒤 국방부가 산하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함께 커미션 실태를 집중 점검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파워팩 사업 규모가 1,000억 원대이니 최소 수십억 원이 커미션으로 나가는 게 뻔한 상황에서 중개상을 배제하자고 판매업체 쪽에서 먼저 나섰는데도 이를 우리 쪽에서 묵살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의 내부 규정에도 2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는 판매사와 직접 거래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에서 일한 시기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로, 무기 수입 계약의 최종 결정기구인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가 국산 파워팩 생산을 결정했다가 독일산(엠티유) 파워팩 수입으로 방침을 변경하는 시기(2010년 12월~2012년 4월)와 겹친다. 김 후보자는 2012년 6월 ○○○○을 떠나면서 7,0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업계에서는 관행상 이 돈이 로비 활동에 대한 ‘성공 보수’의 일부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고문으로 있으면서 엠티유와 ○○○○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자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의 수수료가 약 43억 원으로 확인되면서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돈이 성공 보수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무기중개상 ○○○○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돈의 총 액수는 2억1500만 원으로 ○○○○ 수익의 5% 정도에 해당한다. 한 무기중개업체 관계자는 “(업계의 관행을 기준으로 할 때) 2년 동안 1억4000여만 원을 받고나서 마지막 달에 7,000만 원을 받은 것을 보면, 2년 영입 계약과 함께 성공 보수 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7,000만 원이 성공 보수라면 아마도 3~5년 더 7,000만 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평소 급여와 성공 보수를 합한 전체 지급액은 사업 수익의 10% 가량으로 책정된다”고 덧붙였다. K2 전차 파워팩과 같은 대형사업의 수주전이 시작되면 전역 장성 등을 2년 또는 3년 기한으로 영입한 뒤 그 기간 동안은 책정된 연봉을 월급으로 쪼개서 지급하고, 만약 수주에 성공하게 되면 원래 책정된 연봉을 3~5년치 정도 더 지급하는 게 업계의 관행이라는 것이다.

조정대상보도 2

- 인터넷 한겨레 : (1) 『김○○ 2사단장 시절 공사 ‘리베이트’ 물의』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1) 참조>
- 인터넷 한겨레 : (2) 『군 ‘K2 파워팩’ 중개상 끼워 구매... 김○○ 소속 업체도 43억 원 챙겨』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2) 참조>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2013. 4. 10.까지(토, 일요일 제외) 한겨레 3면 상단에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한겨레 2013. 2. 22.자 1면 “군 K-2 파워팩 ~ 소속업체도 43억 원 챙겨” 활자와 동일한 서체 및 크기로 2단에 걸쳐 게재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한겨레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중간 상단에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하고,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각 조정대상기사(2월 20일자, 2월 22일자)의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김○○ 전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정정보도

나. 본 문 : 한겨레 지난 2월 20일자 및 22일자 김○○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합니다.

- ① 김 후보자가 1999년 2사단장 재직 시 부대 시설공사와 관련된 리베이트 문제로 군사령부의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당시 김 후보자는 공사업체로부터 어떠한 리베이트도 수수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 군 당국의 검찰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② K2전차의 핵심부품인 파워팩 수입과 관련, 납품업체인 독일 엠티유가 한국정부와 직거래를 희망했으나, 방위사업청이 거액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중개업체를 통한 납품을 고집했고, 그 과정에서 중개업체 비상근 고문으로 있던 김 후보자가 역할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확인결과, 당시 ○○○○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한 김 후보자는 우리 군의 기동장비 디젤엔진 합작공장 설립에 관해 자문한 바 있으나, 기사에 언급된 K2전차 파워팩 업무에는 일체 간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피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포털사들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즉시 통보하고 게재를 요청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김○○ 전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정정보도

나. 본 문 : <한겨레>는 지난 2월 20일치 김○○ 전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합니다.

김 전 후보자가 1999년 2사단장 재직시 부대 시설공사와 관련된 리베이트 문제로 군사령부의 감찰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당시 김 전 후보자는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 군 당국의 감찰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한겨레> 2013년 4월 9일 또는 10일자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크기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중 2013년 2월 22일자 1면 기사의 부제목(독일업체서 “중개상 배제” 제안...)크기와 동일자 동일면 ‘한겨레 기자 통화 기록 10개월치 들여다 본 검찰’기사의 제목크기의 중간크기로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인터넷 한겨레>(http://www.hani.co.kr) 초기화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제2항의 이행일 12:00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김○○ 2사단장 시절 공사 ‘리베이트’ 물의)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위 제1항~제3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이미 제기한 고소나 소송이 있을 경우, 이를 취하한다.)

2013. 04. 0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한겨레 : 『김○○ 전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2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인터넷 한겨레 : 『[김○○ 전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9

인터넷 기차여행 동호회 카페인 신청인 단체가 한국철도공사 지역본부에 대해 무리한 지원요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중재36·37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 지주단체
피신청인 :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3. 03. 26.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코레일 지역본부 다수가 인터넷 기차여행 카페인 신청인의 운영진으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과 무료여행 등을 제공하면서도 운영진의 무리한 요구에 휘둘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카페 운영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2013서울조정273·274)을 신청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2차 조정기일 심리 전에 양 당사자가 이 사건을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중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2013서울중재36·37)를 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중재결정을 했다.
-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동 기사를 전송받아 게시한 네이트(2013서울조정275·276)를 대상으로도 정정보도 및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1차 조정기일 심리전에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2013서울중재28·29)가 이루어져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중재대상보도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단독〉 일개 인터넷 동호회에 ‘질질’ 끌려다닌 코레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3일자)
- **내 용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역본부 다수가 한 인터넷 기차여행 카페 운영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과 무료여행 등을 제공하면서도 운영진의 정책과 무리한 요구에 휘둘리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장시간 자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지역본부는 본사가

해당 카페에 지출을 멈추고 각종 홍보를 중단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린 후에도 여행 상품의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본사 지시를 불이행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코레일의 다수 지역본부는 국내 최대규모 인터넷 기차여행 전문 카페인 B 모 카페에 각종 선물과 협찬을 지난 수년간 무더기로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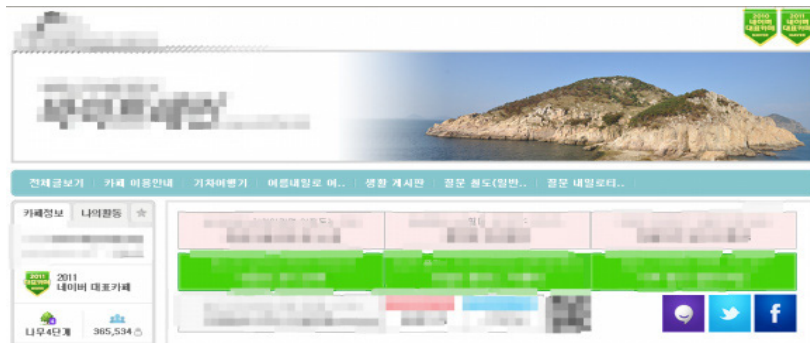
호남권 한 본부는 운영진 등 주요회원 다수를 초청해 공짜 1박2일 여행을 제공했고, 충청 지역 한 본부는 지역의 한 지자체와 연계해 당일 나들이와 함께 고가의 선물까지 넘겨줬다. 이외에도 많은 본부가 카페 운영진을 대상으로 편의와 선물을 제공했다.

카페와 한번 인연을 맺은 이들 일부 본부는 이후 카페 측의 무리한 지원 요구를 받는다. 하지만 상당수는 순순히 따랐다. 카페의 행사에 지원금과 다양한 편의도 제공했다. 수도권 한 본부는 카페 자체행사에 장소와 470만 원을 단번에 지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코레일의 지역본부가 일개 인터넷 기차여행 카페의 소수 운영회원에 절절때는 이유는 평일 아침 매일 사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일로 티켓 판매실적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코레일 직원은 “코레일의 개별 지역본부가 내일로가 활성화된 2008년부터 이후 5년동안 B카페에 지원한 사항을 금액으로 환산해 합치면 억 대에 달할 것”이라며 “다만 많은 본부는 ‘병어리 냉가슴’ 상태다. 대도시를 낀 본부는 실적 채우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렇지만 소규모 본부는 절박해 인터넷과 전화로 외지에 통신 판매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카페에 ‘찍히면’ 내일로 판매량은 급감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다수 지역본부는 아주경제의 질문에 “카페의 시안성 높은 주요 위치에 본부를 알리고 카페 운영진이 정한 규정횟수 이상 본부를 알리는 홍보 게시물을 올리고자 카페 운영진 측과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했다. 코레일 다수 지역본부가 ‘갑(甲)’이 아닌 ‘병(丙)’ 또는 ‘정(丁)’의 포지션에서 해당 카페에 절절맨 이이다.



<코레일의 다수 지역본부는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 기차여행 카페인 B 모 카페에 여러 가지 금품과 협찬을 지난 수년간 대량 퍼부으면서도 카페 운영진 측의 요구에 굴종하듯 행동하며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다. 다음은 B모 네이버 카페 메인화면 상단 캡처. >

지난 2007년 여름 출시된 ‘내일로’ 티켓은 만 25세 이하면 누구든지 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를 입석이나 자유석으로 총 7일간 무제한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여름·겨울방학 기간에만 출시되며, 가격은 5만 6,500원(2012~2013 동계기준)이다.

출시 당시 7,000여장이 판매됐지만 이후 판매 촉진책을 통해 판매량은 매년 급증했다. 2012~2013 겨울 티켓은 22일 현재 18만장 넘게 판매됐다. 출시 이후 5년간 25배 이상 성장했다.

코레일은 내일로 티켓 판매를 늘리고자 지역본부 별로 판매량을 매일 집계했다. 이같은 실적은 별도 문서로 제작돼 사장에게 보고됐다. 본부 평가에도 반영되자 모든 본부는 내일로 판매에 앞장섰다. 자연스럽게 개별 본부 별로 과한 마케팅이 다수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전남 화순의 성추행사건 또한 과도한 마케팅을 근본 원인으로 꼽는다. 내일로 티켓 판매를 늘리고자 무통장 입금 형태로 전국에 티켓을 팔면서 마케팅을 위해 빈곳이 많은 시골역을 개조해 구입자 대상의 숙소로 제공해왔던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최근 대형카페의 횡포에 대응하고자 각종 협조를 금하는 공문을 보냈고, 자체 홈페이지도 새로 구축했다. 실적체크 또한 폐지했다”면서 “지역본부에 주의를 요구하겠다. 또한 본사 차원에서 더욱 나은 혜택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재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주경제(<http://www.ajunews.com>)의 홈페이지 부동산>교통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B카페의 금품 수수 및 무리한 협조 요구’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2월 23일자 부동산>교통면 초기화면에 “<단독> 일개 인터넷 동호회에 ‘질질’ 끌려다닌 코레일”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 해당 부서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 (1) 코레일 지역본부 다수가 한 인터넷 기차여행 카페 운영진의 환심을 사기위해 선물과 무료여행 등을 제공하면서도 운영진의 정책과 무리한 요구에 휘둘린다고 하였으나,

실제 확인 결과 코레일에서는 이에 대해 운영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 (2) 코레일 지역본부의 초청을 받아 팸투어 등의 여행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나, 현지 이동차비 및 여행 현장 기초 비용은 여행자가 실비로 부담하였고 특정 운영자만이 아닌 일반 회원도 참여한 모임이었으며, 이 때 받은 선물은 김 또는 머드팩 정도의 여행지 홍보용 기념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3) 또한 수도권 한 본부는 카페 자체행사에 장소와 470만 원을 단번에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한 본부가 아닌 코레일 홍보실(현 홍보문화실)에 철도문화증진을 목적으로 기획서를 제출한 것이 채택되어 정식으로 후급 지원을 받았으며, 당시 한국철도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사 자체가 내일로 티켓과 그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 (4) 끝으로, 익명을 요구한 한 코레일 직원은 “코레일의 개별 지역본부가 내일로가 활성화된 2008년부터 이후 5년 동안 B카페에 지원한 사항을 금액으로 환산해 합치면 억대에 달할 것”이라 하였으나, 코레일 담당부서에 집행사실을 확인한 결과 내일로 티켓 판촉과 관련되어 해당 B카페에 지원한 내역을 확인되지 않았음을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아주경제(<http://www.ajunews.com/>)에 <별지>의 반론보도문을,
 - 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48시간 동안 중재대상기사와 동일한 섹션(뉴스)(한국어)> 부동산>교통)에 제목을 클릭하면 전체 내용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게재하되, 기사순서는 최초에는 위에서 첫 번째에 등재하고 새로운 다른 기사 업데이트에 따라 차례로 아래로 내려오도록 하며, 제목 및 본문화자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각각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한다.
 - 나. 이 사건 중재대상기사 본문 바로 아래에 게시하여 중재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네이트(<http://www.nate.com/>) 등 이 사건 중재대상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전송하여 중재대상기사가 게재된 동일한 섹션에 게재되고 검색될 수 있도록 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모두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이 유

1. 신청이유

피신청인은 2013. 2. 23.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아주경제(<http://www.-ajunews.com/>)의 [뉴스(한국어)>부동산>교통] 섹션에『<단독> 일개 인터넷 동호회에 ‘질질’ 끌려다닌 코레일』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 기사에는 코레일의 다수 지역본부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 기차여행 전문 B모 카페에 각종 선물과 협찬을 지난 수년간 무더기 제공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코레일에 무리한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여 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2013서울조정273·274).

양 당사자는 조정신청 후 중재부 권고안을 토대로 서로 협의한 결과애초의 청구취지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대신에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그 보도문안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본 후, 이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전환신청을 하였다.

2.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동법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동법 제15조 제4항 및 제16조 제3항은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지 않을 경우 이를 언론사가 거부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중재대상기사에 신청인의 반론을 반영한 사실이 없는 점, 양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며, 당사자간 합의한 보도 문안이 중재부의 의견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있고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를 이행함이 적당하다.

3. 결 론

양 당사자의 주장과 당사자간 합의사항, 원 기사의 보도방법 및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03. 26.

〈별지〉

1. **제목** : 『기차여행 B카페의 금품수수 및 무리한 협조요구』 관련 반론보도문
2. **본문** : 본보는 지난 2월 23일자 『일개 인터넷 동호회에 ‘질질’ 끌려다닌 코레일』 제목의 기사에서 코레일의 다수 지역본부가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 기차여행 전문 B모 카페에 각종 선물과 협찬을 지난 수년간 무더기 제공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B카페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첫째, “B카페가 코레일 지역본부의 초청을 받아 ‘팸투어’ 등의 여행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나, 열차경비 및 현장 기초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하였고, 지역에서 받은 선물은 김, 머드팩 등 여행지의 홍보용 기념품이었습니다.”

둘째, “B카페가 코레일 수도권의 한 본부로부터 ‘철도게임축제’의 행사 장소와 비용을 지원받은 것은 B카페가 코레일 홍보실에 철도문화증진을 위한 기획서를 제출한 것이 채택되어 정식으로 지원 받은 것이며, 코레일의 ‘내일로’ 티켓 판매 실적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셋째, “코레일 개별 지역본부가 2008년 이후로 5년간 지원한 내역이 역대에 달한다는 내용은 과장된 표현이며, B카페는 팸투어의 기초 지원 형태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본부로부터 금품 또는 현물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반론보도문〉 ‘기차여행 B카페의 금품수수 및 무리한 협조요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9일자)
- **내 용** : 〈중재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 례 10

서강대학교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경의선 서강역의 명칭을 서강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중재42·43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피신청인 :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3. 03. 26.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개통된 경의선 서강역을 서강대역으로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서강대와 학생들의 민원을 거절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단체는 서강대역과 관련된 민원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사실이 없고, 대학 평가 순위도 허위 보도 하는 등 학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2013서울조정320·321)을 신청했다.
- 이후 1차 조정기일 전에 당사자 간 중재합의(2013서울중재42·43)가 이루어졌고,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을 했다.
- 한편, 신청인은 문화일보(2013서울조정312·313)와 인터넷 문화일보(2013서울조정314·315)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게시한 네이버(2013서울조정316·317), 네이트(2013서울조정318·319)에 대해서도 각각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문화일보와 인터넷 문화일보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은 병합되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1차 조정기일 심리전에 네이버(2013서울중재38·39)와 네이트(2013서울중재40·41) 역시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가 이루어져 담당중재부는 각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을 내렸다.

중재대상보도

- 다 음 : 『비서진 달랑 1명…차에 홀대 우울한 서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 내 용 : 내각 및 청와대 인선 과정에서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지 못한 데다 숙원사업이던 전철역 명칭 변경도 좌절되는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모교인 서강대가 ‘박근혜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장관 후보자 중 서강대 출신은 한 명도 없었고 18일과 19일 발표된 청와대 비서진 인선에서도 서강대 출신은 고작 1명이 포함되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사학 라이벌인 성균관대 출신 인사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핵심 보직에 7명이나 포함됐다. 박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 이후 김○○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 서강대 출신 인사 및 교수들이 중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인선 결과는 학내 안팎에서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 측이 1년 가까이 추진해 온 서강역 명칭 변경 요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거절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개통된 경의선 서강역을 ‘서강대역’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서강대와 학생들의 민원을 거절했다. 반면 지하철 1호선 성북역은 오는 25일부터 광운대역으로 이름이 바뀐다.

서강대는 최근 각종 대학평가에서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차에 박 당선인의 모교로 인지도 상승 등의 효과를 노렸던 터라 더욱 아쉬움을 느끼는 분위기다.

중재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다음(<http://www.daum.net>)의 홈페이지 미디어다음 사회면 초기화면 중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비서진 달랑 1명…차에 홀대 우울한 서강대)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 3. 31.까지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연할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비서진 달랑 1명…차에 홀대 우울한 서강대’ 정정보도문(또는 ‘비서진 달랑 1명…차에 홀대 우울한 서강대’ 관련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나. 본 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19일자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에 「비서진 달랑 1명…차에 홀대 우울한 서강대」라는 제목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개통된 경의선 서강역을 서강대역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서강대와 학생들의 민원을 거절했다」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서강대학교는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주식회사 문화일보로부터 전송받은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미디어다음(<http://media.daum.net/>)의,
 - 가. 이 사건 중재대상기사가 위치한 동일한 섹션에 반영하여 검색되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 활자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크기·활자체와 각각 같게 한다.
 - 나. 뉴스룸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란에 게시하도록 한다.
2.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 까지 1일에 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이 유

1. 신청이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미디어 다음(<http://media.daum.net/>)을 통해 주식회사 문화일보의 『비서진 달랑 1명·차에 홀대 우울한 서강대』제목의 기사(2013. 2. 19.자,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불특정 다수에게 매개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에는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개통된 경의선 서강역을 ‘서강대역’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서강대와 학생들의 민원을 거절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서강대학교는 국토부에 서강역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이후 양 당사자는 이 조정신청 사건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의해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전환신청을 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

가. 관련 법률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중재) 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②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판 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포털사이트 <미디어 다음>을 운영하며 주식회사 문화일보로부터 이 사건 기사를 제공받아 별도로 수정하거나 편집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매개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기사의 제공자인 주식회사 문화일보를 상대로 한 신청인의 조정신청사건(2013 서울조정314·315)은 <별지>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사제공언론사로부터 전송받은 기사를 매개하거나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적 상황을 인정하여, 주식회사 문화일보로부터 <별지> 기재 기사를 제공받아 이를 포털사이트 <미디어 다음>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사건의 처리결과, 원 기사의 게시방법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03. 26.

<별 지>

1. 제 목 : 『차에 홀대받는 우울한 서강대』관련 바로잡습니다

2. 본 문 : 본보는 지난 2월 19일자 11면 『차에 홀대받는 우울한 서강대』 제목 기사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개통된 경의선 서강역을 ‘서강대역’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서강대와 학생들의 민원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서강대 학교법인은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 다 음 : 『차에 홀대받는 우울한 서강대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8일자)
- 내 용 : <중재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례 11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악성 해킹프로그램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중재48·49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주)○○○○○○○○

피신청인 : 주식회사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3. 04. 02.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MBC가 2012년 5월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직원들의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MBC 노조의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회사는 MBC 노조가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자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해킹방지 솔루션으로서 2007. 10.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을 받았으며, 2011. 1.경 IT보안인증사무국으로부터 인증 받은 범용 프로그램이라고 밝히면서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회사 영업활동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2013서울조정361)을 신청했다.
- 이후 1차 조정기일 심리 전에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2013서울중재48·49)가 이루어졌고,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을 했다.

중재대상보도

- **뉴시스 :** 『MBC 위법 경찰 수사 촉구하는 MBC 노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내 용 :** 14일 오후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MBC 노조가 방송사 MBC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접수하기에 앞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신○○ 변호사, 이△△ MBC본부 위원장, 김○○ MBC본부 수석부위원장, 김△△ 영화감독이 참석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대표적 공영방송사 MBC가 2012년 5월께 ‘○○○○(○○○○○○○○○○)’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무차별적으로 전기통신을 감청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는 중대한 범죄로, 노회찬 의원도 이 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화방송 노동조합이 지난 9월 6일 서울 남부지검에 소장을 제출 후 5개월 넘게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은 남부지청 담당 영등포경찰서에 계류돼 있어 경찰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뉴시스(<http://www.newsis.com/>)’의 홈페이지 [뉴스] 포토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가. 제 목 : ‘○○○○’ 악성 혹은 해킹 프로그램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뉴시스는 지난 3월 15일자에 “MBC 위법 경찰 수사 촉구하는 MBC 노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MBC 노조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이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국내 중소보안업체인 (주)○○○○○○○○가 개발하여 특허와 GS 인증 및 국제공통규격인 CC인증까지 취득한 차세대 해킹방지 제품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주)○○○○○○○○는 “○○○○은 특정 고객을 위해 맞춤형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범용 제품이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시스(<http://www.newsis.com/>)의 [뉴스] 포토섹션에 <별지> 기재 보도문을 게시하되,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의 각 활자와 같도록 한다.
2. 제1항의 이행에 있어 <별지> 기재 보도문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이 유

1. 신청 이유

피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뉴시스(<http://www.newsis.com/>) 2013. 3. 14.자 「MBC 위법 경찰 수사 촉구하는 MBC 노조」제하의 기사를 통해 ‘MBC가 2012년 5월께 ○○○○(○○○○○○○○○○)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직원들의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촉구한다’는 MBC 노조의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 회사는 MBC 노조가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 ○○○○은 신청인 회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해킹방지 솔루션으로서 2007. 10.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2011. 1.경 IT보안인증사무국으로부터 인증 받은 범용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며 중재대상기사를 바로잡고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정보도와 함께 반론보도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신청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재부를 매개로 한 당사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보도할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세부적인 보도문안, 보도일, 보도위치 및 보도방법 등 구체적인 보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중재부가 최종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판단하건대, 이 사건 기사에서 피신청인은 ‘MBC가 2012년 5월께 ○○○○(○○○○○○○○○○)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직원들을 감청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MBC 노조의 성명발표를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해당 기사를 접한 독자로 하여금 신청인 회사에서 개발하고 시중에 보급한 ○○○○이란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개연성이 인정되는 데도 해당 기사에서는 신청인 회사의 의견이나 주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바,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이란 프로그램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범용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반론보도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은 2007. 10.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을 받고 2011. 1.경 IT보안인증사무국으로부터 공인 받은 범용 제품이기에도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한 MBC 노조의 성명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MBC 노조는 스스로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신청인 회사의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이라고 주관적

으로 평가하였고 피신청인은 MBC 노조의 발표를 보도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MBC 노조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여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행히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분쟁 진행 중에 사전 협의한 보도문을 당 중재부에 각 제출하였고, 중재부는 그 협의된 문안이 중재부의 의견과도 거의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론보도를 이행하도록 하고, 보도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뉴시스가 뉴스통신사로서 통상적으로 행하는 반론보도의 방식을 따르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협의사항·실익, 원 기사의 크기와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04. 03.

〈별 지〉

1. **제목** : 〈MBC 위법 경찰 수사 촉구하는 MBC 노조〉 관련 알림
2. **내용** : 뉴시스는 지난달 14일 〈MBC 위법 경찰 수사 촉구하는 MBC 노조〉 제하의 기사를 통해, ‘MBC가 2012년 5월께 ○○○○(○○○○○○○○○○)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직원들의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촉구한다’는 MBC 노조의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는 “MBC 노조가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 ○○○○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IT보안인증사무국 등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해킹방지 솔루션으로 범용제품일 뿐 결코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 **뉴 시 스** : 『〈MBC 위법 경찰 수사 촉구하는 MBC 노조〉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 **내 용** : 〈중재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 례 12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은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라”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469, 2013서울조정471(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 심 재 권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방송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3. 04. 15. (2013서울조정469)

2013. 04. 16. (2013서울조정471)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은의 호칭을 정중하게 표현할 것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발언의 전체 내용 중 중간 부분을 생략하고 앞뒤 부분만을 편집·보도함으로써 신청인의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인터넷 TV조선에 게시하는 VOD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TV 조 선 :** 뉴스쇼 판 프로그램 『도 넘은 ‘북한 감싸기’』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9일자 21:50)

- **내 용 :** ▷ 앵커 : 북한이 말과 행동은 저렇게 하지만 설마 뭘 하겠느냐,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전국민 단결해야 하는 준 전시, 비상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평상시면 몰라도, 동족이다, 같은 한민족이다, 지금 북한을 이렇게 낭만적으로 볼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외중에 국론 분열과 같은 모습들이 보여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 기자입니다.

- ▷ 리포트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우리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 ▷ 녹취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조용히 있던 개성공단을 건드려서 도대체 누가 무슨 이득을 얻었느냐. 북에 어떤 큰 타격을 줬느냐”
- ▷ 리포트 : 우리 정부와 군이 북한을 자극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당장 대북 특사를 통한 남북 대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 ▷ 녹취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대화는 전쟁이 터진 다음에나 고려할 생각이냐”
- ▷ 리포트 : 하지만 북한 정부의 핵실험, 미사일발사, 남북합의 파기 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지나친 감싸기가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 ▷ 인터뷰 (이○○/서울 대흥동) : “계속 대화로 풀려고 했지만 그 쪽에서 거부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좀 강경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 리포트 :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도 사태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발언으로 핵심을 흐리는 듯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호칭을 제대로 붙여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 ▷ 녹취 (심재권/민주통합당 의원) : “우리 정부 공식 문제에서 김정은이라 하나. 앞으로 이런 것 하나도 정중하게.”
- ▷ 리포트 : 전문가들은 국론분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 녹취 (허○○/전 국토통일원 장관) : “북한의 대변인 같은 얘기를 한국 내부에서 했다는 건 문자 그대로 적반하장이고 이적행위인데”
- ▷ 리포트 :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내부가 갈라지는 남남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V조선 이○○입니다.

조정대상보도 2

- 인터넷 TV조선 : 『이 와중에 일부는 김정은 예우?』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고>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을 <TV조선, 뉴스쇼 판>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TV조선(<http://tv.chosun.com/main.html>)의 홈페이지 정치면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2)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 (2)를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가. 제 목 : 심재권 의원, “김정은에게 정중한 예 갖추라”고 한적 없어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4월 9일 “뉴스쇼 판” 프로그램에서 “도 넘은 북한감싸기 <본 방송분>, 이 와중에 일부는 친북행위<인터넷 판>”라는 제목으로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이 “김정은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라”고 발언한 것처럼 편집하여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심재권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천의지를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적으로는 어떻게 부르든 적어도 정부 공식 문서상에서 만큼은 공식 호칭을 불러야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가. 제 목 : 심재권 의원, “김정은에게 정중한 예 갖추라”고 한적 없어

나. 본 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9일 “뉴스쇼 판” 프로그램에서 “이 와중에 일부는 친북행위”(4월 12일 저녁시간 무렵부터는 “이 와중에 일부는 김정은 예우?”라고 바뀌어 게재되고 있음)라는 제목으로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이 “김정은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라”고 발언한 것처럼 편집하여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심재권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천의지를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적으로는 어떻게 부르든 적어도 정부

공식 문서상에서 만큼은 공식 호칭을 불러야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심재권 의원, “김정은 호칭 정중하게”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지난 4월 9일 「뉴스쇼 판」 프로그램에서 『도 넘은 ‘북한감싸기』라는 제목으로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은의 호칭을 정중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재권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천의지를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적으로는 어떻게 부르든 적어도 정부 공식 문서상에서 만큼은 공식 호칭을 불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의 본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TV조선에 2013년 4월 26일까지 「뉴스쇼 판」 프로그램 끝 부분에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그 동안 제목을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위치 및 크기와 동일하게,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각각 계속 표시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TV조선의 뉴스면(<http://news.tv.chosun.com/>)에 게시하는 VOD에도 반영한다.
4.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6. 피신청인이 위 제2, 3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3. 04. 2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TV 조 선** : 뉴스쇼 판 프로그램 『심재권 의원 “김정은 호칭 정중하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6일자 10:30)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인터넷 TV조선** : 『심재권 의원 “김정은 호칭 정중하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13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연구비 지원과 실적 과장을 위해 자기논문을 표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581 반론청구

신 청 인 : 손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3. 05. 09.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교수들의 ‘자기논문 표절’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교수인 신청인이 2008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공모에 제출한 논문과 관련하여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당시에는 국내 학회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으며, 2007년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을 수여한 교육부가 시상취소를 검토했지만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은 상훈은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자기표절을 한 적이 없고, 학회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한 사실도 없으며, 교육부가 ‘2007년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시상 취소를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심의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로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선일보** : 『연구비 따내려... 명문대 교수도 자기논문 다시 베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일자 10면)
- **내 용** : 서울의 K대학교 연구팀은 한 연구원의 석사 학위논문의 핵심 연구 데이터를 재탕해 WCU 연구 성과로 제출했다. 해당 연구팀 대표 교수는 “석사논문을 학술지에 인용 없이 다시 올리는 것은 학계의 관행”이라고 말했지만, WCU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연구재단은 “사업 취지에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연구비를 따오거나 자신의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학계에서 자기 표절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WCU 사업 공모 1차 심사를 통과했던 ○○대 S 교수도 제출 논문 자기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S 교수는 “(저명 교수의 논문을 읽고 싶어하는) 국내 학회들이 실어달라고 부탁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고, ○○대는 S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S 교수에게 ‘2007년 올해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여한 교육부는 시상(施賞) 취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연구재단은 “현재 S 교수의 상훈은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학 관계자는 “평생 한 분야만을 연구하는 교수·학자들은 항상 자기 표절 유혹에 시달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새 논문을 써야 실적이 쌓이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야의 교수들은 예전 연구에 약간의 성과만 보태 논문을 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때 문장을 손이라도 좀 보고 논문을 내야 하는데 그런 성의마저 안 보이는 교수들이 많다”고 했다.

표절에 관한 학계의 태도가 실적 부풀리기용 자기 표절까지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올해 3월 입각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각각 학술 논문과 박사 학위논문 자기 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청문회를 통과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8~2012년 6월 30일까지 교수 83명이 논문 표절로 각종 징계를 받았지만, 이 중 해임·파면은 24명에 그쳤다. 54명에게는 단순 경고·견책 등의 경징계 조치만 취해졌으며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랐다.

학계의 빈번한 자기 표절에 대해 한 서울대 교수는 “자정작용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15~20년 전쯤부터 학계에 양적인 연구 실적 측량 시스템이 도입됐고, 해외 학술지 게재 열풍이 불면서 교수들이 연구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졌다”면서 “이 때문에 논문을 통한 사회문제 논쟁이 사라졌고 서로의 논문은 보지 않는 풍토가 생겼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대 교수는 “일부 연구자들에게 자기 표절, 중복 게재 등 엄연한 연구 부정(不正)이 일종의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논문 게재 실적 등 양적 성과가 연구비 지원과 교수 개인의 승진·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부 교수들이 연구윤리를 저버리는 유혹에 빠진다”고 진단했다.

■ 자기 표절(Self-plagiarism)

자신의 옛 저작 중 상당한 부분을 똑같이 또는 거의 똑같이 다시 사용해 새로운 연구결과나 성과·업적으로 사용하면서 원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 학계에서는 ‘중복 게재’ 또는 ‘중복 출판’이라고도 불린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사회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죄의식 없는 ‘표절 대한민국’ <5> 양심 파는 대학”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가. 제 목 : 연구비 따내려... 명문대 교수도 자기논문 다시 베껴

죄의식 없는 ‘표절 대한민국’ <5> 양심 파는 대학’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일자 사회면 화면에 “연구비 따내려... 명문대 교수도 자기논문 다시 베껴”, “죄의식 없는 ‘표절 대한민국’ <5> 양심 파는 대학”이라는 제목 하에 연구비를 따오거나 자신의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학계에서 자기 표절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WCU 사업 공모 1차 심사를 통과했던 ○○대 S 교수도 제출 논문 자기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S교수는“(저명 교수의 논문을 읽고 싶어하는) 국내 학회들이 실어달라고 부탁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고, ○○대는 S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S 교수에게 ‘2007년 올해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여한 교육부는 시상(施賞) 취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연구재단은 “현재 S 교수의 상훈은 아무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보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S 교수는, 당시 “기 출판된 국문논문 연구를 기반으로 이후 나온 영문논문의 출판이 문제가 된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범적으로 국내외 관심 있는 관·산학연 각 기관의 독자들에게 필요한 연구결과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던 차라 이번일이 무척 당황스러울 뿐이다. 영문은 또 다른 저작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영문논문 작성 시 Journal의 방향에 따라 많은 수정이 가해질 때가 많다.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다른 언어로 된 국문과 영문 두 가지 논문이 동일하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으며 두 논문의 순기능을 위해 매진해 온 연구자로 이번 일이 혼동스러울 뿐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후 그는 논의 대상이 되었던 논문관련 국제 저널에 그 사안을 알리는 ‘사사’ 제출로 Corrigendum 을 출판하였으며 이러한 추가 ‘사사’가 불필요하다고 한 국제저널도 있었음을 참고할 때 더 이상의 불필요한 마녀사냥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연구결과를 국내 발표 1회로만 끝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할 때 작금의 논란은 우리글 연구결과 발표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측면에

서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9년에 수상내역을 재검토한 한국연구재단 역시 ‘S 교수의 상훈은 아무 문제가 없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아니라 수상의 근간이 되었던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그의 우수한 연구를 더 격려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기에 왜곡된 기사와 선정적인 표현으로 피해를 끼치는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라고 밝혀 왔습니다.

위의 사항을 기사가 나오기 전인 2013년 3월 31일 김○○ 기자로부터 반론 요청이 왔을 때 충분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기사와 선정적 표현(다시 베껴, 죄의식 없는, 양심 파는, 연구비 따내려,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중징계, 시상취소)으로 정신적 피해를 끼친 점에 기사는 사과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원 출처를 인용하지 않고,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타 신문사 인터넷 기사를 보고 위 기사를 쓴 것에 대해 기사는 사과하는 바입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명문대 교수 자기표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본지는 4월 1일자 10면 ‘표절 기획기사’에서 ○○대 S교수가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자기표절을 한 듯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측은 보도기사와 같은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혀왔으며, 해당 교수는 논의대상이 된 영문논문은 국문논문을 발전시켜 게재한 것으로 추후 인용사사를 게재했고 국내 학회들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국내학술지에 국문논문을 실었다고 해명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2007년 과학기술자상 시상취소를 검토한 바 없으며 한국연구재단은 시상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3년 6월 8일까지 <조선일보> 사회면에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실적 부풀리기 성행’)과 동일한 활자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고, 본문 활자 크기도 조정대상기사 본문과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제1, 2항의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6. 0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조선일보** : 『명문대 교수 자기표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8일자 10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조선닷컴** : 『명문대 교수 자기표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7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14

산양분유업체들이 산양분유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산양유 성분량을 허위로 광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583 · 584, 2013서울조정585 · 586(병합)

각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주)

피신청인 : 1. 한국방송공사, 2.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3. 05. 13.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산양분유의 성분으로 산양유 고형분 외에 유당(우유)이 함유되어 있는 것에 대해 산양분유 제조업체가 유당(우유)은 젖소유당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100% 산양유성분으로 된 산양분유는 원래 있을 수 없고, 유당(우유) 표기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타당하며 젖소유당이나 산양유당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없으며, 보도에서 과장광고의 근거로 제시된 홍보물은 산양분유의 것이 아니라 산양유아식의 홍보물이라며 정정보도와 함께 피신청인, 2에게 각각 100,000,000원과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들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KBS 미디어의 경우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한편, KBS-1TV의 경우 신청인이 인터넷 포털 및 기타 온라인매체 측에 조정대상 보도 및 조정대상 보도 관련 기사에 대한 접근차단을 요청할 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조정대상 보도 1

- **KBS-1TV** :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산양유만 100% 담았다? 소비자 우롱하는 산양분유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5일자 19:30)

■ **내 용** : (전략)

▷ 내레이션 : 소중남! 산양분유를 속속들이 파헤쳐 봤습니다. 첫 번째 의문! 산양분유는 100% 산양유 성분일까요?

▷ 소비자 인터뷰(방○○) : 당연히 100%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 프로그램 관계자 : 산양유 100%로 만들어진 건가요?

▷ 마트 점원 : 네. 이게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이거 인정하고 많이 사가요.

▷ 내레이션 : 판매 점원도 100% 산양분유라 자신하는데요, 직접 살펴봤더니 이게 뭘니까? 산양유 고형분 51.2%라구요? 100%는 커녕 산양유 고형분 함유량 12%도 있네요?

▷ 소비자 인터뷰(김○○) : 농락당하는 기분이예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도 100%인 게 있고 아닌 게 있다는 걸 소비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 소비자 인터뷰(김△△) : 산양유라고 하면 산양 젖으로 전체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 내레이션 : 이에 대한 업체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직접 찾아가봤는데요.

▷ 프로그램 관계자 : 문의 드리려고 회사에 방문을 했거든요.

▷ 내레이션 : 어렵게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 A업체 본사 관계자 : 어머니의 모유와 가장 비슷한 분유를 제조하고 그런 제품을 아이에게 먹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산양유 100%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나름 현명한 소비자들은 판단하고 계시겠죠.

▷ 내레이션 :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거 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를 찾아가봤습니다.

▷ B업체 본사 관계자 : 제가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순 없고요.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며칠 뒤 서면으로 온 답변입니다.

▷ 내레이션 : 산양유 성분만으로 만든 산양분유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이 광고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이 광고를 본다면 100% 산양유 성분으로 만들어진 분유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0년간 국내 분유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업계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 업계 관계자 인터뷰(이○○(가명)) : 산양유 성분이 20%나 30%나 100%나 다 산양유라는 명칭을 쓰다보니까 이게 엄마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산양분유가) 다 (산양유) 100%인 줄 알고 먹고 있거든요. 이런 건 정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내레이션 : 두번째 의문! 산양분유에 정작 산양유 성분은 50% 남짓! 그렇다면 나머지는 뭘로 만들어진 걸까요? 분유 성분표에서 공통으로 ‘유당’이라는 성분표 발견! 이게 도대체 뭘까요?

(중략)

▷ B업체 관계자 : 저희도 제품을 만들면서 원료라든가 사용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 아래에서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 쪽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없겠지만 고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양분유니까 산양 유당까지 다 포함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견 주신 건 해당 부서 쪽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레이션 : 대부분의 산양분유엔 젓소유당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왜 젓소라는 말은 표기하지 않은 걸까요? 조사에선 굳이 젓소 유당이라고 쓰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 내레이션 : 물론 모든 업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양유 유당을 쓰는 업체도 있는데요. 모든 제조사가 산양유 유당을 쓸 수는 없는 걸까요?

▷ 프로그램 관계자 : 산양분유에 젓소 유당을 왜 쓰는 건가요?

▷ 업계 관계자 인터뷰(이○○(가명)) : 제가 판단할 때는 첫째로는 (산양 유당을) 구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원가 부담이 큼니다. 젓소 유당과 산양 유당의 가격차가 5~6배 정도 납니다. 즉, 산양 유당이 5~6배 정도 (젓소 유당에 비해) 원가가 높습니다.

▷ 프로그램 관계자 : 그 이유 때문에... 원가 절감의 차원인가요?

▷ 업계 관계자 인터뷰(이○○(가명)) : 원가 절감은 아니고요. 산양분유의 본질이죠. 산양분유는 반드시 산양 유당을 써야 하는 것이 맞죠.

▷ 소비자 인터뷰1 :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몇 배나 주고 먹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 소비자 인터뷰2 : 말이 안 되죠. 그럼 그런 걸 표시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소비자 인터뷰3 : 좀 속은 기분은 드는데... 아기 건 전부 좋은 것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좀 뒤통수를 맞은 기분도 들고 그러네요. 가격차가 적은 것도 아닌데...

▷ 내레이션 : 더군다나 시중에 판매되는 산양분유는 일반 분유의 2배 이상! 모유와 유사한 성분으로 소화흡수가 잘 되고 아기를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 인터뷰(세종대 생명식품공학부 김□□ 교수)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산양유가 우유보다 훨씬 더 좋든지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굉장히 미비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에서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황금변이나 점도가 낮은 변을 보는 데에 (산양분유가)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 진행자 멘트 : 자, 어떻습니까? 젓소라는 말을 교묘하게 빼 소비자들을 기만한 제조사들에게 시민들이 말합니다.

▷ 소비자 인터뷰(김◇◇) : 산양분유면 산양유의 함량도 높이고 이름에 맞게 (산양의) 성분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만약 젓소 유당이 들어갔다면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크게 알아볼 수 있게 표기해야 할 것 같아요.

▷ 소비자 인터뷰(김◎◎) : 성분 함량 같은 것을 확실하게 기재해서 소비자들이 헛갈리지 않도록 하고 가격 조정도 해서 어린 아이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고 바른 먹거리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제조사들이 좋은 분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숨김없이 만들어 주세요~!

조정대상보도 2

- **KBS미디어** : 『[다시보기] 산양유만 100% 담았다? 소비자 우롱하는 산양분유의 진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5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 1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KBS-1TV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시청자가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 1은 정정보도 사실을 통상적인 프로그램의 예고편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고 방송하여 시청자들에게 미리 알린다.
3.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피신청인 2는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KBS 홈페이지 <소비자고발> 섹션 기사목록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5.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산양분유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2월 15일자 “산양유만 담았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산양분유의 진실” 편에서 기존업체들의 산양분유가 100% 산양유성분이 아니며 젓소유당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100% 산양유 성분으로 된 산양분유는 원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산양분유 업체들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없으며, 특정업체 제품만 100% 산양유성분인 것처럼 보도된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기존 산양분유 업체가 100% 산양유성분이라고 광고했다는 증거로 보여준 홍보물은 산양분유가 아닌 산양유아식의 홍보물입니다. 그 내용 또한 전체가 아니라 “유성분 중 산양유성분 100%”라는 것이기에 사실 그대로이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셋째, 젓소유당이나 산양유당이라는 말은 특정업체가 홍보를 위해 만들어낸 용어로서 올바른 표시방법이 아닙니다. 기존 산양분유 업체들은 유당성분에 대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정직하게 표시해 왔으며,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없습니다.

넷째, 유당은 우유, 산양유에 관계없이 구조와 효능이 동일한 성분입니다. 그러므로 산양유와 우유의 유당이 다르고, 산양분유라면 산양유당을 써야 한다는 특정업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최초로 산양분유를 개발하여 20여 개국에 수출해 온 뉴질랜드 테어리고트사의 표준적 조제법 또한 우유유래 유당을 사용합니다.

다섯째, 산양분유의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인터뷰는 일부의 의견일 뿐이며, 많은 의사와 학자들은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아기들에게 산양분유를 권장합니다.

또한 산양분유는 다수의 임상실험을 통해 아토피 개선, 모유에 가까운 변성 등 특징점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영유아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25년간 세계 각국의 시장에서 직접 검증을 받아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1. 보도문

가. 제 목 : 산양분유의 산양유 성분에 관한 반론보도

나. 본 문 : 지난 2월 15일 제 246회에 방송한 <산양유만 100% 담았다? 산양분유에 관한 오해와 진실>편에서 산양분유의 유성분 중 산양유고형분 외에 유당(우유)이 함유되어 있는 것에 대해 산양분유 제조업체가 유당(우유)은 젖소유당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측은 100% 산양유성분으로 된 산양분유는 원래 있을 수 없고, 유당(우유) 표기는 현행 관련법 규정에 따라 타당하며 젖소유당이나 산양유당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는 “다수의 임상실험을 통해 산양분유가 모유에 가장 가깝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며 산양분유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본 방송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가 100% 산양유성분이라고 광고했다는 근거로 방영된 홍보물은 산양분유의 것이 아닌 산양유아식 홍보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1은 위 보도문을 2013년 5월 31일 <똑똑한 소비자리포트>프로그램 말미에 방송하되, 제목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중에 사용된 관련 화면을 방송하면서, 본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단 피신청인 1의 사정으로 결방 시에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 회에 방영한다.

3. 피신청인 1이 위 제2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 1은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 1이 위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1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피신청인 1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6. 신청인이 인터넷포털 및 기타 온라인매체 측에 조정대상보도 및 조정대상보도 관련 기사에 대한 접근차단을 요청할 시 피신청인 1은 협조한다.

2013. 05. 28.

조정성립사항 2

1. 보도문

가. 제 목 : 산양분유의 산양유 성분에 관한 반론보도

나. 본 문 : 지난 2월 15일 제 246회에 방송한 <산양유만 100% 담았다? 산양분유에 관한 오해와 진실>편에서 산양분유의 유성분 중 산양유 고형분 외에 유당(우유)이 함유되어 있는 것에 대해 산양분유 제조업체가 유당(우유)은 젖소유당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측은 100% 산양유성분으로 된 산양분유는 원래 있을 수 없고, 유당(우유) 표기는 현행 관련법 규정에 따라 타당하며 젖소유당이나 산양유당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는 “다수의 임상실험을 통해 산양분유가 모유에 가장 가깝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며 산양분유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본 방송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가 100% 산양유성분이라고 광고했다는 근거로 방영된 홍보물은 산양분유의 것이 아닌 산양유아식 홍보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1이 위 제1항의 보도문을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에 방송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신청인 2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는 피신청인 2의 홈페이지 내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코너 내 ‘방송다시보기’ 코너(http://www.kbs.co.kr/1tv/sisa/1004/view/old_view/63916_index.html)에 게재한다.

3. 피신청인 2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는 피신청인2의 홈페이지 내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코너 내 '방송다시보기' 코너에 있는 '조정대상보도' (http://www.kbs.co.kr/1tv/sisa/1004/view/old_view/2106118_63918.html)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다.
4. 피신청인 2가 위 제2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 2는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 2가 위 제2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2 및 피신청인 2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6. 피신청인 2가 위 제2항 내지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3. 05. 2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KBS-1TV** :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산양분유의 산양유 성분에 관한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31일자 19:30)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KBS미디어** : 『[다시보기] 산양분유의 산양유 성분에 관한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15

신청인 회사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고화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납품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648·649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3. 05. 27.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회사가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고화제(매립지를 덮는 흙을 만드는 재료)를 만들어 이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납품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금강유역환경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고화제에 사용된 폴리실리콘 제조 공정 부산물은 발암물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정정보도 및 8,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은 후속보도를 게재했고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연합뉴스** : 『수도권매립지에 유해 매립자재 납품 의혹… 경찰 수사』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일자)

- **내 용** :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고화제(매립지를 덮는 흙을 만드는 재료)가 사용됐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2일 인천시 서구 ○○동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 A업체가 매립지를 덮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든 고화제를 사용했다는 고발이 들어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군에 있는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고화제를 납품해 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성분을 검사하고 있다”면서 “고발대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관련 업체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제보한 A업체의 관계자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A사가 원료비를 아끼려고 폴리실리콘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든 자재로 고화제를 만들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납품했고 고화제 샘플조사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사는 2011년 6월과 7월에도 불량 고화제를 만들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사는 또 고화제의 시험성적서도 2011년 4월과 8월 두 차례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A업체가 납품한 고화제를 전북대 공학기술연구센터에서 성분검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젠과 실란이 검출됐다.

A 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매립지관리공사에 고화제 6만8천935t을 납품했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납품받은 고화제의 50%가 넘는 수치다.

이○○ 매립지관리공사 자원사업실 부장은 “A업체가 고화제를 납품할 당시 2011년 6월 10일과 7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불량 고화제를 납품했다”면서 “고화제 검사 담당 직원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보고를 해 납품을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화제가 단시간에 생산할 수 있지 않아 수급에 문제가 있어 2012년 2월에 다시 A업체로부터 계약기간인 2012년 12월까지 고화제를 다시 납품받았다”면서 “계약이 끝난 뒤로는 불미스러운 여러 사건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고화제를 자체 생산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A업체의 대표이사는 “아직 경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당시에 벤젠과 실란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정성분석(성분검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 유해성 여부를 따지려면 정량분석(기준치 이상 검출 검사)를 해야한다”면서 “정성분석은 소량만 들어 있어도 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누군가 우리 업체를 음해하려는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불량 고화제에 대한 고발을 보고받았지만 현장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인터넷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여,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수도권매립지에 유해 매립자재 납품 의혹…경찰수사’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4월 2일자 사회면에 “수도권매립지에 유해 매립자재 납품 의혹…경찰수사”라는 제목으로 ‘A’사가 수도권매립지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폴리실리콘 제조공정 유해 부산물로 고화제를 만들어 납품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 분석의뢰한 시험 결과 및 전북 완주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의뢰한 시험 결과 모두, 고화제에 사용된 폴리실리콘 제조공정 부산물은 발암물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무해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 연합뉴스 : 『매립지 발암물질 고화제 의혹... 공사 “안전 문제 없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일자)
- 내 용 : 수도권매립지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고화제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매립장을 대상으로 페놀과 벤젠 등 유해 물질 검사를 매달 해 온 결과 늘 기준치로 나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매립지공사 자회사인 환경 조사업체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시행한 조사에서 페놀은 2012년 2월 딱 1차례 검출됐는데 수치가 2.7ppm으로 기준치인 4ppm 이내였다.

벤젠은 2차례 검출됐다. 2011년 6월 0.6ppm, 2012년 3월 0.1ppm으로 기준치인 1ppm 이내로 나왔다.

매립지공사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된 데다 의혹이 제기된 제2매립장 내 고화제의 양이 매립 폐기물의 양에 비해 미미해 영향이 없다고 했다.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제2매립장 매립 폐기물의 양은 6천325만t이고 문제가 된 고화제의 양은 148t이다.

매립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발암물질이 섞인 고화제가 실제 매립지에 납품됐다고 해도 매립장에서 일했던 분이나 주변 주민에게 유해한 영향이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A업체가 매립지를 덮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든 고화제를 사용했다는 고발이 들어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 례 16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무자격업체에 잠수용역을 맡겨 정부의 바다숲 조성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부산조정20·21, 2013부산조정22·23(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13. 06. 07.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바다숲 조성사업과 관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해양 관련 '잠수용역 사업'은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무자격업체에 맡겨 부실의혹이 일고 있으며, 공단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기간과 사업비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는 '수퍼갑'의 횡포를 휘둘러왔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공단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잠수용역은 자격업체에만 용역을 맡기고 그렇지 않은 잠수용역은 비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맡겨왔으며, 또한 과업내용과 사업 기간에 따른 비용 산정은 정부공인기관의 원가계산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총 6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했다.

조정대상보도

- 부산KBS-1TV : (1) KBS 뉴스 9 프로그램 『바다숲 조사 무자격자에게 용역 맡겨』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0일자 21:00)
- 내 용 : ▷ 아나운서(남)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아나운서(여) : KBS 9시 부산뉴스입니다.

▷ 아나운서(남) : 오늘은 바다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첫 바다식목일입니다.

▷ 아나운서(여) : 하지만 푸른 바다숲이 제대로 가꿔질지 의문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관련 사업을 무자격업체에 맡겨 부실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바다 속에서 다양한 생물들의 은신처가 되는 물고기집. 인공어초입니다.

인공어초를 이용해 바다숲을 조성하는 사업은 전문 기술이 필수적인 분야, 이 때문에 해양관련 ‘잠수조사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이 사업을 무자격자에게 맡겨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참여업체 42곳 가운데 등록 업체는 11곳, 나머지 31곳은 관련 자격증이 없는 미등록 업체입니다.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여러 가지 법을 전부 적용해서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 기자 : 그러나 무자격자가 맡은 사업은 재하도급으로 이어지고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고 관계업자들은 말합니다.

▷ 해양 관련 등록업체 대표 : 기술자도 확보하지 않고 페이퍼 컴퍼니들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수주를 하고 난 뒤에 하도를 줍니다. 그 자체가 용역이 백프로 부실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 기자 : 게다가 입찰 결과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무한한 생명의 보고인 바다의 미래를 법도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사업을 발주하는 이런 공단에 맡겨도 되는 걸까요? 공단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뉴스 최○○입니다.

■ **부산KBS-1TV** : (2) KBS 뉴스 9 프로그램 『수퍼갑의 횡포 사업비 후려치기』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5일자 21:00)

■ **내 용** : ▷ 아나운서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무자격자에게 관련 사업을 맡겨드렸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공단이 사업기간은 물론 비용도 제 멋대로 정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는 등 이른 바 수퍼갑의 횡포를 휘둘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해양조사업체를 운영하는 곽○○씨, 곽씨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지난해 발주한 전국 갯 녹음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국 15개 지점에서 갯 녹음조사를 하면서 잠수사가 실제 바다에서 작업한 날은 모두 126일 재경비와 기술료를 모두 다 빼고 잠수인력의 인건비와 숙박비 선박 용선료만 따져도 2억6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지급한 전체 사업비는 1억4천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 업체대표 : 등록된 대가대로 대가를 정당한 대가로 지불을 해야는데 그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그에 맞는 용역 수행이 되지 않는거죠, 부실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 기자 : 공단 측은 작업과 난이도에 따라 대가기준을 달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 공단 :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직업을 단순화 시킨다던지 좀 더 고난도의 작업을 요구하는 작업에 따라서 대가기준을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 기자 : 그러나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서 제시하는 대가기준표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해도 숙련도에 따른 잠수사 인건비등 하루 평균 비용은 670만 원 실제 작업한 126일로 계산하면 총 금액은 8억4천만 원 공단이 준 돈에 6배 수준입니다. 여기서 공단은 잠수인력에 게 4대 보험도 적용하지 않아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해양업체 : 뚜껑을 열어보면 이진 부러먹는거지, 머슴이지 머슴. 그래도 가서 일을 안 하면 패널티를 주지, 업자는 죽어라 하다보니까.

▷ 기자 : 무자격자에게 일감 몰아주기였다 사업비 후려치기까지 슈퍼갑 공공기관의 횡포가 도를 넘으면서 부실사업은 물론 해양수산분야 종사업체가 고사위기에 놓였습니다. KBS뉴스 최○○입니다.

조정신청취지

1. 2013부산조정20·21 관련

가.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을 KBS1-TV <뉴스 9>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2. 2013부산조정22·23 관련

가.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 (2)를 KBS1-TV <뉴스 9>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 (2)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가. 제 목 : ‘바다 숲 조사 무자격에게 용역 맡겨’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2013년 5월 10일 및 5월 11일 뉴스프로그램에서 ‘바다 숲 조사 무자격자에게 용역 맡겨’ 라는 제목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바다 숲 조사 잠수용역을 발주하면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자격업체가 아닌 무자격 업체에 맡겨 재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의 부실 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입찰결과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공단은 잠수용역의 과업특성 상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잠수용역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만 용역을 맡기고 해당하지 않는 잠수용역은 비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맡겨 온 바, 무자격자에 맡기지 않았고, 입찰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정보처리장치인 나라장터에 공개되어 있으며 제안서 평가점수에 대해서 공단에게 공개 의무가 없는 것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가. 제 목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슈퍼갑 횡포’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2013년 5월 15일 뉴스프로그램에서 ‘슈퍼 갑의 횡포 사업비 후려치기’라는 제목으로 전국 갯 녹음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제보업체는 실제 작업한 일수가 126일임에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사업기간 및 비용을 제 멋대로 정하고 이를 어기면 임의로 불이익을 주는 등 슈퍼갑의 횡포를 휘둘러 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실제 작업일수는 62일로 보도에서 언급한 126일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대가 산정 시에는 해상 날씨 등을 고려하여 74일로 설계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과업내용과 사업 기간에 따른 비용 산정은 정부공인기관의 원가계산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신청인이 임의로 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기간 및 비용 산정을 임의로 하여 슈퍼 갑의 횡포를 하고 있으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업비를 후려쳐서 부실을 조장한다고 보도를 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수산자원공단 “무자격자에게 용역 안맡겨”

나. 내 용 : 지난 5월 10일과 15일 바다숲 조성 보도와 관련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 잠수용역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용역을 맡기고, 비엔지니어링 잠수용역은 일반잠수사업자에게 맡겨 무자격자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과업내용과 사업기간에 따른 비용 산정은 정부 공인기관의 원가 계산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임의로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3. 7. 3. KBS부산 〈뉴스9〉 및 2013. 7. 4. KBS부산 〈뉴스광장〉 프로그램 중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제목, 본문, 보도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13. 07. 0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부산KBS-1TV : (1) KBS 뉴스 9 프로그램 『수산자원공단 “무자격자에 용역 안 맡겨”』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3일자 21:00)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부산KBS-1TV : (2)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수산자원공단 “무자격자에 용역 안 맡겨”』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4일자 06:00)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17

한국은행이 국내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000여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885 · 886, 2013서울조정887 · 888(병합)

각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은행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3. 06. 13.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한국은행이 자신들이 보유한 국내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000여 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한국은행의 국내은행 주식처분 여부나 매각 가격은 한국은행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국은행의 국내은행 지분매각을 놓고 '세금손실'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국은행이 손실 회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주간조선 :**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커버스토리면)

■ **내 용 :** 한국은행(총재 김○○)이 자신들이 보유한 한국○○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033억7,150만 원(이하 1,034억 원으로 표기)을 고스란히 날렸다. 한국은행이 날린 세금 1,034억 원만큼 사실상 이득을 본 곳은 △△금융지주(회장 김□□)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1,034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고스란히 날린 이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도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배경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나아가 이렇게 되면 ‘(업무상)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은 △△금융지주에 이은 한국○○은행(행장 윤○○·이하 ○○은행으로 표기)의 2대 주주였다. ○○은행은 1967년 한국은행 외환관리과에서 분리돼 만들어졌다. 사실 한국은행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영리기업이나 단체를 소유·운영할 수 없다’는 ‘한국은행법(103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중은행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1967년 한국은행 외환관리과에서 분리된 ○○은행에 한국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100% 출자하면서, 이 역사를 인정받아 ○○은행 지분을 계속 보유해 왔다. 특히 이를 합법 화해 주기 위해 ‘한국은행의 ○○은행 지분의 소유를 인정’해 주는 ‘○○은행법(8조)’의 특례 조항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은행이 영리기업인 △△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은행 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1989년 ○○은행법이 폐지 되면서 한국은행법 103조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존 ○○은행 주식 이외 영리기업인 △△금융지주 지분은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은행 지분은 6.1%(3950만주)로 확정된 장부 가치로만 ‘주당 1만 원’, 총 3,950억 원 규모였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초 자신들이 보유하던 ○○은행 지분을 주당 7,383원씩 총 2,916억2,850만 원(이하 2,916억 원으로 표기)에 △△금융지주에 매각했고, 이로 인해 1,034억 원에 이르는 세금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은행 지분 6.1%는 세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1,034억 원의 손해는 온전한 세금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중략)

한국은행은 4월 초까지만 해도 ‘1,000억 원대 세금 손실 발생, 주주가치 훼손, 최대주주의 비상식적 경영’ 등의 이유로 △△금융지주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강력히 반대했었다. 당시 한국은행은 ○○은행 주식 5.28주와 △△금융지주 주식 1주를 맞교환하는 방안과, 하나금융지주가 제시한 주식 매수청구 가격(주당 7,383원)을 비상식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은행은 올 2~3월 △△금융지주가 정한 ○○은행 주식 1주 매수청구 가격 7,383원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법률 검토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회에 7,383원에 불과한 매수청구 가격 조정을 의뢰하기도 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금융지주가 강행한 ○○은행 주식과 △△금융지주의 ‘포괄적 주식교환’ 자체의 법적 문제에 대해 지난 3월 이후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법률 자문도 받았다. 한국은행 신○○ 팀장은 “세금 1,000억 원이 날아간 건 올 1월 △△금융지주가 2대 주주인 한국은행과 아무 협의도 없이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자기들끼리 일을 벌였기 때문”이라며 “△△금융지주가 추진한 ‘포괄적 주식교환’ ‘○○은행 상장폐지’ ‘저가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에 대해 소송 문제까지 포함한 법률 자문을 얼마 전까지 받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렇던 한국은행이 3월 중순 김○○(66) 총재의 최종 결정으로 ○○은행 지분을 △△금융지주에 넘겼다.(최종 지분매각 대금 결제는 4월 3일쯤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그 후 부터 세금 손실 회수 등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소극적 입장’으로 갑작스럽게 자세를 전환했다. 즉 1,000억 원대의 손실을 빚은 ‘포괄적 주식교환’ 결정을 문제 삼기 위한 소송 제기 등 법률 자문을 한 달 전부터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지주·○○은행을 상대로 아무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한국은행의 ‘기류 변화’는 한국은행 관계자의 말에 그대로 녹아 있다. 신○○ 팀장은 “지분 60%를 가진 △△금융지주가 지배권을 비상식적으로 행사한 횡포”라고 불만을 털어 놓으면서도 “한국은행이 애초 ○○은행에 출자를 한 건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출자한 건 이윤 추구 때문이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봐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장부상 세금 손실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 △△금융지주에 대한 정서상...”이라며 말을 흐렸다.

그런 신 팀장에게 “이미 소송 등 법률 자문·검토까지 받은 상황에서, 세금 회수를 위한 조치가 더 늦어지면 이번 사건이 희석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럴 수도 있지만...”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곤 “법률 자문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한국은행이) 소송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다”며 “그냥 모든 걸 고려해 계속 고민 중인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에게 “법적 자문까지 끝내놓고 손실이 난 세금 회수를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라도 자칫 (업무상) 배임 논란 같은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아 달라”고 했다.

공중으로 날아간 1,000억 원대 손실 회수에 대한 의지가 더는 없어 보이는 한국은행의 소극적 자세가 이어지자 금융시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금융지주와 ○○은행을 상대로 1,000억 원대 세금 손실, 주주 가치 훼손과 관련한 소송 등 법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이다. 법적 문제보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한국은행의 행보가 소극적으로 전환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지주의 ○○은행 인수는 △△금융지주는 물론 지난해 3월까지 △△금융지주 회장이었던 김○○(70)씨의 최대 치적으로 포장돼 있다. 알려진 대로 김○○ 전 회장은 이명박(MB) 정권 시절 MB 금융인맥의 좌장이었다. 김○○ 회장이 ○○은행 인수를 주도한 지 1년 만에, 김 회장의 최측근으로 사실상 영향권 아래 있는 현 △△금융지주 김□□ 회장이 ‘포괄적 주식교환’과 ○○ 은행 상장폐지를 주도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주식교환’의 맞상대였던 김○○ 현 한국은행 총재 역시 금융권에서는 MB 금융인맥의 핵심으로 분류되고 있다. 금융권의 마지막 MB맨으로 생존해 있는 김○○ 총재가 같은 MB 금융인맥인 김○○ 전 회장의 치적은 물론, 김 회장의 최측근 김□□ 회장이 주도한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일각의 해석이다. 김○○ 총재가 승소 여부를 떠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은 수장인 김○○ 총재가 △△금융지주를 향해 세금 회수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나타내지 않는 한 한국은행 실무진의 독자 판단으로 법적 대응 같은 움직임을 취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게 금융시장의 대체적 시각이다.

물론 끈끈한 MB 금융인맥으로 엮인 한국은행과 △△금융지주, 김○○·김○○·김□□씨의 관계가 날아간 국민 세금 1,034억 원 회수 의지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지 국민의 세금 1,034억 원을 날린 지 두 달이 돼 가고, 또 날린 세금 회수를 위한 법적 자문을 받은 지 한 달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이 떠도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의 전○○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상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여러 관련 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이라며 “하지만 세세히 들여다보면 법적 논란과 문제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의견을 요청한 또 다른 금융·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시간이 흘러 사건이 희석되기 전에 공적기관인 한국은행이 법적 대응 등 어떤 형태로라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게 1,000억 원이 넘는 세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다.

조정대상보도 2

- 인터넷 주간조선 :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조선의 커버스토리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1)을 게재하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주간조선 인터넷뉴스(weekly.chosun.com) 커버스토리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2)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2)를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그리고,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글자 크기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1)>

가. 제 목 : 본지가 2013. 6. 10. 게재한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나. 본 문 : 본지는 지난 2013년 6월 10일자 2260호 커버스토리에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며, 동 기사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한국은행이 자신들이 보유한 한국○○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033억 7,15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문제는 한국은행이 1,034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고스란히 날린 이후,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행이 3월 중순 김○○ 총재의 최종결정으로 ○○은행 지분을 △△금융주주에 넘긴 이후 세금 손실 회수 등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 ‘소극적 입장’으로 자세를 전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주식 보유는 이윤추구 목적이 아닌 수출 진흥 및 외국환업무 지원 등 국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은행법제 4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은행 주식 매각가격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등 주식 보유 동기 및 매각 과정상에 특수성이 있었으며 더욱이

배당금을 포함한 총 회수액이 5,977억 원으로 출자원금을 2,000억 원 이상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주식 매각 이후 2013. 4. 9. 금융위원회에 주식매수 가격 상향 조정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고, 이후 법원 앞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 등 법에 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등 출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다음의 기사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기사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해왔기에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동 제목은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김○○ 총재가 마치 △△금융 지주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행 김○○ 총재는 △△금융지주와 관련하여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취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본지는 △△금융지주 김○○ 전 회장이 이명박(MB)정권 시절 MB금융인맥의 좌장이고 김○○ 한국은행 총재 역시 MB금융인맥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면서 금융권의 마지막 MB맨으로 생존해 있는 김○○ 총재가 같은 MB 금융인맥인 김○○ 전 회장의 치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일각의 해석이며, 이는 김○○ 총재가 승소여부를 떠나 △△금융지주와 한국○○은행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동행을 대표하는 김○○ 총재가 지난 2013. 5. 3. 인도 뉴델리 ADB총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앞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취할 조치는 기간 내에 다 하겠다”고 밝히는 등 동 사안에 대하여 그동안 적극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는바, 위 보도에서와 같이 한국은행 총재가 법적 조치를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융권의 마지막 MB맨으로 생존해 있는 김○○ 총재가 같은 MB 금융인맥인 김○○ 전 회장의 치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왜곡된 사실관계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김○○ 총재와 한국은행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여 왔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하여 한국은행과 한국은행 김○○ 총재에게 사과를 표명합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

가. 제 목 : 본 인터넷뉴스가 2013. 6. 10. 게재한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나. 본 문 : 본 인터넷뉴스는 지난 2013. 6. 10. 커버스토리에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며, 동 기사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본 인터넷뉴스는 한국은행이 자신들이 보유한 한국○○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033억 7,15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문제는 한국은행이 1,034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고스란히 날린 이후,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행이 3월 중순 김○○ 총재의 최종결정으로 ○○은행 지분을 △△금융지주에 넘긴 이후 세금 손실 회수 등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 ‘소극적 입장’으로 자세를 전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주식 보유는 이윤추구 목적이 아닌 수출 진흥 및 외국환업무 지원 등 국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은행법 제4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은행 주식 매각가격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등 주식 보유 동기 및 매각 과정상에 특수성이 있었으며 더욱이 배당금을 포함한 총 회수액이 5,977억 원으로 출자원금을 2,000억 원 이상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주식 매각 이후 2013. 4. 9. 금융위원회에 주식매수 가격 상향 조정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고, 이후 법원 앞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 등 법에 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등 출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본 인터넷뉴스는 다음의 기사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기사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해왔기에 알려드립니다.

본 인터넷뉴스는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동 제목은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김○○ 총재가 마치 △△금융지주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행 김○○ 총재는 △△금융지주와 관련하여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취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본 인터넷뉴스는 △△금융지주 김○○ 전 회장이 이명박(MB)정권 시절 MB 금융인맥의 좌장이고 김○○ 한국은행 총재 역시 MB금융인맥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면서 금융권의 마지막 MB맨으로 생존해 있는 김○○ 총재가 같은 MB 금융인맥인 김○○ 전 회장의 치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일각의 해석이며, 이는 김○○ 총재가 승소여부를 떠나 △△금융지주와 한국○○은행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동행을 대표하는 김○○ 총재가 지난 2013. 5. 3. 인도 뉴델리 ADB총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앞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취할 조치는 기간 내에 다 하겠다”고 밝히는 등 동 사안에 대하여 그동안 적극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는바, 위 보도에서와 같이 한국은행 총재가 법적 조치를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융권의 마지막 MB맨으로 생존해 있는 김○○ 총재가 같은 MB 금융인맥인 김○○ 전 회장의 치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왜곡된 사실관계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김○○ 총재와 한국은행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여 왔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하여 한국은행과 한국은행 김○○ 총재에게 사과를 표명합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한국은행의 ○○은행 지분 매각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나. 내 용 : 본보 지난 2013년 6월 10일자 2260호(주간조선) 커버스토리에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행이 자신들이 보유한 ○○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033여 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한은의 ○○은행 주식처분 여부나 매각가격은 한국은행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국은행의 ○○은행 지분매각을

놓고 ‘세금손실’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굳이 손익을 논하자면, ○○은행 지분 매각을 통해 한국은행이 받은 액수는 출자원금을 2,000억 원 이상 상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보는 ”한국은행이 지분매각 이후 손실부분을 회수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한은은 ○○은행 주식 매각 이후 금융위에 주식매수가격 상향조정청구를 비롯해 법원 앞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등 출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본보는 “금융권의 마지막 MB맨으로 생존해 있는 김○○ 총재가 같은 MB 금융인맥인 김○○ 전 회장의 치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일각의 해석”이며 김 총재가 △△금융 앞에서 유독 소극적인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김○○ 총재는 지난 2013. 5. 3. 인도 뉴델리 ADB총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앞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취할 조치는 기간 내에 다 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 사안에 대하여 그동안 적극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으며, 김 총재가 △△금융지주와 관련하여 유착관계를 의심 받을만한 행동을 취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주간조선 제2264호(2013. 7. 8. 발행) 「커버스토리」지면에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 및 크기는 조정대상기사 제14면 발문(“1,000억 원 대의 손실을 빚은 ‘포괄적 주식교환’ 결정을 문제삼기 위한...”)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2단 이상에 걸쳐 박스기사로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2013년 7월 9일(화) 12:00부터 인터넷 주간조선의 홈페이지(<http://weekly.chosun.com>)의 커버스토리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및 제3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및 제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6.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및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 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3. 07. 0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주간조선** : 『한국은행의 ○○은행 지분 매각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16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인터넷 주간조선** : 『한국은행의 ○○은행 지분 매각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18

교사인 신청인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육감에게 존경심을 표하고자 허리를 굽혀 악수를 청했다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경기조정기·72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13. 06. 17.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교사인 신청인이 근무평정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지역 교육감에게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 허리를 굽혀 악수를 청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사진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교육감이 먼저 악수를 청해 단순 응대한 것이며, 보도내용으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교직활동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사과보도를 게재하는 동시에 조정대상기사와 더불어 신청인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향후 제3자에 의해 재보도 되었을 경우 삭제요청을 하도록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아시아뉴스통신 :** 『나근형 교육감,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현장지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 **내 용 :**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7일 인천○○초등학교에 방문해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현장지도 했다.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나교육감이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악수를 청하는 여교사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시아뉴스통신(<http://www.aneusa.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기사가 절대로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검색되어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나근형 교육감 현장지도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뉴스통신은 지난 5월 7일자 사회면에 “나근형교육감,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현장지도. 입만열면 청렴, 몸으로는 솔선수범...犯?” 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신문에 여교사가 마치 사진속의 여교사가 나근형 교육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굽신거리는 것처럼 직접 보지도 않은 사건을 단지 사진만 보고 추측성 허위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사진속의 여교사는 단지 어린인 나 교육감이 먼저 악수를 청해 어른에 대한 예의로 악수에 응대하였고, 더구나 90도로 고개를 숙인 적이 전혀 없으므로 잘못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인천 ○○초, 나근형 교육감 현장지도’ 관련 정정보도

나. 내용 : 본지는 지난 5월 7일자 『나근형 교육감,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현장지도』 제목의 보도와 관련하여, 사진에 게재된 인천○○초등학교의 여교사는 “당시 나교육감이 먼저 악수를 청해 단순 응대한 것이다.”라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 기사에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해당 여교사에게 지면을 빌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3. 7. 2. 09:00부터 7. 4. 09:00까지 2일간 <아시아뉴스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newsa.com>)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제목 및 본문활자는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한다.
3. 피신청인은 인터넷 조정대상기사(<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489306&thread=01r01>) 및 신청인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향후 제3자에 의해 재보도 되었을 경우 삭제요청을 하도록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을 피신청인이 이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7. 0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아시아뉴스통신 : 『‘인천 ○○초, 나근형 교육감 현장지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19

성남시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조폭수준의 공권력 행사라고 보도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921·922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성남시청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제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3. 06. 18.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조폭수준의 무자비한 공권력을 행사했으며, 이후 일련의 행위에 대해 사과의 뜻을 공식 발표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공무집행은 적법한 것이며, 일련의 행위에 대해 사과의 뜻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 및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경제투데이 :** 『[기자수첩 ‘과력난신’ 성남시의 LH 습격사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 **내 용 :** # 80년대 조폭도 아니고 수백명에 이르는 직원과 포크레인까지 앞세워 마치 시위 진압을 연상케 한 성남시의 LH 진입시도는 공직조직의 도덕성을 망각한 비뚤어진 공권력 행사의 표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K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본사 사옥 앞에서 펼쳐진 성남시 공무원들의 습격사건은 마치 권력의 힘을 통해 상대방을 통제하려던 80년대 초 군부독재나 폭력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조직폭력배의 모습을 재연하는 착각에 빠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각본을 쓰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 수백명이 대형 포크레인을 앞세워 등장한 작품 ‘LH 습격사건’은 짧은 기간 수 많은 관객들의 시선을 잡아끄는데 성공한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를 방불케 했다.

불법구조물을 철거한다는 시나리오를 앞세운 한 무더기 성남시 공무원들의 액션장면이 등장하는 영화의 시작은 이렇다.

지난 2009년 말 1900가구 규모의 백현마을 이주민 아파트 단지가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입주가 지연돼 LH가 일반임대공급 방식으로 분양공고를 시도한데 대해 성남시가 불법 분양이라고 반대하면서 비롯됐다.

성남시는 중단된 재개발사업을 재개하고 세입자를 먼저 이주민 단지로 이전할 것을 요구한 반면 LH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성남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재촉하더라도 장기간 입주가 지연돼 유령단지로 전락할 수 있어 차라리 일반 임대분양을 통해 단지를 살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시를 관장하는 성남시의 요구를 LH가 일방적으로 묵인하고 문제의 백현마을 이주민 단지에 대해 LH가 일반 분양을 위한 공고를 시도하자 자존심이 상한 성남시는 LH본사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위해 성남시 소속 공무원 수백명이 LH 본사를 습격하며 한낮의 거친 액션을 소화해 낸 것이다.

지난 29일 성남시는 공적 기관인 성남시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이성에서 벗어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법과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법과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성남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적기관의 상식을 벗어난 구태행위를 지켜본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한 도시를 책임지는 공적기관이 자신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기업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한 행태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채 뒤늦게 법과 절차를 찾는 성남시의 빛나간 논리는 이해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고스란히 투영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성남시가 시민들의 주택복지를 위해 개발사업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뜻에 반한다 하여 공기업을 상대로 조폭 수준의 무자비한 공권력 행사는 결과적으로 공적기관의 도리를 벗어난 낯 뜨겁고 추한 이번 사건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LH 습격사건을 진두지휘한 성남시 수장인 이재명 시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사회분위기를 다잡아야 할 공직 지도자가 오히려 평지풍파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각인되면서 도덕성을 잃은 공직자의 표본이 됐다.

‘존덕성도문학(尊德性道問學)’이라는 옛 고사가 있다. ‘中庸(중용)’에 나오는 이 뜻을 풀이하면 유교에서 제시하는 도덕수양의 두 가지 방법을 의미한다. 존덕성은 인간에게 부여된 선한 덕성을 수양을 통해 높이고 보존하는 방법이다.

도문학은 학문을 통해 덕성을 배양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로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과 특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에게 꼭 필요한 옛 성현의 말씀이다.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선생의 문집에도 자주 등장하는 ‘존덕성도문학’ 이 말은 마치 ‘괴력난신(怪力亂神)’과 같은 괴이한 폭력과 패란을 일으킨 성남시가 꼭 한번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경제투데이(<http://www.eto.co.kr>) 홈페이지 오피니언 취재수첩 란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괴력난신’ 성남시의 LH 습격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5월 31일자 오피니언(취재수첩)에 「‘괴력난신’ 성남시의 LH 습격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시의 공무집행 행위에 대하여 “LH 본사 습격사건”으로 표현하고, “공기업을 상대로 조폭수준의 무자비한 공권력 행사”, “이번 사태에 대한 성남시의 사과의 뜻 공식발표”, “그 후 성남시의 책임 회피” 및 “집단지기주의”, 한편, 이재명 시장에 대해 ”도덕성을 잃은 공직자의 표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법 절차를 준수하며 공무집행에 임했으며, LH가 도리어 다수의 직원을 동원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성남시의 사과의 뜻 공식발표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성남시 LH습격사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나. 본 문 : 본지는 지난 5월 31일자 기사수첩 “‘괴력난신’ 성남시의 LH습격사건” 제하의 기사에서 성남시가 LH를 상대로 비이성적으로 공무를 집행했으며, 일련의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LH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사과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LH를 상대로 한 공무집행은 법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이재명 시장이 도덕성을 잃은 공직자로 표현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3년 6월 28일 오전 9시부터 <경제투데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6. 2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경제투데이** : 『[‘성남시 LH 습격사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20

사회적 기업인 딜○○○가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들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925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보청기협회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비즈니스네트워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3. 06. 19.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사회적 기업인 딜○○○가 국내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들었고, 이 회사의 제품이 타사의 비싼 보청기와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매우 저렴하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국내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든 곳은 포○○○였고, 딜○○○가 ‘사회적 기업’ 임을 무단으로 표방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던 것 등을 들어 조정대상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명된 바 없으므로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SBS CNBC를 대상으로 정정청구(2013서울조정926)를 신청했고, 담당중재부는 위 사건(2013서울조정925)과 같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 **SBS CNBC-TV :** SBS CNBC 뉴스 프로그램 『‘소셜벤처’ 딜○○○, 34만 원 보청기 어떻게 가능했나?』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4일자 19:00)
- **내 용 :** ▷ 리포트 : 100만 원대를 호가하는 보청기 시장에 시중가보다 50~70% 저렴한 34만 원짜리 보청기를 공급하며 큰 이슈를 모으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사회적 기업, 딜○○○다. 설립 3년 만에 42억 원 매출을 올린 김○○ 딜○○○ 대표와 김△△ 사회적 기업 컨설턴트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돈이 없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신념 하에 소셜 벤처를 만든 청년의 이야기. 김○○ 딜○○○ 대표는 청인들을 위한 보청기 회사를 설립, 2010년에는 고용노동부 소셜 벤처 경연대회 청년창업 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딜○○○의 보청기 가격은 34만 원이다. 최고 500만 원, 국외에서는 800만 원까지도 가는 것과는 대조적인 최저가로 보청기를 공급하고 있다. 보청기 가격이 비싸지는 이유는 편의적인 부가 기능 때문이다.

그렇지만 김○○ 대표는 “경제력이 취약한 분들에게는 편의적인 기능보다는 본연의 기능(소리를 듣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34만 원 보청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딜○○○는 34만 원 보청기와 함께 기능성 제품들도 같이 공급하고 있다.

딜○○○의 보청기 가격을 34만 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지원 금액에 맞춘 것”이라며 “소외계층을 위해 가격을 34만 원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보청기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이유는 샘플링을 통한 표준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 생산 원가를 절감해 제품 가격을 낮췄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중간 마진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딜○○○는 국내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들기도 했다. 김○○ 대표는 “보청기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아 보험상품을 만들게 됐다”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무상으로 보험을 들어 드린다”고 전했다. 보청기를 분실했을 경우 30%만 부담하면 다시 완제품을 받을 수 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1)을 SBS CNBC <21:35 뉴스 945>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1)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SBS CNBC 홈페이지 경제면에 게재된 ① 인터넷 방송물을 삭제하면서, 아울러 ② 아래의 정정보도문(2)를 홈페이지 경제면에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소셜벤처’ 딜○○○, 34만 원 보청기 어떻게 가능했나?”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또한 아래의 정정보도문(2)를 DB에 저장해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가. 제 목 : ‘소셜벤처 딜○○○, 34만 원 보청기 어떻게 가능했나?’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5월 14일 ‘집중분석 takE BEST’ 프로그램에서 ‘소셜벤처’ 딜○○○, 34만 원 보청기 어떻게 가능했나? 라는 제목으로, “① 딜○○○는 국내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들기도 했다. ② 저렴한 보청기를 공급하며 큰 이슈를 모으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사회적 기업, 딜○○○다. ③ 기존 500만 원 보청기는 딜○○○ 34만 원 보청기와는 듣는 기능엔 차이가 없으나 부가적인 기능으로 비싸다. ④ 보청기 착용 인구가 낮은 이유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시장을 대부분 차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고가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⑤ 타사 제품들 다 사서 분해해보고 관련 전문가들이나 교수나 연구원들 만나서 즐라가면서 계속 물어보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체 개발했다.”라는 내용으로, ‘딜○○○’ 김○○ 대표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보청기협회 등에 확인한 바,

- ① 딜○○○는 국내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보도는,
→ 국내 최초는 ‘포○○○’였으며,
- ② 저렴한 보청기를 공급하며 큰 이슈를 모으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사회적 기업, 딜○○○다라는 보도는,
→ 딜○○○가 ‘사회적 기업’ 무단 사용으로 고용노동부의 벌금형을 받았기에 딜○○○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며,
- ③ 기존 500만 원 보청기는 딜○○○ 34만 원 보청기와는 듣는 기능엔 차이가 없으나 부가적인 기능으로 비싸다라는 보도는,
→ 고가 이어폰이 본연의 기능보다 편의기능으로 비싸다고 함과 같기에, 이는 딜○○○ 저가 보청기 홍보를 위한 타사 제품의 매도였고,
- ④ 보청기 착용 인구가 낮은 이유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시장을 대부분 차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고가로 형성됐기 때문이다라는 보도는,
→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딜○○○ 저가 보청기 홍보를 위한 매도이며,
- ⑤ 타사 제품들 다 사서 분해해보고 관련 전문가들이나 교수나 연구원들 만나서 즐라가면서 계속 물어보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렇게 개발했다 라는 보도는,
→ 딜○○○의 납품업체가 무허가 제조판매로 식약청의 6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음으로 허위 의혹이 있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가. 제 목 : ‘소셜벤처 딜○○○, 34만 원 보청기 어떻게 가능했나?’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5월 14일 ‘집중분석 takE BEST’ 프로그램에서 ‘소셜벤처’ 딜○○○, 34만 원 보청기 어떻게 가능했나? 라는 제목으로, “① 딜○○○는 국내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들기도 했다. ② 저렴한 보청기를 공급하며 큰 이슈를 모으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사회적 기업, 딜○○○다. ③ 기존 500만 원 보청기는 딜○○○ 34만 원 보청기와는 듣는 기능엔 차이가 없으나 부가적인 기능으로 비싸다.” 라는 내용으로, ‘딜○○○’ 김○○ 대표가 출연한 방송물과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보청기협회 등에 확인한 바,

- ① 딜○○○는 국내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보도는,
→ 국내 최초는 ‘포○○○’였으며,
 - ② 저렴한 보청기를 공급하며 큰 이슈를 모으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사회적 기업, 딜○○○다라는 보도는,
→ 딜○○○가 ‘사회적 기업’ 무단 사용으로 고용노동부의 벌금형을 받았기에 딜○○○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며,
 - ③ 기존 500만 원 보청기는 딜○○○ 34만 원 보청기와는 듣는 기능엔 차이가 없으나 부가적인 기능으로 비싸다라는 보도는,
→ 고가 이어폰이 본연의 기능보다 편의기능으로 비싸다고 함과 같기에, 이는 딜○○○ 저가 보청기 홍보를 위한 타사 제품의 매도였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기각결정

기각 결정서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비즈니스네트워크는 <SBS CNBC-TV> 2013. 5. 14. 09:20 [집중분석TAKE 1부]프로그램에서「34만 원 보청기」라는 제목으로 보청기업체 딜○○○의 김○○ 대표이사와의 인터뷰를 방송(이하 ‘이 사건보도 1’라 한다)하였다.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는 <인터넷 SBS CNBC>에 이 사건보도 1의 일부 내용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며「소셜벤처’ 딜○○○, 34만 원 보청기 어떻게 가능했나?」라는 제목으로 기사(<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64485>, 이하 ‘이 사건보도2’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보도1과 2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른데도, 피신청인들이 방송기관으로서 딜○○○의 이력성과 기업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방송하였으므로, ‘공익성’차원에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하였다.

- 다 음 -

첫째, 국내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든 것은 딜○○○가 아닌 ‘포○○○’이다. (이 사건보도 1과 2에 대하여)

둘째, 저렴한 보청기를 공급하며 큰 이슈를 모으고 있는 곳이 사회적 기업 ‘딜○○○’라고 방송하였으나, 딜○○○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다. (이 사건보도 1과 2에 대하여)

셋째, 기존 500만 원 보청기는 딜○○○의 34만 원 보청기와는 듣는 기능엔 차이가 없으나 부가적 기능으로 비싸다는 방송내용은 타사제품에 대한 매도이다. (이 사건보도 1과 2에 대하여)

넷째, 보청기 착용 인구가 낮은 이유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시장을 대부분 차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가로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방송내용은 객관적인 근거 없는 주장이다.(이 사건보도 1에 대하여)

다섯째, 딜○○○가 타사 제품을 다 사서 분해해보고 관련 전문가들이나 교수나 연구원을 불러가면서 계속 물어보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렇게 개발했다는 주장은 딜○○○의 납품업체가 무허가 제조판매로 식약청으로부터 6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허위의 의혹이 있다. (이 사건보도 1에 대하여)

3. 판단

가.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0.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판단

- 1)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25.선고 99다12840 판결 등 참고).
- 2) 이 사건 보도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명된 바 없으므로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보도1과 2가 ‘딜○○○’에 대해 긍정적 또는 홍보성으로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는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보도에서 딜○○○의 ‘34만 원 제품’ 및 ‘직영점’과 각 비교 대상을 지칭하는데 사용된 ‘500만 원 짜리(보청기)’, ‘외국계 회사들의 대리점’ 등의 표현이 곧 ‘보청기 판매 종사자의 조직’인 신청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역시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청구는 청구의 요건을 결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해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06. 28.

사 례 21

신청인 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유가보조금을 임원들의 개인 출·퇴근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전북조정20, 2013전북조정21(병합) 각 반론청구

신 청 인 : ○○○여객자동차(주)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일간전주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13. 06. 25.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를 통해 진안, 무주, 장수지역 등의 대중교통운송수단인 신청인 회사의 임원이 수년간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개인용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유가보조금과 임직원 유류보조비는 엄격히 분리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1

■ **전주매일 :** 『자치단체 유가보조금 ‘버스회사 주머니 속으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7일자 9면)

■ **내 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벽지노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임원들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14일 진안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여객(진안군 ○○읍)은 진안, 무주, 장수 등 벽지노선을 운행하며, 급격한 인구감소와 자가용 차량 증가로 손님이 줄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 지원금’ 등을 지원 받고 있다.

○○○여객은 지난해 진안군 17억4,095만2,510원, 무주군 8억2,224만8,000원 장수군 6억 160만3,950원 등 3개 군에서 총 31억6,480만4,460원을 보조받아 버스연료비, 임원과 직원 들 급료,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해왔다.

그러나 ○○○여객 임원들은 수년간 자치단체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으로 주유를 하고 출퇴근 및 휴일 나들이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도 버스에는 에어컨 가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 손님들은 짜증을 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에 임원들이 사용한 유류는 1,356L(256만1,484원)로 1년으로 환산하면 1만6,272L(3,000여만 원)을 몇몇 임원들의 개인용으로 사용됐으나 관련부서에서는 감사를 실시했어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객 관계자는 “진안군에서 버스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L당 38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임원들이 사용하는 유류는 보조금이 아니고 회사의 공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2년도에 ○○○여객 버스가 126만9,380L을 사용했다며 진안군에 4억8,247만 8,930원을 보조받았으나 같은 해 정유회사에서 구입된 유류는 총 119만2,000L이고, 전년도에 이월된 8만523L의 유류를 합쳐도 127만2,523L로 진안군에 신청한 유류와 거의 비슷한 양이다.

이에 따라 ○○○여객 관계자의 주장대로 임원들의 주유는 회사공금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설득력이 떨어지며, 설령 회사공금으로 지원했다 해도 3개 군 군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임원들이 그동안 사용한 유류는 환수조치와 함께 지원금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조정대상보도 2

- 인터넷 전주매일 : 『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 버스회사 임원들 출퇴근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6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전주매일 경제·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 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자치단체 유가보조금 ‘버스회사 주머니 속으로’”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1)〉

가. 제 목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보도에 대한 반론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6월 17일자 경제·사회면(9면)에 “자치단체 유가보조금 ‘버스회사 주머니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여객 임원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객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카주유시스템(RFID system)을 사용하며 유가보조신청과 임직원 유류지원은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

가. 제 목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보도에 대한 반론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6월 16일자 사회면에 “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 버스회사 임원들 출퇴근 용”이라는 제목으로 ○○○여객 임원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객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카주유시스템(RFID system)을 사용하며 유가보조신청과 임직원 유류지원은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의 반론보도문을 전주매일 9면 우측 상단에 게재하되, 제목은 15호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전주매일(<http://www.jjmaeil.com>)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의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만약 피신청인이 제1항과 2항을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은 각 위반행위 개시일(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로부터 그 위반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각 위반행위 1일당 100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제1항과 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2013년 6월 17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또는 관련 임직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유

위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07. 01.

〈별 지〉

가. 제 목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7일 9면 “자치단체 유가보조금 ‘버스회사 주머니 속으로’” 제하의 기사에서 “○○○여객 임원들은 수년간 자치단체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으로 주유를 하고 출퇴근 및 휴일 나들이까지 하고 있으면서도...”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객은 ‘유가보조 지원금’을 임직원의 출퇴근이나 휴일 나들이 비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유가보조 지원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가주유시스템(RFID system)을 통해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실시된 전라북도의 ○○○여객에 대한 ‘유가보조 지원금’ 사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아무런 하자도 지적된 바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1

- 전주매일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보도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9면)
-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의 별지 참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2

- 인터넷 전주매일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 례 22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부산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신청인의 어린이집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953·954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3. 06. 25.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소재 모 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부산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가 4명이나 된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기사의 제목을 ‘부산 어린이집’이라고 표기하여, 현재 부산 학장동에서 동일한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본인이 영업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기사에 언급된 어린이집이 부산 학장동의 ‘부산 어린이집’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한편, 동일한 취지의 기사가 인터넷 서울신문 외 33개 매체에 보도되었으며(2013서울조정955~1122, 2013경기조정97~102, 2013경기조정115, 2013부산조정51),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알람기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거나 피신청인이 알람기사를 게재함에 따라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연합뉴스 : (1)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4명…원장도 영장』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 내 용 : 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가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장과 보육교사 2명이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유아들이 울면서 징징댄다는 이유로 교실과 원장실에서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것이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 모(40·여)씨와 보육교사 김 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육교사 서 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민 원장은 지난해 11월 초 정오께 원장실에서 윤 모(1·여)양의 이마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12월 초에는 낮 12시 40분께 원장실에서 주 모(1)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 12분께 교실에서 이 모(1·여)양을 밀치고서 얼굴에다가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18일 오후 3시 14분께는 교실에서 안 모(1·여)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다.

서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 8분께 교실에서 이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로 입건됐다.

이양은 4분 간격으로 여교사 2명에게 잇따라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다. 경찰은 보육교사들이 유아를 학대하는 장면이 찍힌 CCTV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여교사들은 경찰에서 “아이들이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 원장이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김씨 등 전·현직 보육교사 3명이 구체적이고 한결 같이 진술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피해 어린이가 더 있는지 확인중이다.

부산 수영구는 지난달 26일 민 원장과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취소하고 29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가진 6급 직원을 해당 어린이집에 원장 직무대행으로 파견,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안양의 부모가 지난달 19일 경찰에 진정한 데 이어 안양의 고모가 23일 인터넷과 SNS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민 원장은 당초 안양 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나오자 취하해 빈축을 샀다.

■ **연합뉴스** : (2) 『아동학대 부산 어린이집 원장·교사 영장 청구』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일자)

■ **내 용**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박○○ 부장검사)는 3일 유아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산 모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 모(40·여)씨와 교사 김 모(32·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주 초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해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아동 전담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11월 초 정오께 원장실에서 윤 모(1·여)양의 이마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12월 초에는 낮 12시 40분께 원장실에서 주 모(1)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 12분께 교실에서 이 모(1·여)양을 밀치고서 얼굴에다가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18일 오후 3시 14분께는 교실에서 안 모(1·여)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부산어린이집 어린이폭행사건 관련, 밝혀드립니다.

나. 본 문 : 본 뉴스통신이 지난 2013년 4월 28일자, 5월 2일자 및 5월 3일자로 보도한 부산어린이집 폭행사건은 학장동의 <부산어린이집>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이를 밝혀드립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관련 알림

나. 본 문 : 본보 지난 4월 28일, 5월 2일 및 3일자에서 보도한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부산 학장동의 <부산어린이집>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3년 7월 16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의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면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08:00부터 48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한다.
3.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3. 07. 1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연합뉴스 : 『<알림>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3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23

‘선박왕’으로 불리는 신청인이 홍콩에 비밀계좌를 두고 재산을 은닉하다가 발각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995·996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권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3. 07. 02.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속칭 보물섬이라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유명인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계 큰손들은 홍콩을 선호하며, CJ홍콩 및 선박왕 등의 비밀계좌가 발각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홍콩 비밀계좌에 재산을 은닉하다가 발견된 듯이 보도되었으나, 자신은 홍콩에서 실제 해운업을 경영하고 있고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갖고 있을 뿐 비밀계좌는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매일경제 :** 『보물섬 명단공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4일자 34면)
- **내 용 :** 완벽한 줄 알았던 판도라 상자를 갑자기 열어젖히는 일 또한 신(神)이 부리는 조화다. 버진아일랜드에 돈을 숨긴 장본인들은 들킬 줄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는가. 뉴스 타파에 의해 이○○, 최○○, 김○○와 윤○○, 전○○ 아들 전△△ 등 이름이 갑자기 호명됐다. 속칭 보물섬이라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나 계좌를 개설한 게 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단서가 붙는다. 10만달러 이상을 유치하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이번에 아랍은행에까지 계좌를 튼 전○○은 된통 걸린 느낌이며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왜 과거 정부들은 못 거뒀느냐”고 질타한 것과 오비이라이 됐다.

뉴스타파가 잇을 만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터뜨리는 명단을 보면서 무슨 느낌을 가졌는가. 필자는 빅샷(bigshot)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 안도했다. 특히 과거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전직 대통령, 총수, 정치인들이 스위스 비밀계좌를 가지고 있다더라는 루머가 워낙 돌았지 않았던가. 만약 굴지의 그룹 총수 이름이 나왔으면 살벌한 경제민주화 판에 어떻게 될 뻔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보물섬의 정체에 대해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는 30년 전쟁(1618~1648년)을 겪으면서 세상에 난리통이 나면 부호들은 중립국에 재산과 가족을 몰래 보내고 여차하면 본인도 내빼려는 본능을 발견했다. 그 무렵 영세 중립국을 선포하고 1·2차 대전을 겪으면서 크게 재미를 봤다. 1934년 은행법을 고쳐 세계 최초로 고객 비밀을 발설하면 무겁게 처벌한다는 법령을 선포했다. 스위스로 돈을 넘기고 2차 대전에 살아남지 못한 유대인,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연합국의 영국 군부 재산 등 무수한 양다리를 걸쳐 큰돈을 뜯었다. 원가 안 드는 장사를 혼자 먹게 놔두겠는가.

룩셈부르크 벨기에 안도라 리히텐슈타인을 거쳐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령 14개 휴양도시들이 ‘보물섬 영업’을 자청하고 나섰다. 미국도 델라웨어 등이 가세했다.

이번에 미국 애플이 국외에서 번 돈은 모두 세율이 2%도 안 되는 아일랜드에 만든 법인에 유치토록 해 세금을 440억 달러(약 50조 원)나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 미국 의회가 발각 뒤집혔다. 니컬러스 색슨이 저술한 보물섬 을 보면 북한 김정일 일가가 룩셈부르크에 40억 달러를 숨겨 놓았다고 폭로하고 있다. 색슨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보물섬은 야자수와 요트가 한가로이 떠다니는 케이맨, 바하마, 버뮤다 같은 곳이 아니라 맨해튼과 런던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큰손들은 홍콩을 가장 선호한다는 게 한국 당국의 관측이다. CJ 홍콩 계좌와 선박왕 등 계좌가 발각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제탐사보도(ICIJ)가 판도라 상자라며 열어젖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명단은 빙산의 일각 축에도 못 드는 것이다.

갈수록 정부 부채는 커지고 세금은 안 걷히고 양극화는 심화되는데 돈 많은 개인과 기업들은 보물섬으로 튀어버린다? 그렇다. 현실이 그렇다. OECD는 2002년 ① 영(零)세율이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세율 ② 투명화가 없는 곳 ③ 조세 정보 교환을 안 하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라고 명시하고 전 세계 35개 보물섬에 개선을 명령했다. 2009년 금융위기가 나자 미국은 스위스 비밀계좌를 깨버리기로 결심하고 미국인 거액 고객 명단을 내놓으라고 UBS에 9000억 원가량 벌금을 매기고 목을 비틀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주 80년 전 제정한 은행비밀주의 법을 개정하겠다고 항복(?)했다.

그러나 비밀자금을 끌어들이는 보물섬들은 세계에서 최고로 똑똑한 로펌, 회계사 조직을 동원하고 고객 계좌를 소시소나지(saucissonnage) 기법으로 잘게 부숴 누가 계좌를 까봐도 알아보지 못하는 기술로 진화해 나간다. 이번에 명단이 까진 사례는 순진한 아마추어들이고 그런 자들에게 돈을 맡겨 탄로가 났다는 것이다. 전 세계 보물섬 60여 곳 가운데 한 곳을 손대니 이 정도 명단이 쏟아졌다는 게 뭘 의미할까. 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된 곳은 2곳뿐이다. 국세청은 아직 스위스 비밀계좌 한 건도 밝혀내지 못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경제 사설면에 보도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크기와 같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 목 : ‘CJ홍콩 계좌와 선박왕 등 계좌가 발각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 나. 본 문 : 본 신문사는 지난 6월 14일 신문 34면 김△△ 칼럼에서 [보물섬 명단공개]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신청인(선박왕)이 마치 CJ의 홍콩 계좌와 같이 재산을 은닉하다가 발각된 것처럼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선박왕은 홍콩에 비밀계좌가 없고 홍콩에서 실제 해운업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실과 다름으로 확인되어 해당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보물섬 명단 공개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지는 2013년 6월 14일자 「보물섬 명단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계 큰손들은 홍콩을 선호하며, CJ홍콩 및 선박왕 등의 계좌가 발각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선박왕은 홍콩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며 거래를 위한 정상적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뿐 조세회피를 위하여 비밀리에 계좌를 보유한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3년 7월 26일까지 <매일경제> 사회면에 제1항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유력 재벌 · 총수 명단 없어 다행이나)과 동일한 활자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고, 본문 활자 크기도 조정대상기사 본문과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2013년 7월 26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매일경제 홈페이지(www.mk.co.kr) 사회면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24시간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제1항의 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원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5. 피신청인이 제1, 2, 3, 4항의 내용(제목, 본문, 보도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7. 23.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매일경제 : 『보물섬 명단 공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6일자 26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MK뉴스 : 『[보물섬 명단 공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24

출연한 부부 중 가짜부부를 찾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신청인 1의 남편(신청인 2의 아버지)과 내연녀를 진짜 부부라고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032·1033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조○○, 2. 이○○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7. 10.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가짜부부를 찾아라’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노부부를 ‘결혼한 지 45년이나 되었으며, 항상 젊게 살고 있는 진짜부부’ 라고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노부부 중 남편으로 출연한 남성출연자의 실제 부인과 아들로서, 노부부로 출연한 두 사람은 내연관계에 있는 사이라고 밝히면서, 방송을 통해 그들이 진짜 부부로 알려짐에 따라 신청인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정정보도 및 총 1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함과 동시에 iMBC에 게시된 ‘경제매거진 M’과 ‘TV 특종! 놀라운 세상’ 프로그램 중 내연관계의 두 사람이 출연한 다시보기 동영상 일부를 삭제하며, 신청인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MBC-TV :** 블라인드 테스트 180° 프로그램 『가짜부부를 찾아라』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6일자 09:15)
- **내 용 :** (전략)
 - ▷ MC : 이어서 4번째 부부 나와주세요.
 - ▷ 성○○ : 어우 너무 멋지시다.

▷ 박○○ : 어머어머.

▷ 이○○ : 우와.

▷ 4번 남 : 인생을 늘 푸르게 사는..

▷ 4번 여 : 결혼 45년차 언제나 청춘 부부입니다.

▷ 성○○ : 정말 부부라면 저는 정말 이렇게 이분들처럼 살고 싶어요. 결혼 하셨지만 40년 이 됐지만 손을 꼭 잡고 계시는데.

(중략)

▷ MC : 5팀이 나왔는데요. 이 다섯 팀 중에서 4팀은 실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실제 부부고요. 이중에 한 팀은 전혀 모르는 남남 커플입니다.

▷ △ : 오늘 처음 만난 것 이지요.

▷ MC : 네.

(중략)

▷ 박○○ : 4번부부도 혹시 스킨십 있으세요?

▷ 4번 여 : 네 스킨십이..

▷ 주○○ : 추신다 아 댄스스포츠다. 아 제가 뒤에서 봤는데 이분들은 100% 진짜 부부입니다.

▷ 성○○ : 진짜예요 진짜.

▷ 주○○ : 일단 춤을 굉장히 못추시는데 여자분이 등을 뒤로 돌렸을때 남자분을 보고 이쪽이잖아 이쪽.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이쪽이잖아 남편이니까 화를 내실 수 있는 거 아니예요.

▷ 이○○ : 스텝이 좀 꼬이시니까 원투 차차차.

▷ 주○○ : 원투. 예 화를 내시더라고요.

(중략)

▷ MC : 정말 저희에게 궁금증을 자아냈던 4번.

▷ 장○○ : 어우 진짜 아 정말 진짜 너무 멋있어서 가지고.

▷ 박○○ : 아니 앞에 앞에 좀 봐주세요 몸 좀 예 예.

▷ 전○○ : 아니 저기요 포즈를 잡아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 ▷ 장○○ : 너무 멋있으셔서가지고 가짜 같았어요.
 - ▷ 전○○ : 결혼 몇 년째 신거죠?
 - ▷ 4번 여 : 45년이에요.
 - ▷ 박○○ : 두 분은 뭐 하시는 분 들이세요?
 - ▷ 4번 여 : 그냥 평범한 부부...
 - ▷ 장○○ : 진짜요?
 - ▷ 4번 여 : 근데 제가 사실은 젊었을 때 음 제 꿈이 모델이었어요.
 - ▷ 전○○ : 역시.
 - ▷ 4번 여 : 제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서 그걸 접게 되었어요.
- (후략)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MBC-TV 방송 “블라인드 테스트쇼 180도” 방송 시간대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활자인 “블라인드 테스트쇼 180도”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되, 정정보도문의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방송의 부제목인 “가짜부부를 찾아라” 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 목 : ‘가짜부부를 찾아라’ 코너에 출연한 ‘4번 언제나 청춘 부부’ 또한 가짜 부부로 밝혀져
-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2013년 6월 16일 제22회 ‘가짜 부부를 찾아라’라는 코너에서 ‘4번 언제나 청춘 부부’를 진짜 부부라고 방송하였으나 이들은 진짜 부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금 10,000,000원, 신청인 2에게 금 3,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확정 전 이행도 가능)에 아래의 보도문을 [블라인드 테스트쇼 180도] 프로그램 말미에 멘트로 보도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보도문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가. 제 목 : “가짜부부를 찾아라” 관련, 정정보도

나.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16일 “가짜 부부를 찾아라” 제하에서 한 노부부를 ‘언제나 청춘부부’라고 소개하며 진짜 부부라고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분들은 법률적 혼인관계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확정 전 이행도 가능)에 인터넷 홈페이지(iMBC)에서 아래 방송들의 다시보기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한다.

가. 경제매거진M 2013년 6월 8일자 [문화 즐기고 돈도 벌고! 즐거운 백발청춘]

나. TV특종 놀라운세상 2012년 3월 13일자 [황혼의 댄서, 백발의 노부부]

4.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확정 전 이행도 가능)에 신청인들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6. 신청인들은 본 조정대상보도 및 위 3항에서 언급한 방송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08. 1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1

- **MBC-TV** : 블라인드 테스트 180° 프로그램 『“가짜부부를 찾아라”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8일자 09:15)
-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참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2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사 례 25

로스쿨 학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부산시 7급 공무원 채용 전형 지원자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고, 20여개의 옹호댓글이 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037 반론청구
신 청 인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3. 07. 10.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부산시가 변호사, 회계사 등을 7급으로 선발하는 인용시험 계획 공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로스쿨 학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지원자는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이를 1000여 명이 조회했고 옹호 댓글이 20여 개 달렸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사이트에 ‘지원자는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적 없고, 지방직 7급 지원에 관련된 하나의 게시글에 ‘7급, 경위, 일반직’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명단을 공개해서 망신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하나 달렸을 뿐이므로 조정대상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이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대상기사와 신청인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 **중앙일보 :** 『부산, 7급 공무원에 변호사 채용 공고, 로스쿨생들 “법조계 욕... 신상 털자”』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13면)
- **내 용 :** “7급 공무원은 변호사 자격증씩이나 필요한 자리가 아니다.”
“씩은 떡밥’을 무는 지원자는 신상을 털어야 한다.”

부산시에서 변호사를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두고 로스쿨생들의 인터넷 카페 ‘○○○○(www.○○○○○○○○.net)’에 올라온 글들이다. ○○○○는 로스쿨생(수험생) 5,600여 명이 가입한 최대 규모 카페다. 등록금 영수증을 내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을 만큼 폐쇄적이다.

이 카페 게시판에는 최근 7급 채용과 관련한 비난 글 수십 개가 올라왔다. 16일 현재 글마다 조회 수가 200~1000여 건이 기록됐고,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릴 정도로 찬반 논쟁이 활발하다.

계기는 부산시청이 12일 낸 채용공고다. 공고엔 ‘행정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변호사·공인 회계사 자격 소지자 1명씩을 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돼 있다. ○○○○에선 즉각 “지원자는 법조계 전체를 욕 먹이는 사람”, “지원하기 전에 로스쿨 선후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숙고하라”, “변호사 자격증까지 따놓고 시청에서 6급 공무원에게 커피나 타며 인생 보내고 싶다면 안 말린다”는 등의 비난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문제는 채용을 보이콧(거부)하거나 지원자 신상을 공개하자는 등 과격한 주장들도 여과 없이 올라와 있고 이런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는 이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원자는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란 내용의 글은 1000여 명이 조회했고 옹호 댓글 20여 개가 달렸다.

한 대학의 로스쿨 카페에선 7급·경위(경찰)·일반직 지원자 명단을 각 로스쿨에 공개하자는 논의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은 개인의 자유”,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대우받길 원하는 로스쿨생의 이기심”이란 식의 글도 올라왔지만 소수였다. 부산시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선 이미 6급 공무원으로 선발한 바 있고, 선발 과정에서 자격 미달로 떨어진 로스쿨생도 많다”며 “7급 대우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공고를 냈는데 왜 지원자의 자유까지 침해하려 드느냐”고 말했다.

과거 ○○○○에선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제약의 일반직 직원 채용공고, 국가인권위원회·인천시·조달청의 6급 채용공고가 났을 때도 보이콧 움직임이 있었다. 최근엔 로스쿨생에게 불편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위○○(55)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로스쿨 강연 거부운동도 일었다. 한 로스쿨생은 “취업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예비 법조인답게 균형 있는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로스쿨생들이 민감해진 건 취업난 때문이다. 유기홍(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로스쿨 1기 졸업생의 취업률은 81.7%다. 로스쿨생들은 전국 단위 학생협의회를 조직해 기자회견을 여는 등 불리한 여론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49) 로스쿨협의회 사무국장은 “변호사 자격증이 곧 능력인 것은 아니다”며 “로스쿨 설립 취지대로 각자의 능력·적성에 따라 법조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피 신청인은 중앙일보 사회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인 “썩은 떡밥’ 7급 공무원 지원 변호사 신상 털자”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가. 제 목 : ○○○○ 게시판 “지원자는 실명 공개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글에 옹호 댓글 20여개 달린 것 사실 아니야(또는 “7급 공무원 지원자 신상 털자” 보도 관련 반론 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4월 17일자 사회면에 “썩은 떡밥’ 7급 공무원 지원 변호사 신상 털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내용은 부산시가 같은 달 15일 변호사, 회계사 등을 7급으로 선발하는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www.○○○○○○○.net)에서 지원자를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으며 ‘지원자는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1000여명이 조회했고 옹호 댓글 20여개가 달렸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의 해당 게시판을 확인한 결과, ‘지원자는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지방직 7급 쓰시려는 분들이 만약 있다면..’이라는 제목의 글(2013. 4. 15. 00:34에 게재된 글 번호 번의 글)에서 ‘D대법관’이라는 필명으로 ‘다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주장되었던 것처럼 7급, 경위, 일반직 ->이 3종 세트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명단을 공개해서 망신을 줘야 합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댓글이 작성된 바 있고 이 댓글에는 총 5개의 공감과 10개의 비공감이 달린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기사는 사실과 어긋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기각결정

기각 결정서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3. 4. 17.자 13면 「부산, 7급 공무원에 변호사 채용 공고. 로스쿨생들 “법조계 욕...〈지원자〉신상 털자”」제하의 기사를 통해 인터넷카페 ○○○○(www.○○○○○○○○.net)에 해당 채용을 보이콧(거부)하거나 지원자 신상을 공개하자는 등 과격한 주장들도 여과 없이 올라와 있고 이런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는 이도 적지 않으며, “지원자는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1,000여 명이 조회했고 옹호 댓글 20여 개가 달렸다고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했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에 언급된 내용의 글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지방직 7급 쓰시려는 분들이 만약 있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 지원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지의 댓글이 달렸고 이 댓글에는 총 5개의 공감과 10개의 비공감 의견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반론보도를 구한다.

2.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보도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그 동일성을 추지할 수 있거나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개인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보도 중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지원자는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란 내용의 글은 1,000여 명이 조회했고 옹호 댓글 20여개가 달렸다)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거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 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 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07. 23.

사 례 26

국회의장의 차량 주유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183, 2013서울조정1207(병합) 각 반론청구

신 청 인 : 국회사무처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일요시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3. 07. 31. (2013서울조정1183)

2013. 08. 06. (2013서울조정1207)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이 취임 후 잦은 해외출장으로 국내에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빈도수도 무척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유비로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액을 남겨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동급 차량을 사용하는 국회 사무총장의 같은 기간의 이용거리와 비교하면 매달 90만 원 이상의 주유비를 착복하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현재 국회 내 모든 전용차량에 대한 주유비를 정액지급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정액지급방식은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 인정되는 예산집행의 한 방식으로, 정액지급방식 제도 하에서는 주유비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균등지급하되, 차량이용자의 일정 등에 따라 월별로 발생하는 과부족액을 정산하지 않게 되므로, 특정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주유비를 근거로 ‘사적 유용’, ‘착복’ 내지 ‘횡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인터넷 일요시사 :** 『〈단독〉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추적』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9일자)

■ **내 용** : 강창희 국회의장이 매달 150만 원의 주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도 남은 주유비를 단 한 번도 반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후 잦은 해외출장으로 관용차량 이용 빈도도 적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의장은 국민 혈세로 지급한 주유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일까? 강 의장의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을 <일요시사>가 파헤쳐 봤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지급받은 주유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후 지금까지 매달 150만 원의 주유비를 꼬박꼬박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남은 주유비를 반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유비=쌈짓돈?

지난 1월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첫 인선으로 평가받던 이○○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낙마했다.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정된 업무에만 써야하는 특정업무경비를 금융투자상품과 연결된 개인통장에 넣어 놓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진 사퇴했다.

강 의장의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은 이 전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적유용 의혹과 너무 나도 닮아있다. 횡령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지만 강 의장 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 전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당해 현재까지도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감사원은 이 전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논란 이후 각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게다가 강 의장이 사용하는 관용차량은 ‘국회사무처 공용차량 내규’에 따라 운행일지도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장은 지금까지 주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급받은 주유비 중 실제로 주유비로 사용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남은 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파악할 자료가 전혀 없다.

반면 일반 업무용 관용차량은 차량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1년에 한차례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선관위에 내면서 주유비로 사용한 경비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해외 장기출장 후에도 주유비 꼬박꼬박

남은 주유비 반납 전무, 어디에 썼기에?

또 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후 잦은 해외출장으로 국내에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빈도수도 무척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유비로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액을 남겨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의장은 지난 2012년 7월 취임했다. 이제 겨우 취임 후 1년이 지났지만 강 의장은 벌써 5차례나 해외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달에도 13일 동안 케냐·탄자니아·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하는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편 국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정진석 사무총장의 관용차량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7,235km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장과 정 사무총장의 관용차량은 모두 ‘에쿠스 3.8’이다. 이 차는 공인연비가 L당 8.9km다. 하지만 냉난방기 사용여부 및 과속 등의 경우를 감안해 실제연비를 L당 5km로 산정하고 계산을 해봐도 한 달 주유비는 60만 원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강 의장도 정 사무총장과 비슷하게 관용차량을 사용했다면 매달 90만 원 이상의 주유비를 착복한 것이 된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2년 간 매달 90만 원 이상의 주유비를 사적으로 유용한다면 약 2,160만 원의 혈세를 횡령하게 되는 셈이다.

〈일요시사〉는 강 의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강 의장 측은 끝내 모르쇠로 일관했다. 다만 국회 사무처 측은 이와 관련 “주말 또는 공휴일에 공무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주로 개인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용차량의 운행거리만으로 주유비의 과다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행정부 장관관급의 경우도 주유비가 정액 지급되고 있으며,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를 마치 국회의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본지가 확인한 결과 강 의장뿐만 아니라 이병석 국회 부의장과 박병석 국회 부의장 역시 매달 현금으로 주유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액은 강 의장보다 다소 적은 130만 원을 매달 지급받고 있었다. 이 부의장과 박 부의장 역시 지금까지 남은 주유비를 반납한 사례가 없었다. 이 부의장 측은 강 의장과 마찬가지로 답변을 내놓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반면 박 부의장 측은 “남은 주유비를 반납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며 “하지만 평소 지역구를 오가며 장거리 운행을 하는데다 차량관리비가 따로 나오지 않아 지급되는 주유비를 차량관리비로도 사용해 남은 돈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취재기자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주유비가 남은 적이 없었냐?”고 재차 질문하자 박 부의장 측 관계자는 “그것까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치권 관계자들은 강 의장의 주유비 사적유용 논란에 대해 침예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현행 제도 안에서 강 의장이 잘못된 것은 없지 않느냐. 잘못된 것은 제도 그 자체”라며 “운행일지도 작성할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주유비는 횡령을 장려하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현행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주유비를 사용하고 남은 돈은 자진 반납했어야 한다”며 “주유비로 지급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아도 횡령에 해당된다. 지금이라도 그동안 남았던 주유비는 반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후보자의 사례처럼 강 의장이 지금까지 지급받은 주유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그 결과에 따라 검찰고발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횡령 적용할 수도

끝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모든 비용은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쓰여야 한다”며 “다른 곳도 모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변명은 비겁하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장단의 관용차량 주유비가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대상보도 2

- **일요시사** : 『국민혈세로 지급한 기름값이 의장님 쌈짓돈?』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8일자 10면)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인터넷 일요시사 홈페이지 기사목록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1)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국민혈세로 지급한 기름값이 의장님 쌈짓돈?”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DB에 저장해 검색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아래의 반론보도문 (1)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2013서울조정1183)

2. 피신청인은 일요시사 지면에 지난 ‘국민혈세로 지급한 기름 값이 의장님 쌈짓돈?’이라는 제목의 기사(일요시사 제916호)와 같은 면(제10면)에 아래의 아래의 반론보도문 (2)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추적”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2013서울조정1207)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1)〉

가. 제 목 :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추적’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7월 29일자 정치면에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추적”라는 제목으로 ① 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후 잦은 해외출장으로 국내에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빈도수도 무척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유비로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액을 남겨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② 강 의장도 정 사무총장과 비슷하게 관용차량을 사용했다면 매달 90만 원 이상의 주유비를 착복한 것이 된다, ③ 2년간 매달 90만 원 이상의 주유비를 사적으로 유용한다면 약 2,160만 원의 혈세를 횡령하게 되는 셈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와 관련하여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회 내 모든 전용차량에 대한 주유비를 정액지급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정액지급방식은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 인정되는 예산집행의 한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액지급방식 제도 하에서는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매월 균등지급하되, 차량이용자의 일정 등에 따라 월별로 발생하는 과부족액을 정산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주유비를 근거로 ‘사적 유용’, ‘착복’ 내지 ‘횡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장에게 지급되는 월 주유비(150만 원)와 양 부의장 및 국회 사무총장에게 지급되는 월 주유비(130만 원)는 기획재정부의 편성 및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세출예산서상의 금액으로, 타 부처 장관급의 경우에도 국회와 유사한 수준(월 150만 원 내외)의 차량주유비가 집행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편성·지급되는 주유비가 결코 과도한 수준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

가. 제 목 : ‘국민혈세로 지급한 기름값이 의장님 싹짓돈?’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제916호 제10면에 “국민혈세로 지급한 기름 값이 의장님 싹짓돈?” 라는 제목으로 「① 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후 잦은 해외출장으로 국내에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빈도수도 무척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유비로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액을 남겨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② 강 의장도 정 사무총장과 비슷하게 관용차량을 사용했다면 매달 90만 원 이상의 주유비를 착복한 것이 된다, ③ 2년간 매달 90만 원 이상의 주유비를 사적으로 유용한다면 약 2,160만 원의 혈세를 횡령하게 되는 셈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와 관련하여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회 내 모든 전용차량에 대한 주유비를 정액 지급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정액지급방식은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 인정되는 예산집행의 한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액지급방식 제도 하에서는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매월 균등지급하되, 차량이용자의 일정 등에 따라 월별로 발생하는 과부족액을 정산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주유비를 근거로 ‘사적 유용’, ‘착복’ 내지 ‘횡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장에게 지급되는 월 주유비(150만 원)와 양 부의장 및 국회 사무총장에게 지급되는 월 주유비(130만 원)는 기획재정부의 편성 및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세출예산서상의 금액으로, 타 부처 장관급의 경우에도 국회와 유사한 수준(월 150만 원 내외)의 차량주유비가 집행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편성·지급되는 주유비가 결코 과도한 수준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일요시사>는 지난 7월 29일자 정치면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추적」 기사에서 ‘강창희 의장은 취임 후 잦은 해외출장으로 국내에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빈도수도 무척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유비로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액을 남겨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동급 차량을 사용하는 국회 사무총장의 같은 기간의 이용거리와 비교하면 매달 90만 원 이상의 주유비를 착복한 것이 되고, 이 경우 2년간 2,160만 원의 혈세를 횡령하게 되는 셈’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회 내 모든 전용차량에 대한 주유비를 정액지급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정액지급방식은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 인정되는 예산집행의 한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무처는 “정액지급방식 제도 하에서는 주유비를 편성된 예산의범위 내에서 매월 균등 지급하되, 차량이용자의 일정 등에 따라 월별로 발생하는 과부족액을 정산하지 않게 되므로, 특정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주유비를 근거로 ‘사적 유용’, ‘착복’ 내지 ‘횡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 및 예산집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일요시사> 2013년 8월 26일자 정치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의 글자크기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 중 ‘해외 장기출장 후에도 주유비 꼬박꼬박’의 글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의 글자크기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글자 크기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인터넷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013년 8월 19일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 기재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40762)의 본문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하고,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3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들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8. 1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인터넷 일요시사 :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9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일요시사 :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일자 10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27

신청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에게 고가의 명절선물 또는 영전 축하금을 보냈으며 당사자가 수령사실을 시인하였고 매년 명절 선물비용으로 수억 원대를 지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192·1193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주)○○○, 2. 홍○○

피신청인 :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8. 02.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2가 대표로 있는 신청인 1 회사가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에게 고가의 명절선물이나 영전 축하금을 보냈으며 수령자들이 전화 통화로 ‘비서 통해 선물 수령’ 또는 ‘선물 또는 영전 축하금 수령’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특정 고위 공무원 영전 시 꽃바구니를 보낸 적은 있지만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에게 고가의 명절선물이나 영전 축하금을 보낸 적이 없으므로 정정보도와 함께 총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양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주제로 기사를 게재한 일요신문과 인터넷 일요신문을 대상으로 각 정정 및 손배청구(2013서울조정1387~1388, 2013서울조정1389~1390, 병합)를 제기했고, 일요신문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인터넷 일요신문에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또한 인터넷 일요신문의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함과 더불어 포털에 전송한 기사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하도록 했다.

조정대상보도

- 시사저널 : 『[특집1] ○○○○○ Outlet 이명박·원○○도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3일자 34~40면)

■ **내 용**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아울렛 흥○○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명절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이 회사 선물 리스트에는 이 전 대통령 외에도 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 전 환경부장관, 박○○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 등 MB 정권 초기의 장·차관이 대거 포함돼 있다. 선물 용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렛측은 “(흥 회장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선물을 받은 인사는 경영대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가격도 30만 원 미만으로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흥○○ 회장도 7월 10일 기자와 만나 곤혹스러움을 토로했다. 그는 “지인에게 보낸 선물 내역이 외부로 유출돼 당혹스럽다. 선물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별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별도로 연락을 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이 확인한 결과 흥 회장은 원○○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장관, 박○○ 전 국무차장이 취임할 때 별도로 ‘영전 축하금’까지 건넸다. 지방법원장을 지낸 한 변호사의 경우 170만 원 상당의 쇼핑 비용을 대신 지불하기도 했다. 때문에 ‘선물 리스트’를 둘러싼 의혹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문건은 2007년, 2008년, 2009년에 걸쳐 작성됐다. 흥 회장이 매년 설과 추석 때 선물을 보낸 인사와 선물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처우에 불만을 품은 한 직원이 나가면서 이 문건을 빼갔다. 외부에 문건을 유출시킨 직원과는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가 명절 선물 용도 놓고 논란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사의 면면은 화려하다. 국회의원부터 장·차관, 지방법원장, 지검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구청장, 은행장, 기업인, 언론인 등 정·관·재·언론계 고위급 인사가 즐비하다. 흥 회장은 이들을 등급을 나눠 관리했다. 등급은 최고 수준인 S급부터 A, B, C, D급까지 5종류였다. S급에게는 주로 25만~30만 원 상당의 명품 굴비 세트를 보냈다. 국회의원이나 기관장이 대다수다. ○○○아울렛에 음식점이 새로 오픈할 때도 이들을 초대해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음식을 대접했다. A급에겐 22만 원 상당의 갈비세트, B급에겐 15만 원 상당의 고급 와인을 보냈고, C~D급에겐 8만~10만 원 상당의 중급 와인을 선물했다.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다. 한 번에 선물을 보낸 인원은 800명 정도. 선물 가격이 10만~3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매년 수억 원을 명절 선물로 지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취를 거절한 인사는 별도로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 리스트에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구청 공무원이나 경찰서장, 국정원 직원도 있다. 홍 회장은 2007년부터 소송을 진행 중이던 한국산업단지공단 박○○ 전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 선물을 보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수취 거절을 한 한 인사는 “사업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던 ○○○아울렛에서 매년 선물을 보내 와 당혹스러웠다. 수취 거절을 하고 돌려보낸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시사저널 특집 1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목차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 및 게재 쪽수를 다른 목차 부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정정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이명박·원○○도 받았다”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 이상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아울렛 선물 리스트’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7월 17일자 특집1면에 “이명박·원○○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아울렛의 대표이사 홍○○ 회장이 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고가의 명절 선물을 주었고 ‘○○○아울렛 선물 리스트’에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이름도 나와 있으며(34면, 37면), ② 원○○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장관, 박○○ 전 국무차장이 취임할 때 별도로 ‘영전 축하금’까지 건넸고(34면), ③ 이명박 전 대통령, 원○○ 전 국정원장, 이○○ 전 장관, 박○○ 전 국무차장이 전화 통화로 ‘비서 통해 선물 수령’ 또는 ‘선물 또는 영전 축하금’ 수령을 시인하였으며(36면), ④ 홍○○ 회장이 매년 명절 선물비용으로 수억 원을 지출하였고(35면), ⑤ 한국산업단지공단 박○○ 전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 선물을 보냈다가 거절당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35면).

그러나 해당 인사 및 관련 기관에 확인한 결과, ○○○아울렛 홍○○ 회장은 ①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로부터 의례적인 명절 선물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선물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고, 본 신문이 게재한 ‘○○○아울렛 선물 리스트’는 홍○○ 회장이 선물을 보낸 내역이 아니라, 홍○○ 회장이 지인들로부터 받은 선물의 내역일 뿐이며, ② 원○○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장관, 박○○ 전 국무차장에게 영전 시 꽃바구니를 보낸 적이 있을 뿐, 현금성의 ‘영전 축하금’을 건넨 사실은 전혀 없고, ③ 이명박 전 대통령, 원○○

전 국정원장, 이○○ 전 장관, 박○○ 전 국무차장이 본 신문과 직접 통화하여 ‘비서 통해 선물 수령’ 또는 ‘선물 또는 영전 축하금’ 수령을 시인한 사실은 없으며, ④ 선물의 가격대는 최하 3만 원에서 평균 10~30만 원 수준으로 명절 선물로 지출한 총 금액은 매년 수천만 원 정도였고, ⑤ 한국산업단지공단 박○○ 전 이사장에게는 2008년 추석 때 단 1회 선물을 보냈다가 수취거절된 적이 있을 뿐 여러 차례 선물을 보낸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아래의 보도문을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사저널> 35면 우측하단에 박스기사로 보도하되, 아래 보도문의 제목을 [] 로 써서 목차란(2면)의 활자와 같은 크기 및 형식으로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지면(35면)과 함께 표시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구로공단의 전설’ 홍○○은 누구?)과 같은 크기로 하되 2단으로 편집하고,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 본문 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동일 기간 내에 아래의 보도문을 <시사저널>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단, 본문의 활자크기, 줄간격은 원 조정대상기사 설명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가. 제 목 : ○○○아울렛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보는 지난 7월 16일자 제1239호 34면~40면 「이명박·원○○도 받았다」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아울렛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에게 선물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고, 본 신문이 게재한 ‘○○○아울렛 선물 리스트’는 홍○○ 회장이 선물을 보낸 내역이 아니라, 홍 회장이 지인들로 부터 받은 선물의 내역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원○○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장관, 박○○ 전 국무차장에게 영전 시 꽃바구니를 보낸 적이 있을 뿐, 현금성의 ‘영전 축하금’을 건넨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 원○○ 전 국정원장, 이○○ 전 장관, 박○○ 전 국무차장이 본 주간지와 직접 통화하여 ‘비서 통해 선물 수령’ 또는 ‘선물 또는 영전 축하금 수령’ 등의 사실을 시인한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 회장이 지인들에게 보낸 선물의 가격대는 최하 3만 원에서 평균 10~30만 원 수준으로 명절 선물로 지출한 총 금액은 매년 수천만 원 정도였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박○○ 전 이사장에게는 2008년 추석 때 단 1회 선물을 보냈다가 수취거절된 적이 있을 뿐 여러 차례 선물을 보낸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 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5.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09. 0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 례 28

신청인 회사의 영유아용 물티슈 제품에서 호흡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194, 2013서울조정1195(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3. 08. 02.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소비자시민모임이 시중에 유통 중인 14종 물티슈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 회사의 물티슈 제품에서 캐나다와 일본에서 화장품 사용에 제한되었으며 호흡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소비자시민모임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는 모든 제품의 성분이 기준치에 부합해 안전하다고 나와 있고, 신청인 회사의 물티슈 제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정정보도 청구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문화일보 :** 『영유아용 물티슈 알고보니 毒티슈?』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일자 16면)

■ **내 용 :** “시중에 물티슈 제품이 많다 보니 브랜드 파워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 왔는데 속았다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몸에 유독물질을 주입한 꼴이네요.”

경기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주부 김○○(32) 씨는 물티슈 이야기가 나오자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는 두 살난 아들의 위생 관리를 위해 평상시 손·발·사타구니 등을 물티슈로 자주 닦아주곤 했다.

그는 아이에게 쓰는 물건이라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무형광증백제’ ‘무포름알데히드’ ‘무화학향’이라고 광고하던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샀다. 하지만 뒤늦게 성분표시를 확인해 보니 해당 물티슈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유독물질이라고 경고한 페녹시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었다.

올해 이들을 출산한 주부 김○○(31) 씨도 아이의 손발을 닦아줄 때 사용하던 물티슈에 페녹시에탄올이 들어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는 앞으로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김 씨는 “향이 나는 물티슈가 좋은 것인 줄 알았다”며 “유독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쓰지 않았을 텐데 제조업체의 꼼수에 놀아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1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저출산 기조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일회용 유아용품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유아용 물티슈 시장은 지난해 업계추산 2,6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선보이는 제품만 수십 가지가 넘을 정도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많은 제품에서 유아에게 치명적인 유기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물티슈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170호에 따라 물티슈 유해물질 안전 요건이 신설, 전 성분 표시가 의무화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전 제품에 성분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아예 영유아용 물티슈의 관리 규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14종 물티슈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기준치인 kg당 100mg 이하였지만 ‘○○○ ○○○’(61mg)과 ‘○○○ 물티슈’(23mg) 두 제품에서 캐나다와 일본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가슴기 살균제에 혼합물 제형으로 쓰이면서 호흡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된 것이다.

‘○ ○○○ ○ ○○○ 물티슈’와 ‘○○○ ○○○ 물티슈 마일드’ ‘○○○ ○○○○○ ○○○’에선 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세 제품 모두 기준치(kg당 1만mg) 이하량이 검출됐지만 페녹시에탄올이 유아에게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유독물질이라는 점에서 유아들의 이용이 많은 물티슈에 이 성분이 사용된다는 건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문화일보가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독일 ○○○사의 ○○○ 물티슈의 경우 페녹시에탄올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무자극, 무독성, 무알레르기’라고 버젓이 광고하고 있었다.

이같이 물티슈에 유독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이유는 국내에선 물티슈 관련 안전기준이 섬유 유연제 등 생활화학 가정용품에 적용되는 공산품에 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르면 물티슈엔 납, 수은, 비소, 카드뮴, 크로뮴 등 금속물질이 kg당 20mg 이하면 기준치에 적합하다.

하지만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 안전기준을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납·수은·비소·카드뮴은 g당 10 μ g(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제품의 특성상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해 화장품 원료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티슈를 화장품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7월 10일 환경부 및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증기술 본부와 함께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방안 설명회’를 열어 업계 관계자들과 물티슈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연내에 현황조사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관리기준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을 세웠다.

홍○○ 소비자시민모임 팀장은 “기준치 이하라곤 하지만 MIT나 페녹시에탄올 같은 물질들이 영유아용 물티슈에 들어있으면 분명 아이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물티슈 관리기준을 화장품 원료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 물티슈를 생산하는 유○○○○ 관계자는 “물티슈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품 및 유아용 제품의 원료로 국내외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되어 온 페녹시에탄올을 기준치 미만으로 사용해 왔다”면서도 “현행 물티슈 관리 기준으로는 안전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물티슈를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대상보도 2

- 인터넷 문화일보 : 『영유아용 물티슈 알고보니 毒티슈?』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문화일보 Consumer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영유아용 물티슈 알고보니 毒티슈?”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문화일보(<http://www.munhwa.com>)의 홈페이지 경제면 Consumer 탭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안전성 테스트 통과한 ○○○ 물티슈, 안전 이상무’ (또는 ‘영유아용 물티슈 알고보니 毒티슈?’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8월 1일자 Consumer면에 “영유아용 물티슈 알고보니 毒티슈?” 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16일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14종 물티슈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으며, ‘○○○ ○○○’에 캐나다와 일본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가습기 살균제에 혼합물 제형으로 쓰이면서 호흡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7월 16일 발표한 내용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14종 물티슈 성분을 조사해본 바, 모두 기준치에 부합해 안전하다는 내용이었으며, ‘독티슈’라는 자극적인 기사와는 달리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물티슈 제품 중 ‘○○○ ○○○’는 지난 5월부터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 물티슈 보도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나. 내 용 : 본보 지난 2013년 8월 1일자 Consumer면 『영아용 물티슈 알고 보니 毒티슈?』제하의 기사에서 “허용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 ○○○’에 인체유해성분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 물티슈’에 들어간 문제의 MIT 함유량은 공산품 기준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적용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 제품의 판매원인 ○○○○○ ○○○는 “지난 5월 제조분부터는 아예 이를 사용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3년 8월 29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Consumer면 또는 16면에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발문(무형광증백제 광고 브랜드에 중추 신경 억제·설사유발성분 페녹시에탄올 함유사실 확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제2항을 이행한 당일 12:00부터 문화일보의 홈페이지(<http://www.munhwa.com>)의 <경제> 섹션 기사목록(전체리스트) 앞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80101031624098005>)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내지 제4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내지 제4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7.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내지 제4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 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3. 08. 20.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문화일보** : 『‘○○○’ 물티슈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2일자 23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인터넷 문화일보** : 『[‘○○○’ 물티슈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2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29

신청인 사(史)학회가 집필을 주도한 역사교과서가 5·16은 혁명, 5·18은 폭동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322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사학회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3. 09. 03.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 “뉴라이트 교과서에 ‘5.16은 혁명, 5.18은 폭동’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기사 제목은 사실이 아니며, 이 기사로 인해 교○○와 이 교과서의 저자들이 속해 있는 한국○○사학회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비록 피신청인이 이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기사 제목을 수정하긴 했으나, 원래의 기사 제목이 잘못되었음을 독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은 사과의 내용을 포함한 정정보도를 했고, 신청인은 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인터넷 한겨레 :** 『뉴라이트 교과서엔 “5·16은 혁명, 5·18은 폭동”』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 **내 용 :** 현행 역사교과서를 좌편향·친북 교과서라고 비판하며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미화해온 ‘뉴라이트’ 세력이 만든 역사교과서가 검정 본심사를 통과했다. 별다른 문제만 없다면 이들이 집필한 교과서는 내년부터 학교별로 교육 현장에서 채택될 수 있다. 독재 시대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

뉴라이트 등 보수 학자들이 집필하고 교학사가 발행하는 한국사 교과서가 지난달 10일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의 검정 본심사를 통과하고 현재 수정·보완중이다. 8월30일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데, 검정 본심사 통과 뒤 탈락한 경우는 없었다. 이들 학자는 ‘2009 교육과정’ 개정으로 올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전반적으로 검정을 다시 하는 데 발맞춰 지난 1월 새로 집필한 교과서를 검정심의위에 제출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지난해 검정을 새로 했다.

이들이 쓰는 교과서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뉴라이트 학자들이 밝혀온 견해를 고려하면 집필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모인 교과서 포럼이 2008년 내놓은 이른바 ‘대안교과서’는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했다. 4·19 혁명도 ‘학생운동’으로 폄하했다.

이번 교과서 작업을 주도한 단체는 한국○○사학회다. 이 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 한국학○○연구원 교수가 대표 집필을 맡았고, 학회의 교과서위원장인 이○○ ○○교육연합 상임대표(공주대 교수)와 권 교수가 모은 고교 교사 4명이 참여했다. 권○○ 교수는 31일 열린 ‘교과서 문제를 생각한다’ 학술회의에서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해방과 더불어 만들어졌다고 서술한 교과서는 없다. 교과서들은 4·19 이후, 87년 체제 이후에 민주화됐다고 보는데, 이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학사 관계자는 “권 교수가 우리 쪽에 교과서를 집필하고 싶다고 먼저 제의해 왔다. 이번에 만든 교과서는 특정 사건과 인물의 분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표 집필자의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과서에서 우려되는 대목은 제주4·3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가 민간인에게 저지른 폭력을 단순히 ‘폭동’으로 기술하는 등 역사적 사실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산업화의 아버지’로 보고 그 시절 이뤄진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은 축소하고, 긍정적인 면은 지나치게 부풀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 성공회대 교수(한국사)는 “이승만은 의회와 정당제도에 의존하지 않은 채 독재를 했고, 박정희 역시 독재를 했다. 이 둘은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자”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승만의 건국이나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옹호하는 논리는 현대사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한테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교과서 사태는 지난해부터 예상돼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전 5·16 쿠데타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월 인사 청문회 당시 5·16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교과서에 기술된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 직답을 못 드리는 이유를 이해해 달라”고 어정쩡한 답변을 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황교안(법무부)·유○○(안전행정부) 등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비슷한 태도를 보여 입길에 올랐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과를 포함한 정정보도를 한겨레신문 인터넷판에 올린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 목** : “뉴라이트 교과서에 “5.16은 혁명, 5.18은 폭동” 이란 제목이 잘못되었기에 정정합니다.
- 나. **본 문** : 본지는 2013년 5월 31일자 22시 15분 기사에서 “뉴라이트 교과서에 “5.16은 혁명, 5.18은 폭동”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아님을 인지한 후 제목을 바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엔 그런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기사에 언급된 관계자들과 해당 기관, 단체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 **인터넷 한겨레** : 『[정정] ‘이승만·박정희 독재 미화’ 뉴라이트, 역사흔들기 본격화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3일자)
- **내 용** : 본지는 2013년 5월 31일자 22시15분 기사에서 “뉴라이트 교과서에 5.16은 혁명, 5.18은 폭동”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해당 제목이 사실이 아님을 인지한 후 제목을 바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엔 그런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기사에 언급된 관계자들과 해당 기관, 단체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 례 30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아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광주조정48·49, 2013광주조정50·51(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주)호남프레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13. 09. 25.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아들에게 오래된 도넛과 부실한 간식, 썩은 김치를 먹고, 냉·난방 없이 어두컴컴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원장의 비인간적인 대우 때문에 7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모두 사직하였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원아들에게 썩은 김치와 상한 음식을 먹인 적이 없으며, 교실의 냉난방 시설과 조명 시설은 평소 정상적으로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의 비인간적인 대우로 7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사직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합의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1

- **조간호남일보 :** (1) 『옥상에 방치한 부패 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4일자 1면)
- **내 용 :** 광주시 남구 한 유치원이 아이들에게 상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교사들은 비인간적으로 대우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던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열악한 보육 시설과 원생 인권유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고 당국이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드러난 실태여서 충격파가 크다.

전직 교사와 학부모들의 폭로로 유치원 아이들은 부실하고 비위생적인 음식을 매일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치는 보기에다 부패 상태가 심각한데도 버젓이 제공됐다. 간식용 도넛은 오래된 것이고 냉동만두 한 봉지로 90명에게 먹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한다는 광고와는 달리 모든 식자재는 수입산이었고 정수기나 주방의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다. ‘부실 대접’은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4월 개원한 이 유치원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교사가 바뀌었다. 이는 원장의 비인간적인 대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꺼번에 7명의 교사가 사직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퇴근이 늦은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매일 오후 10시까지 근무한다. 공휴일에는 모두 출근, 계단 청소 같은 잡일을 해야 했고 식사도 제공되지 않아 컵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원장 방침에 따라 냉·난방은 엄두도 못내 폭염과 혹한에는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었다. 전등도 제대로 켤 수 없어 아이들은 어두컴컴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고 어두워 계단을 걷기 힘들었다.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절대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하던 원장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기 30분 전에는 꼭 에어컨을 틀었다. 땀을 식혀서 귀가시키려는 의도다. 3층짜리 유치원 건물에는 원장의 가족들도 함께 산다.

이 유치원 전직 교사는 “아이들 먹일 음식도 많지 않은데 원장 식구들까지 함께 먹어버리니 아이들에게 돌아갈 몫은 더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며 “심지어 좋은 식재료가 원장 식구들 밥상에 오르기도 했다”고 털어냈다. 그는 “교육청과 구청은 점검 한번 나오지 않았다”면서 “부실 운영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문제를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광주시 남구 한 유치원의 비인도적 처사는 관계 당국의 무관심 속에 악화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유치원의 부실한 간식 문제가 알려지기 전에 광주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해당 유치원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을 원장의 해명을 듣는데 할애했다. 교육청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교사들의 입장을 듣는 데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와 언론 보도로 드러난 간식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나가보니 문제가 없더라”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청은 5~7살의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그 문제는 유치원 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급식과 간식의 양이 적다고 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직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을 만나서는 “원장 선생님과 잘 해결해보시라”며 무책임하게 대응했다고도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을 방문해 정기 점검까지 벌였지만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조간호남일보** : (2) 『社說』 ○○ 유치원 단속직원 책임 물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6일자 15면)

■ **내 용** : 광주시 남구 ○○ 유치원의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운영 실태를 접한 사람이라면 자녀를 이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부모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옥상에 방치해둔 썩은 김치, 말라빠진 미역과 도넛. 냉동 만두를 간식으로 제공했다. 설치해놓은 냉방기기를 가동하지 않았고 전기를 아낀다며 불을 켜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기 일쑤였다. 복도가 어두워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다. 마치 후진 독재국가의 수용소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다 묻어난다.

하지만 이 유치원은 1년 넘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일류 취급을 받았다.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일류 유치원으로 건재했다면 감독기관의 단속 업무가 부실했다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건강을 위협하는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간식을 제공해온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 유치원 전직 교사가 양심선언을 했고 그녀는 실상을 카메라에 담아 언론사에 제보했다.

언론매체에 공개된 몇 장의 사진은 실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 감독기관은 현장 감독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강변한다. 충실히 라는 의미는 구석구석을 뒤져보고 직원들과 유아들의 상태, 면담도 펼치는 정도는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매뉴얼대로 현장을 점검했는데도 별문제가 없었다고 단속기관은 해명한다.

그들의 주장처럼 철저히 단속을 했는데도 부패한 식재료를 1년 넘게 사용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한 식재료나 썩은 김치는 방치된 옥상을 올라가 보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을 보면 부패한 비위생적인 간식과 음식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다.

단속기관의 철저한 점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감독기관이 단속 의지가 강했다면 교사들을 상대로 부실 실태를 조사했다더라면 상세한 정보를 얼마든지 입수했을 개연성이 높다. 교사들의 처우가 수준 이하였고 비인격적으로 대해 불만이 높았다. ‘부실 대접’을 받아온 교사들이었으므로 실태를 어느 정도 털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해 4월 개원한 이 유치원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교사가 바뀌었다. 이는 원장의 비인간적인 대우 때문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일시에 7명의 교사가 사직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퇴근이 늦은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매일 오후 10시까지 근무했다.

공휴일에는 모두 출근, 계단 청소 같은 잡일을 해야 했고 식사도 제공되지 않아 컵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한다. 인지능력이 원생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준급인 교사들에게마저 이토록 천대해왔으니 원생들이 정상대접 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유치원의 부실간식과 비교육적 운영은 더는 내버려둘 수 없는 최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기관은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를 진행해나가겠지만, 그와는 별도로 유치원 단속업무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단속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같은 최악의 사태 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자체 감사를 펴야 하며 관계 직원의 근무 태만이 있다면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

○○ 유치원의 비인간적 운영을 보는 시민들의 감정을 헤아려야 한다.

단속기관에 대한 질타도 ○○ 유치원 못지않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광주시 교육청과 위생을 담당하는 남구청은 신속하게 대응팀을 가동 실상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 해야 한다.

조정대상보도 2

■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 (1) 『옥상에 방치한 부패 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3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1) 참조>

■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 (2) 『교육청구청 관리감독 이중 구조가 주범』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3일자)

■ **내 용** :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국민적 이슈가 된 가운데 급식과 간식이 비위생적이고 부실 하는 등 끊이지 않는 아동수용시설의 문제점은 관리 감독체계가 이원화된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업무와 책임 떠넘기가 일상화되어 이들 수용시설이 문제의식 없이 비리와 비위생적 급식 등 탈선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관리 감독의 구조적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설립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에 따르면 관내에서는 공·사립을 포함해 유치원 285곳과 어린이집 1천 244곳이 운영 중이다. 유치원은 119곳, 사립 166곳으로 공·사립 숫자가 엇비슷하지만, 어린이집은 국·공립 31곳,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07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립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내에서 각각 2만2천 명, 4만7천 명의 7세 이하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인가와 관리감독 체계는 완전히 분리돼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 많아 관리 감독기관은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교육청 담당직원이 유치원장 자격요건도 모르고 있을 정도다. 유치원은 시 교육청이 인가와 교육과정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관할 구청에서 맡고 있다. 또 급식 위생 감독업무는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구청 위생담당이 맡고, 간식과 관련된 업무는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시 교육청과 구청으로 나뉘어 있다.

이 때문에 영유아들이 섭취하는 음식에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교육청과 구청이 자기 업무인지 아닌 지부터 따지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광주 남구 ○○ 유치원에서 터진 부실 간식급식과 원장의 유치원 운영 사례에서 실감 나게 드러났다.

시 교육청은 음식위생과 관련된 일이라며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고 구청은 유치원과 관련된 일이라며 대응을 소홀히 하다가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 사태가 확산한 이후에야 나서고 있다. 시 교육청의 해당 장학사는 사건발생 이후에도 유치원 원장 자격요건과 설립요건조차 파악하지 못해 비난을 샀다.

또 사고가 발생한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함께 있는데 시 교육청과 구청, 시청 어디도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는 유치원이 몇 군데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인가와 위생관리, 교육과정 감독 등이 기관에 따라 또 기관 내부에서도 따로 돼 있어 이를 한 부서에서 모두 파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이원적인 관리감독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 (3) 『○○ 유치원 합동 조사착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5일자)

■ **내 용** : 원생들에게 상한 음식재료로 만든 음식과 부실한 간식을 제공해 파문을 일으킨 광주 남구 ○○ 유치원에 대해 합동 조사와 경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부실 급식’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유치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급식비와 간식비의 집행 내역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유치원이 원생들로부터 개인당 4만원의 급식비를 받는 만큼 지난 1년간 식비 지출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 중이다.

교육청은 담당 직원을 유치원에 파견, 보조금 집행 내역을 검토하고 교육과정과 특별활동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인허가 과정과 원장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교사들의 사직과 이직이 잦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장과 교사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관할 기관인 광주 남구청도 정수기나 주방의 위생 상태, 음식물 관리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 유치원의 설립자가 인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어린이

집의 급식 상태와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도 인터넷과 언론 등에서 나온 사실을 토대로 관련 첩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원장과 교사들을 상대로 급식비 집행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보조금 집행과 회계 처리에서 횡령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관리·감독의 주체가 다르고 관련자 조사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구청, 경찰과 협조해 부적절한 운영 실태를 적발해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 (4) 『○○ 유치원 단속직원 책임 물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6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2) 참조>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조간호남일보 사회면과 사설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부제목 활자인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유치원 단속직원 책임 물어야”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조간호남일보(<http://www.honamnews.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과 사설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2)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2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가. 제 목 :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2013년 6월 24일 1면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6월 26일 15면 ‘○○유치원 단속직원 책임 물어야’ 제목의 기사와 사설에서 “해당 유치원이 원아들에게 오래된 도넛과 부실한 간식을 제공하고, 옥상에 방치해 둔 썩은 김치를 먹이고, 냉난방 없이 어두컴컴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원장의 비인간적인 대응 때문에 7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모두 사직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유치원 원장의 비인간적인 대우로 7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사직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급식과 관련하여 광주서부교육청 및 광주 남구청의 점검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원아들에게 썩은 김치와 상한 음식을 먹인 적이 없으며, 보존 기한이 넘은 도넛을 간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교실의 냉난방 시설과 조명 시설은 평소 정상적으로 가동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가. 제 목 :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교육청 구청 관리감독 이중구조가 주범”

“○○유치원 합동 조사 착수”

“○○유치원 단속직원 책임 물어야”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 문 : 본 신문은 2013년 6월 23일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2013년 6월 25일 “교육청 구청 관리감독 이중구조가 주범”, 2013년 6월 25일 “○○유치원 합동 조사 착수”라는 제목에서 오래된 도넛, 냉난방 없이 어두컴컴한 교실에서 수업진행, 광주 남구 ○○ 유치원 부실 간식 실상 드러나 파문확산이라고 보도하였고, 2013년 6월 26일 “○○유치원 단속직원 책임 물어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옥상에 방치해 둔 썩은 김치를 먹인 것처럼 보도하고 교사들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일시에 7명의 교사가 사직한 것처럼 허위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와 관련하여 광주 서부교육청, 광주 남구청등 관련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결과 ○○유치원은 “옥상에 방치한 부패한 썩은 김치·상한 수입산 음식”을 먹이지 않았고, “오래된 도넛을 간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냉·난방 없이 어두컴컴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며 교사들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일시에 모두 사직한 것이 아님이 확인 되었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 손해청구 : 취하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 신문은 2013년 6월 24일 1면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6월 26일 15면 ‘○○유치원 단속직원 책임 물어야’ 제목의 기사와 사설에서 “해당 유치원이 원아들에게 오래된 도넛과 부실한 간식을 제공하고, 옥상에 방치해 둔 썩은 김치를 먹이고, 냉난방 없이 어두컴컴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원장의 비인간적인 대우 때문에 7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모두 사직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유치원 원장의 비인간적인 대우로 7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사직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급식과 관련하여 광주서부교육청 및 광주 남구청의 점검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원아들에게 썩은 김치와 상한 음식을 먹인 적이 없으며, 보존 기한이 넘은 도넛을 간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교실의 냉난방 시설과 조명 시설은 평소 정상적으로 가동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3년 10월 11일까지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조간호남일보 8면 우측 상단에 게재하되, 제목은 15호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2013년 10월 11일까지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인터넷 조간호남일보(<http://www.honamnews.co.kr>) 홈페이지 초기 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위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의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한 날로부터 매일 금 50만 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013. 10. 0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조간호남일보** :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8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1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3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계공항서비스평가 평가 1위를 지키기 위해 평가 대상 항공편 승객들에게 보안검색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477 정정청구

신 청 인 : 인천국제공항공사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3. 10. 08.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이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순위를 위하여 ASQ 대상 항공편의 승객들에게 보안검색에 대한 특혜를 줬고, 이 특혜가 신청인이 ASQ에서 8년간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 것처럼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ASQ 대상 승객을 위한 특혜를 준 사실이 없고, ASQ 평가항목 중 보안검색은 보조지표의 일부에 불과하여 평가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했고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경향신문 :** (1) 『인천공항 ‘서비스 평가 8연패’ 비결은 ‘특혜 보안검색’』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4일자 14면)
- **내 용 :** 9월2일.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주관하는 공항서비스(ASQ) 평가 설문조사가 있는 날이었다. ASQ는 공항접근 교통~항공권 구입·교환~보안검색 등 출입국 수속~면세점~공항 내 각종 편의시설 이용~항공기 탑승의 서비스에 대한 승객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경향신문 기자 두 명은 이중 보안검색 과정을 직접 비교 체험했다. 보안검색은 인천공항공사와 계약한 용역업체가 진행했다. 두 기자가 체험한 항공기는 이날 오후 일본 나리타로 출발하는 ASQ 평가 대상 국적 항공기와 비슷한 시각 일본 나고야로 가는

일반 국적 항공기로 모두 아시아나항공 소속이었다. 두 기자 모두 기내 반입금지품목인 ‘100ml 이상의 액체류’ 리○○○ 가글(250ml), 페○○ 치약(120g), 키○ 로션(125ml), 이○○○○ 로션(160ml)을 가방에 넣었다. 로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브랜드의 잘 알려진 제품들이었다.

[비ASQ 승객 탑승기]

▲ 규정대로 “100ml 반입 불가” 통보

통사정도 안 통해… 결국 다 버려

9월2일 오후 2시27분 인천국제공항. 오후 3시10분에 출발하는 일본 나고야행 아시아나항공 OZ0124편을 타기 위해 4번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탑승권과 여권 확인을 받은 뒤 출국장 앞에 섰다. 자동문 입구에 서 있던 하늘색 띠를 두른 남자직원이 다시 탑승권을 확인했다. 그는 왼쪽 보안검색대로 가라고 안내했다.

■ 출국장 통과에 ‘15분’

왼쪽 보안검색대 중 한 곳에 줄을 섰다. 승객 4~5명이 대기하고 있다. 차례가 왔다. 절반쯤 마신 500ml 생수병과 배낭을 바구니에 담고, 기내용 캐리어를 검색대에 올렸다. 전신 검색대를 통과한 뒤 양팔을 좌우로 벌려 꼼꼼하게 몸수색을 받았다. 검문이 끝나자 컨베이어 벨트 쪽에 있던 남자 보안검색요원이 기자의 생수병을 들고 말했다.

“물은 여기에 버리든지 다 마시고 들어가세요.”

“여기서 어떻게 다 마십니까”라고 묻자 보안검색요원은 “면세점에 식수대가 있으니 물을 포기하거나 다 마시고 가세요”라고 말했다.

보안검색요원의 옆에 있는 은색 수거통에는 이미 다른 승객들이 버리고 간 음료수병 10여개가 들어 있다. 실랑이 끝에 “버려달라”고 하자 곧바로 동그란 은색 수거통에 물을 쏟아 버렸다.

기자의 가방이 찍힌 검색모니터를 보고 있던 보안검색요원이 조금 전 물을 버린 남자 보안검색요원을 불렀다. 잠시 뒤 돌아온 그가 “고객님, 가방 좀 저희가 열어봐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그는 답하기도 전에 이미 가방을 열고 옷가지 사이에 있던 반입금지품목인 가글(250ml)과 치약(120g), 로션(160ml)을 꺼내 들었다.

■ “규정상 액체류는 100ml 이상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들도 반입금지물품이에요. 액체류는 100ml 이상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규정에 공지돼 있어요.”

“그런데 다 필요한 물건이라 가져가야 하는데…” 기자가 말끝을 흐리자 잠시 기자를 바라보던 보안검색요원이 말했다. “잠시 비행편명 좀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기자의 탑승권을 다시 확인한 그가 말했다. “(이 물품들은) 반입이 안 되세요. 여기 놓고 가시든지 도로 나가서 짐을 다시 부치셔야 돼요.” 물통에 이어 2차 실랑이가 벌어졌다. “놓고 가라고요? 그럼 나중에 귀국할 때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반입 금지된 물품은 포기하시는 거예요. 가져가길 원하시면 나가서 가방을 미리 부치세요.”

“양치는 해야 하니 물통에 치약 조금만 짜서 가져가면 안돼요?” 보안검색요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안 됩니다. 2시40분부터 탑승 시작인데 고객님의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물건 포기하시겠어요?” “그럼 로션은 얼마 쓰지도 않은 거라 아까운데 이것만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자 보안검색요원이 손으로 천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규정상 안 되세요. (위를 가리키며) 그리고 여기 CCTV가 다 찍고 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보안검색요원이 재촉하기 시작했다. “나가서 짐 부치시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가져갈까요?”

“그럼 그냥 버려주세요.” 가글과 치약, 로션은 모두 보안검색요원 옆의 반투명 비닐봉지에 버려졌다.

검색을 마친 뒤 가방을 챙겨 법무부 심사대를 빠져나오자 시계는 2시50분을 가리켰다. 심사 전 취재 정리에 소요된 시간을 제외하고도 약 15분이 걸렸다.

■ 경향신문 : (2) 『ASQ 평가 대상 항공기 탑승자 검색 특혜 사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8일자 9면)

■ **내 용** :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공항서비스(ASQ) 평가에서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게 된 이면에 ASQ 평가 대상 항공기 탑승 승객에게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경향신문 9월14일자 14면 보도)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로 사실이 아니다”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는 보안검색 요원들이 서비스를 잘하려는 마음에 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보안검색 용역업체 전직 직원들은 “모든 잘못을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용역업체 직원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현직 보안검색 요원들은 “국토교통부 등이 합동 조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안검색과 관련된 언급을 피했다. 지난 1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 응한 용역업체 전직 직원 3명은 하나같이 “ASQ 평가가 진행되는 날에는 ASQ 평가 대상 항공기 탑승 승객들을 위한 보안검색대를 열고 ‘3·3’이란 은어로 이들을 구분한 뒤, 100ml 이상의 액체류를 그냥 통과시켜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1년 동안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했던 ㄱ씨는 “사실 ASQ 편명 승객의 편의를 위해 보안검색대를 열면 5명의 인원이 그쪽으로 빠지고, 남은 인력만으로 일반 승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두 배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사시간도 짧아지고 휴무인 직원들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위에서 시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ㄴ씨는 ASQ 편명에 탑승할 때 특혜를 준 승객을 얼마 뒤 일반 편명에서 다시 만나게 돼 당황했던 일화를 털어냈다. 공항을 자주 이용해 낮익은 승객이 ASQ 편명에 탑승할 때는 100ml가 넘는 액체류를 갖고 와도 그냥 통과시켜줬는데, 얼마 뒤 일반 편명 탑승자로 다시 왔을 때는 ‘안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ㄱ씨도 “간혹 일부 승객들이 텅텅 비어 있는 ASQ 쪽 보안검색대를 보고 ‘왜 저쪽은 비어 있는데 줄을 못 서게 하느냐, 저쪽으로 가겠다’고 할 때마다 난감했다”며 “일반 편명 승객들을 ASQ 평가 검색대로 보내면 혼나기 때문에 이리저리 둘러대 다른 보안검색대로 보내곤 했다”고 말했다.

ㄴ씨는 “예전에 한 ASQ 평가 대상 항공기 탑승 승객의 가방에서 반입금지물품이 나와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데, 보안업체 간부급인 부장이 와서 ‘우리 직원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하다’고 말한 뒤 그냥 통과시켜줬다”며 “그나마 계장·과장급 직원들이 간부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종종 이의제기를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ㄷ씨는 ASQ 승객에 대한 특혜 관행이 계속돼온 이유에 대해 “공항공사가 ‘하늘’이라면 보안업체와 용역 직원은 ‘땅’”이라며 “직접적으로 ‘규정을 어기라’는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무언의 압박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 (3) 『[마감 후] 인천공항의 눈치와 억지』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7일자 30면)
- **내 용** : 인천국제공항은 국제항공협의회가 주관하는 공항서비스(ASQ) 평가에서 2005년부터 작년까지 8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전 세계 공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ASQ 평가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보안검색, 친절성, 신속성 등을 물어 그 결과를 반영한다.

현장 취재결과 ASQ 평가가 이뤄지는 항공기 승객과 그렇지 않은 일반 항공기 승객의 출국장 검색 강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공항 직원들은 평가 대상이 되는 승객에겐 의붓어미 눈치 보듯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100ml 이상 액체류도 무사통과시키는 등 과도함을 넘어 위법한 친절을 보였다. 반면 일반 항공기 승객에게는 액체류 반입을 철저히 불허했다. ASQ 평가 1위를 의식해 정작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공보안에는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항공기 내 액체류 반입은 승객 안전을 위해 결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단 한번의 테러에도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9·11테러 이후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항공보안을 전담하는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9·11테러 직후 항공안전본부를 설치하는 등 보안 업무를 강화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후진적 보안검색이 낳을 수 있는 심각성을 점차 잊어가고 있는 것만 같다.

공사 측이 이번 보도를 전후해 보인 모습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보도 전 여러 차례 비보도 등을 요청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연 “기사가 나가면 소송을 하겠다”며 공격적 태도를 보였다. 기사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꺼낸 ‘소송 대응’ 카드는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의지로 비쳐졌다.

취재기자의 동선을 따라 공항 내 폐쇄회로TV를 샅샅이 뒤지고 반입금지 물품을 통과시킨 보안업체 직원 색출에 나섰다. 보안업체 직원들의 ‘ASQ 승객 눈치보기’가 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책임을 위탁업체에 떠넘기거나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보도 이후에는 송편을 뒤집어 팔떡이라고 우기는 꼴의 좀체 이해되지 않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100ml 액체류 휴대를 허용한 적이 없다. 특별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 공사는 일절 모르는 일이다”는 등 기사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직 보안업체 직원들의 “ASQ 승객들은 반입금지 품목을 종종 허용한다”는 증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역지가 사촌보다 낫다고 차라리 취재기자들이 허깨비를 보고 헛것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해명자료를 내는 편이 나올 법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공사 측은 이 보도로 인천국제공항의 명예가 실추되고, 내년 초 시행 예정으로 미국 정부와의 중인 인천공항 내 미국행 2차 보안검색 폐지 일정에 악영향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언론은 늘 고민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그 고민은 원칙과 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를 벗어난 국익과 명예는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만약 까다로운 보안검색으로 승객들의 불만이 늘어 ASQ 평가 1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그런 구차한 명예는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것이 진정한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뚝뚝하게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인천공항을 관리·운영하는 공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중 역대 연봉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파악됐다. 임직원의 14%가 역대 연봉을 받고 있다. 1인당 성과급 지급액 역시 평균 2134만 원으로 최고다. 돈 많이 받는 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공항은 승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공사는 지난 6월 ASQ 평가 대상 수상식을 마친 뒤 보도자료에서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공항의 기본원칙은 ‘편리와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생명을 담보하는 항공보안 업무에서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실수나 착오가 아닌 범죄다. 공사는 세계 으뜸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국민들의 자부심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는 사실도 간과 해선 안된다.

조정신청취지

1. 주위적 신청취지

가. **제 목** : (2013.9.14.자, 2013.9.18.자, 2013.9.27.자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지는 지난 2013.9.14.“인천공항‘서비스 평가 8연패’비결은‘특혜 보안검색?’”, 2013.9.18.“ASQ 평가 대상 항공시 탑승자 검색 특혜 사실”, 2013.9.27.“인천공항의 눈치와 억지”라는 각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순위를 위하여 ASQ 대상 항공편의 승객들에게 보안검색에 대한 특혜를 주었고, 위 특혜가 인천공항이 ASQ 평가에서 8년간 1위를 차지한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SQ 대상 승객을 위한 전용 검색대를 운영하는 등 보도내용과 같은 보안검색 특혜를 준 사실이 없고, ASQ 평가항목 중 보안검색은 보조지표의 일부에 불과하여 평가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러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2. 예비적 신청취지

가. **제 목** : 2013.9.18.자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본지는 지난 2013.9.18.“ASQ 평가 대상 항공기 탑승자 검색 특혜 사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직 보안검색업체 직원 진술의 형태로, 인천국제공항사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순위를 정하여 ASQ 대상 항공편의 승객들에게 보안검색에 대한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합동조사 및 근무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SQ평가 대상여객을 위한 별도의 전용 검색대를 운영하거나 반입금지 품목인 100ml 초과 액체류를 통과시킨 사실이 없고, 보

안검색업체 직원들이 ASQ평가 대상여객을‘일반 3·3’이라는 약어로 지칭하였다는 보도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7일자)
- **내 용**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본지의 지난 9월18일자 ‘ASQ 평가대상 항공기 탑승자 검색 특혜 사실’ 보도에 대해 “ASQ 평가대상 승객을 위한 전용 검색대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안검색업체 직원들이 ASQ 평가대상 여객을 ‘일반 3·3’이라는 약어로 지칭하거나 반입 금지 품목인 100ml 초과 액체류를 통과시킨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 례 32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대표 발의한 ‘4대 중독법안’이 게임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게임업계에 떠넘기는 법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604 정정청구

신 청 인 : 신 의 진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게임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3. 11. 13.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새누리당이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과 함께 중독물질로 보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게임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만화(카툰)와 함께 보도했다.
- 삽입된 만화(카툰)에는 법안을 대표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중독 치유기금’ 조성을 위해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매출의 5%를 걷겠다는 내용과 함께 법안이 게임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게임업계에 떠넘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법안은 게임업계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게임중독을 예방·치료하고 게임중독의 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게 임 특 :** 『[만화 4대 중독법] 술-도박-마약 그리고 게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1일자)
- **내 용 :** 지난달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 등 4대 중독’에 포함하며 ‘4대 악’으로 규정한 교섭단체 발표 연설하면서 게임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10만 명에 달하는 게임 종사자들을 자존심이 짓밟혔다며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해 20만 명이 훌쩍 넘어섰다.

게임업계와 게임 유저들이 가장 큰 반발한 것은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마약 제조에 비유되고 개발자들을 중독유발 물질을 만드는 사람으로 인식될 있도록 ‘4대약’으로 혐오 산업 종사자’로 비유한 점.

실제로 정부는 술, 도박, 마약 등 중독 물질과 함께 게임을 특별 중독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입법을 예고했다. 당 대표가 연설에 내용을 포함돼 금번 국회 회기에서 법안 상정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는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입법을 한 신의진 의원이 “규제”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다. 법적으로 처벌하는 처벌규정이 없다. 의사의 밥그릇 챙기기는 인신공격’이라며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게임 산업과 시장 전체가 마약 등과 같이 4대중독법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업계는 K-IDEA를 중심으로 하는 보다 더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사 등에 대해 단체 보이콧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강도 높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독(中毒)

1. 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일.
 2.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할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3.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경어 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네이버 사전 발췌



4대 중독법

술, 도박, 마약 그리고 게임

<p>매출 10조원 수출액 2조원</p>	<p>10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게임산업은</p>	<p>문화 콘텐츠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우수산업으로</p>
<p>참~ 쉽죠</p> <p>한국 게임산업</p>	<p>친애하는~ 친애하는~ 게임산업 게임산업</p> <p>10만 일꾼 여러분~ 러분~ 러분~</p> <p>십만의 침묵...</p>	<p>.....</p> <p>내가 더 크거든~</p> <p>게임</p> <p>웃기고 있네~</p> <p>영화</p> <p>음악</p>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때...

이크~

훈령질주~!

오우~에

중국

한국

북미.유럽

일본

도발..경멸...
도발..경멸...

뒤통수를 치다니~!!!

한국 정부

중독법 발의

킱!

힐~



4대 중독법이란?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으로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로 규정
이를 국가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내용

여성부에서 내세운 실효성 없는 **셋다운제**에



엄친데 **덜친격으로 중독법**까지~~



근본적인 원인은 파악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게임업계에 떠넘기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게임톡(<http://gametoc.hankyung.com/>)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만화 4대 중독법] 술-도박-마약 그리고 게임' 보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 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1월 11일자 칼럼면 초기화면에 [만화 4대 중독법] 술-도박-마약 그리고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카툰을 통해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중독 치유기금으로 매출 5%를 걷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과 모든 책임을 게임업계에 떠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법안은 중독 치유기금으로 게임회사의 매출 5%를 걷는 등 책임을 게임업계에 떠넘기는 내용이 없으며, 또한 규제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중독예방법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나. 내 용 : 본보는 지난 11월 11일자 산업면에 ‘[만화 4대 중독법] 술-도박-마약 그리고 게임’이라는 제하의 카툰내용 중 ‘중독 치유기금’ 조성을 위해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매출의 5%를 걷는 내용이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포함된 것처럼 언급한 바 있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해당법안은 게임업계를 규제하거나 업계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의 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3년 11월 21일(목) 12:00부터 게임톡의 홈페이지(<http://gametoc.hankyung.com>)의 <뉴스>섹션 초기화면 좌측상단 기사목록 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24>)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및 제3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및 제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6.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및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3. 11. 1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게 임 톡 :** 『중독예방법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33

신청인 학교가 일반전형에서 떨어진 학생들 중 부유층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편입학 전형에 지원하라고 권유했으며, 신청인 학교의 일부 교사가 사교육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607, 2013서울조정1614(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인터넷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3. 11. 13. (2013서울조정1607)

2013. 11. 14. (2013서울조정1614)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고등학교가 일반전형에서 떨어진 부유층 자녀들에게 전·편입학 전형지원을 하도록 전화를 돌렸으며, 영어과 교사 등 일부 교사가 영작평가를 담당한 사교육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된 내용 모두가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인터넷 한국일보 :** (1) 『○○○○고 전·편입학 부정… 교육 당국은 무덤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3일자)
- **내 용 :** 올해 서울대에 45명을 입학시켜 자율형 사립고 중 가장 많은 수를 배출한 ○○○○○고가 전·편입학과 특례전형에서 부적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교육 당국은 허술한 감사와 숨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12일 유기홍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고는 2011~2013학년도 정원 외 전·편입생 28명 중 24명을 선발 지침을 어기고 선발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입학정원(350명)의 3% 내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한 정원 외 선발을 통해 학기 초 전·편입학한 이들이다. 하지만 원서 접수시점에 ○○시에 거주하도록 돼 있는 지침을 어기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만 옮기거나 원서 접수 후 ○○시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에 신입생 선발전형에서는 특례입학대상자 등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지만 거의 합격자를 내지 않고 전 편입학에서 28명이나 정원 외로 선발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일반전형에서 떨어진 학생들의 집안 형편을 살펴 부유층 자녀들에게 전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라고 전화를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 변호사 등 부유층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한 통로로 전·편입학이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는 타 지역의 고교 입학예정자 중 ○○시로 이전한 이들을 주로 1학기 전편입학 대상으로 공고해 서울 강남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7월 전국 75개 특목고와 자사고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장과 입학관리부장 등 전편입학 책임자들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경고만 받아도 진급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경고는 영향력 없는 징계일 뿐이다. 또한 부유층 자녀를 편법으로 편입학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도교육청은 “감사관실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만 밝혔다.

그런데도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에서 ○○○고에 대한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밝혀 감사와 처분이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도교육청이 ○○○고를 감사해 문제가 드러났지만 교육부가 지적사항 하나 없다고 발표한 것은 감사가 보여주기가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철저히 재조사해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부정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는 2012학년도 특례입학 전형에서도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5~6월 감사원의 민생비리 특별점검에서 드러났다. 정원 외로 뽑는 특례입학은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했거나 탈북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감사원이 적발한 학생은 초5~중3 동안 부모 없이 미국 학교를 다닌 소위 미인정 유학자였다.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도교육청은 “국정감사와 행정감사 탓에 바꿨다”며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고 측은 “전·편입학 지원을 위한 독려전화를 돌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 인터넷 한국일보 : (2) 『사교육업체에 평가 맡겨 성적 반영한 ○○○고』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4일자)

■ 내 용 : 편입학 관련 부정 의혹이 제기된 ○○○고(본보 11월 13일자 10면)가 성적관리도 제멋대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고는 2005년 개교한 이래 올해 1학기까지 영어 과목 수행평가에 사교육업체의 영어 작문 평가를 반영했다. ○○○고는 학기마다 6~7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자비(작문 1편당 1만 원정도) 부담으로 사교육업체에 영어 작문을 제출케 하고 작문 제출 편수를 영어 성적에 5점을 반영했다.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학교가 학기 초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걷어 학교회계에 편입시킨 후 지불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영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작문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 여기고 업체에 맡겼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 관계자들은 이 사교육업체가 영어과 교사 일부와 관리자급 교사들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올해 7월 도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올 2학기부터 평가 항목에서 제외했다. ○○○고 관계자는 “해당 교사 어느 누구도 사교육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는 또 해외 대학 진출을 위해 한 학년당 3반으로 구성된 국제반 학생들의 영어 성적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한 반 평균 95점 정도가 나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수’를 몇 %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외 대학 진학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국제반 학생들은 영어 실력이 우수해 성적이 대체로 높았다”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변별력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인터넷 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11, 13, 자 인터넷한국일보)

2. 피신청인은 인터넷 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2)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 (2)를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11. 14.자 인터넷한국일보)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가. 제 목 : “○○○고 전·편입학 부정… 교육 당국은 무덤덤”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1월 13일자 사회면에 ‘○○○고 전·편입학 부정…교육 당국은 무덤덤’이라는 제목으로 이 학교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학교 측에서 일반 전형에서 떨어진 학생들의 집안 형편을 살펴 부유층 자녀들에게 전편입학 전형에 지원 하라고 전화를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 변호사 등 부유층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한 통로로 전편입학이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에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 아무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전편입학 업무 담당자 및 그 책임자인 학교관계자(관련실무자, 부장, 교감, 학교장) 또한 그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가. 제 목 : ‘사교육업체에 평가 맡겨 성적 반영한 ○○○고’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1월 14일자 사회면에 ‘사교육업체에 평가 맡겨 성적 반영한 ○○○고’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중에서 “일부 학교 관계자들은 이 사교육 업체가 영어과 교사 일부와 관리자급 교사들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에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는 기사내용과 같이 영어과 교사 일부와 관리자급 교사들이 해당업체로부터 상품권 등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일부 학교 관계자들은” 이라고 기사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관계자 누구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어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고” 관련 반론보도

나. 내 용 : 본 인터넷신문 지난 11월 13일자 사회면 ○○○고 전·편입학 부정 기사와 관련해 ○○○고는 전편입학 지원을 위한 독려 전화를 돌린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4일자 “일부 교사 금품 수수” 의혹 기사와 관련해 ○○○고는 해당 교사 어느 누구도 사교육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3년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한국일보> 홈페이지 사회면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지면보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13. 11. 2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한국일보 : 『‘○○○고’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8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34

국립현대미술관이 청와대의 압력으로 특정 화백들의 작품을 서울관 개관전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733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립현대미술관

피신청인 : 주식회사 참언론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3. 12. 05.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에 전시될 예정이던 특정 화백들의 작품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제외되었으며, 이 사실을 전시회 기획자가 당사자인 모 화백 측에게 알려주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특정 화백들의 작품이 전시되지 않은 것은 전시회 기획자의 판단이었을 뿐 청와대의 압력은 없었으며, 관련 사실을 당사자인 모 화백 측에 확인해 준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시사 IN :** 『‘시대정신’ 속 빠진 시대정신 전시회』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30일자 60~62면)

■ **내 용 :** 문제가 된 작품은 임○○ 화백이 그린 고 문익환 목사 그림이었다.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이름의 이 그림은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는 문 목사를 종이 부조로 표현한 것으로 임○○ 특유의 부감과 입체감을 살린 작품이다. 함께 문제가 된 또 다른 작품은 1980년대의 암울한 시대를 인물들의 일그러진 얼굴로 나타낸 이○○ 화백의 ‘생각의 기록’이다. 사람들 표정이 마치 고문을 당하는 듯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작품이다.

11월 1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에서 전시될 예정이던 이 두 작품이 제외되자 임○○ 화백이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과는 이랬다. 11월 12일 개관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해서 11월 7일 오후 청와대 직원들이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후 자신의 작품을 비롯한 몇몇 작품이 전시에서 제외되었다는 것. 임 화백은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제외되었다는 사과를 기획자로부터 받았다고 이를 폭로했다.

기획자인 정○○ 서울대 교수는 “애초에 외압이라는 말 자체를 꺼낸 적이 없다. 전시장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온 줄도 몰랐고 그들과 말을 섞은 적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최○○ 학예연구1실장은 “청와대 직원들이 미술관을 사전 방문한 것은 맞지만 안전 점검을 위한 것이고 작품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오보라고 주장했다.

진실은 무엇일까? 서울관 내부 근무자를 통해 임○○ 화백의 작품과 이○○ 화백의 작품이 전시관에 이미 걸렸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서울관 개관전만 2년을 준비했다고 말한 바 있다. 2년을 준비한 개관전 작품이 청와대 직원이 방문하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뀌었다는 얘기다. 문제를 제기한 임○○ 화백은 외압을 파악한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바로 내 앞에서 청와대의 압력을 중계방송했다. 나와 전시 관련 논의를 하던 담당자가 전화를 받으며 ‘그게 정말이야? 청와대가? 말이 돼? 몇 점이나 빼라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정○○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중략)

전시된 작품들은 공통점이 있다. 치열한 1980년대에 현장에 있지 않고 유학을 갔던 작가들의 작품이 많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현대사의 시대정신이 아니라, 예술을 통제하려는 박근혜 시대의 시대정신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임○○ 화백은 “이번 일을 당하면서 1980년과 2013년 사이가 통째로 다 사라져버린 느낌이 들었다. 그냥 1980년대의 연장선에서 계속 살고 있는 기분이다. 앞으로 허투루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긴장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시사N> 60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시대정신 속 빠진 시대정신 전시회”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전시회 청와대 외압설’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 문 : 본 잡지는 지난 11월 30일자 문화면 60면 내지 61면에 걸쳐 “시대정신 속 빠진 시대정신 전시회”라는 제목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시회에서 임○○ 화백과 이○○ 화백의 작품이 제외되면서 청와대 외압설이 불거지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신○○ 화백의 작품도 개막 직전에 빠진 것을 확인했다”라는 부제목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에서 전시될 예정이던 임○○ 화백과 이○○ 화백 등의 작품이 2013년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제외되었으며 이를 전시회의 기획자인 정○○ 교수가 임○○ 화백에게 직접 확인을 해 주었다는 임○○ 화백의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임○○ 화백의 주장과는 달리 임○○ 화백의 작품인 <하나됨을 위하여>가 전시되지 않은 것은 기획자인 정○○ 교수가 본인의 판단으로 전체 구성을 고려하여 전시확정작이 아닌 전시에정작이었던 임○○ 화백의 작품을 제외한 것 뿐이고, 임○○ 화백의 주장과같이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거나 정○○ 교수가 임○○ 화백에게 청와대의 압력 행사를 확인해 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전, 청와대 외압설’ 관련 반론보도

나. 본 문 : <시사IN>은 지난 11월 30일자(제324호) 60~62면 ‘시대정신 속 빠진 시대정신 전시회’ 기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에 전시될 예정이던 일부 화백 등의 작품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제외된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은 “청와대로부터 일부 화백의 작품을 제외하라는 내용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전시회의 전체 구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판단 결정한 것이다” 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사IN’ 2013년 12월 28일자(제328호) ‘여기는’ (오피니언면)에 보도하되, 제목의 글자크기는 2013년 11월 30일자 9면 우측「정기구독 주소변경 배달 사고 문의는」의 글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의 글자는 통상의 기사의 본문글자크기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2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12. 13.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시사 IN :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전, 청와대 외압설’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8일자 9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35

젊은 세대의 新소비풍속도를 전하면서, 신청인들이 월세를 살면서 빚을 내어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766·1767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최○○, 2. 이○○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3. 12. 18.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본인들의 소득 수준을 넘는 외제차를 구입하여 빚더미에 앉게 되는 ‘카푸어족’ 세태를 보도하면서 모자이크 처리한 신청인들의 초상을 방송에 내 보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당초 피신청인으로부터 요즘 젊은 소비자들의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대해 보도를 한다고 들었고 부정적인 기사도 아니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을 믿고 취재에 응했는데, 실제 방영 내용은 이와 달라서 초상권 승낙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들이 월세 세입자 이고 ‘유예할부’로 수입차를 구입했다는 방송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및 각 5,000,000원 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각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 이후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는 집을 살 수 없는 젊은이들이 좋은 차를 사는 새로운 트렌드를 보도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혔고, 신청인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으며, 신청인들의 불만을 고려해 신청인 홈페이지에서도 기사를 삭제하는 이외에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에도 연락을 취해 기사를 삭제하는 등 충분한 사후 조치를 취하였다고 반박하며 이익을 신청했다.

조정대상보도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新풍속도.. 월세살며 벤츠탄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30일자 19:55)

- **내 용** : ▷ 앵커 :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수입차 구매 고객의 절반 가량이 20~30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월세 수십만 원짜리 원룸에 살면서 5천만 원이 넘는 고급차를 타는 사람들을 흔히 ‘카푸어족’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젊은층에서 ‘카푸어족’들이 늘고 있는 이유 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 기자 : 보증금 5백만 원에 월세 5십만 원이면 방을 구할 수 있는 경기도의 원룸촌. 한집 건너 한집 꼴로 수입차가 서 있습니다. 연봉 4천만 원대의 직장인 김 모 씨도 5천만 원 넘는 벤츠 C클래스를 탑니다.

▷ 인터뷰(김 모 씨/30세) : “지금 행복해야 나중에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차를) 할부로 구입했죠...”



▷ 기자 : 수입차를 타는 연령층은 꾸준히 낮아져 수입차를 산 사람의 절반 가량이 2~30대 젊은 층입니다.

▷ 인터뷰(이 모 씨/29세) : “개성을 중시하기도 하고 자기 표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 기자 : 특히 차 값의 70%까지는 3년 뒤에 내는 ‘유예할부’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수입차 갖기는 더 쉬워졌습니다.

▷ 인터뷰(이○○/○○○○ 영업팀장) : “유예할부가 당장은 부담은 안돼서 조금 더 좋은 수입차를 탈 수 있다는 장점...”

▷ 기자 : 문제는 무리해 비싼 차를 샀다 빚더미에 앉는 이른바 ‘카푸어’족. 할부기간이 끝나도 차값을 못갚아 경매로 팔리는 수입차가 2008년 78대에서 2012년 400대로 급증했습니다.

▷ 인터뷰(곽○○/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 “20~30대는 굉장히 혜택을 받을 세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다든지 이러한 것보다 지금 당장의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를 하게 되고...”

▷ 기자 : 40~50대 하우스푸어와 30~40대 렌트 푸어가 집 때문에 빚을 졌다면 20~30대는 차 사느라 빚을 지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MBC-TV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벤츠 카푸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11월 30일 MBC뉴스프로그램에서 “20-30대 젊은 소비자들, 소비트렌드가 바뀌다”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방송 당시 사전예고 없이 “新풍속도.. 월세살며 벤츠탄다”라는 주제로 바꾸어 보도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월세에 살며 유예리스로 빚을 지며 힘겹게 벤츠(수입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보도 인터뷰 당사자들은 월세를 살지도 않을뿐더러 유예리스 상품을 이용하지 않음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실제 인터뷰 주제 및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보도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확정 전 이행도 가능)에 MBC-TV의 <8시 뉴스 데스크> 프로그램 말미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하단에 <별지>의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별지>의 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을 지체한 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신청인에게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확정 전 이행도 가능)에 신청인 최○○에게 2,000,000원을, 신청인 이○○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이 유

중재부는 신청인의 청구취지, 신청인의 주장 및 소명자료의 수준, 피신청인 매체의 성격과 영향력, 피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를 방송하게 된 경위, 조정 대상보도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 그리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조정심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별지>

1. 제 목 : <카푸어 보도 관련> 반론보도

2. 본 문 : MBC는 2013년 11월 30일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카푸어족’ 관련 방송을 보도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월세를 살면서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녀 빗더미에 앉는 ‘카푸어족’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에 사례로 나온 인터뷰 당사자들은 카푸어족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3. 01. 2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제 2 장 : 초상권 침해 사례

사 례 36

절도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의 초상, 성명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48 손배청구

신 청 인 : 빗○○○ ○○○○

피신청인 : (주)케이엠에이치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1. 16.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절도의 피해자인 신청인의 얼굴, 목소리, 이름, 국적, 사는 집 등을 방송에 모두 공개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범죄용의자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 음성변조 등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갖추었으면서도 정작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호 없이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1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함과 더불어 조정대상보도(사냥꾼 이대우 1회, 9회)가 방송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조정대상보도의 저작자인 CJ E&M(주)이 향후 해당 보도를 방송 또는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내용(경위 포함)을 담은 공식 문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디원 TV** : (1) 사냥꾼 이대우 프로그램 『1화 - 고독한 추격』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24일자 19:30)
- **내 용** : ▷ 내레이션 : 고시원에 사는 이탈리아 여성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다.



- ▷ 경찰 1 : 문을 열어놨었어?
- ▷ 경찰 2 : 시정을 안해 놔드립니다.
- ▷ 내레이션 : 외국인 아가씨가 전 재산인 노트북을 도난당해 버렸다.



- ▷ 경찰 2 : How old are u?
- ▷ 신청인 : 스물한살
- ▷ 내레이션 : 도둑 맞은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수라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
(신청인 방을 비추며) 놀란 가슴을 달래주는 건 막내 경호 몫이다.



▷ 경찰 2 : 바로 해야지 신고를.... 어제 밤에 라스트 나이트 바로 신고 해야지



▷ 신청인 : 근데 저는 전화번호 몰랐어요 , 그 남자 아래 통화 했어요 이야기 했어요

▷ 경찰 2 : 관리자한테? 매니저한테?

▷ 신청인 : 네 근데 그..



▷ 경찰 2 : 답에 혹시 뭐 하면은, 일 있으면 일 생기면 112로 해요 전화.

▷ 신청인 : 네 지금 알았어요

▷ 내레이션 : 지문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 경찰 3 : 지문은 없어요

▷ 경찰 2 : 없어, 핑거프린터 없어

▷ 신청인 : 아, 죽겠다..

▷ 경찰 1 : 문 시정하고요 같이 가야죠 저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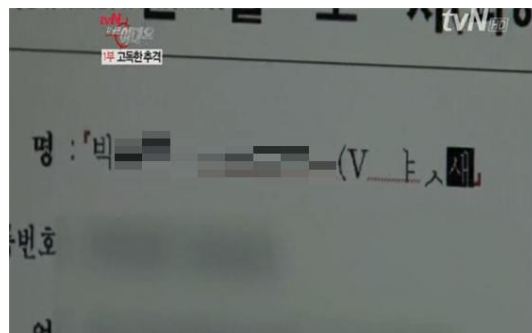
- ▷ 신청인 : 어디?
- ▷ 경찰 1 : 경찰서
- ▷ 신청인 : 네... 많이(오래) 걸릴까요?
- ▷ 경찰 1 : 아니요 또 모셔다 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문 잠그고
(경찰서 안)



▷ 내레이션 : (통역을 부를 만한 상황도 아니고 아가씨가 한국말을 알아듣긴 하니 되는 대로 조서를 써보기로 했는데

▷ 경찰(빨간옷) : 빅○○○○ ○..○...○...

(신청인 성명이 화면에 그대로 다나옴)



- ▷ 내레이션 :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일단 영어자판 치는 것만으로도 힘겨워 보인다.
- ▷ 경찰 :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잉?
- ▷ 신청인 : (신청인 얼굴화면 ZOOM UP하면서)1월? 2월? 경찰? 경찰에 갔어요.

(신청인 얼굴을 경찰얼굴과 함께 크게 띄우며)



- ▷ 내레이션 : 물어보는 사람도 속이타고 무슨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더 속이 타고 답답한 상황을 경호가 부드럽게 넘겨준다
 - ▷ 경찰(경호) :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 ▷ 신청인 : 컴퓨터 없어요...저는 컴퓨터로 매일매일 이야기 했어요
 - ▷ 경찰(경호) : 엄마랑?
 - ▷ 신청인 : 네 엄마랑 남동생이랑
 - ▷ 신청인 : 한국사람...
 - ▷ 내레이션 :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엄마 동생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하던 노트북을 도둑 맞았으니 오죽 속이 상할까?
 - ▷ 경찰(경호) : 도둑 물건 훔쳐간 사람 잡는데 잡아줄게요
 - ▷ 신청인 : 진짜요?
 - ▷ 경찰(경호) : 하이튼, 잡는, 범인, 도둑놈,
 - ▷ 나레이션 : 어떻게든 해결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다. 팀원들도 똑 같은 마음 일꺼다.
- **디원 TV** : (2) 사냥꾼 이대우 프로그램 『9화』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24일자 20:25)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2월 8일까지 금 5,5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향후 피신청인은 원 조정대상보도(사냥꾼 이대우 1회, 9회)가 방송되지 않도록 한다.
3. CJ E&M(주)은 해당 원 조정대상보도(사냥꾼 이대우 1회, 9회)가 향후 방송 또는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내용(경위 포함)을 담은 공식 문서를 신청인에게 2월 8일까지 전달하도록 한다.
4. 신청인 및 신청인 대리인은 향후 본 보도(사냥꾼 이대우 1회, 9회)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CJ E&M(주)과 그들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1. 2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5,500,000원 지급

사 례 37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사진을 자료 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78·79, 2013서울조정80·81(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황○○ 외 3인,
 2. 김○○ 외 4인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2.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1. 29.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범죄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모델하우스에서 근무 중인 신청인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보도내용과 무관한 본인들의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개인의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생업인 분양업무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총 1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신청인 1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각 7,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했으며(조정성립사항 1. 참조), 신청인 2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조정성립사항 2. 참조).

조정대상보도 1

- **SBS-TV :**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4일자 11:00)
- **내 용 :** ▷ 진행자 : 기획부동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토지를 거짓으로 분양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기업체 인데요. 갈수록 그 방식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기획부동산은 주로 임야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등기도 하지 않고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넘기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아 부동산을 팔고 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략)

▷ 진행자 : 일부 기획부동산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해 사람을 고용한 후에 고용된 사람이 토지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다단계 판매 유형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또한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허위로 내세우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거나 잠적하는 등 펀드식 투자자 모집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경화면에 신청인들 등장]



(후략)

조정대상보도 2

- **SBSi** :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4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SBS-TV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SBSi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 목** :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 문** : 제목 : 본 방송은 지난 1월 24일 ‘SBS 생활경제’에서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면서 ○○ ○○○○○ ○○○ 모델하우스의 팀장 및 직원들이 상담하고 있는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팀장과 직원들은 해당 방송 내용인 기획부동산 사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 황○○ : 60,000,000원
 - 홍○○, 양○○, 신○○ : 40,000,000원
 - 김○○, 김△△, 최○○, 황○○, 정○○ : 20,000,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1. 보도문

가. 제 목 :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 방송 지난 1월 24일자 SBS생활경제 프로그램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하의 보도에서 사용한 ○○ ○○○○○ ○○○ 모델하우스의 팀장 및 직원들의 근무 모습은 해당 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제1항의 보도문을 2013년 2월 22일까지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의 멘트로 보도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3.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들 각자에게 2013년 2월 27일까지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성 명	금 액
신청인 황○○	7,000,000원
신청인 홍○○	5,000,000원
신청인 신○○	3,000,000원
신청인 양○○	3,000,000원

5. 신청인들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그들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2. 13.

조정성립사항 2

1. 보도문

가. 제 목 :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 방송 지난 1월 24일자 SBS생활경제 프로그램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하의 보도에서 사용한 ○○ ○○○○○ ○○○ 모델하우스의 팀장 및 직원들의 근무 모습은 해당 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제1항의 보도문을 2013년 2월 22일까지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의 멘트로 보도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3.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들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신청인들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그들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2. 13.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SBS-TV** :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9일자 11:20)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1, 2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 각 7,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지급

사 례 38

온라인 도박 중독 피해를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413, 2013서울조정414(병합)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3. 27.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온라인 도박 중독 피해를 보도하면서 모자이크 처리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게재하고 신청인이 기초수급자 대상자이며 폐결핵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최대한 초상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피신청인의 촬영에 응했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얼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실어, 신청인이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기초수급자인 사실이 주변인들에게 알려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사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모두 삭제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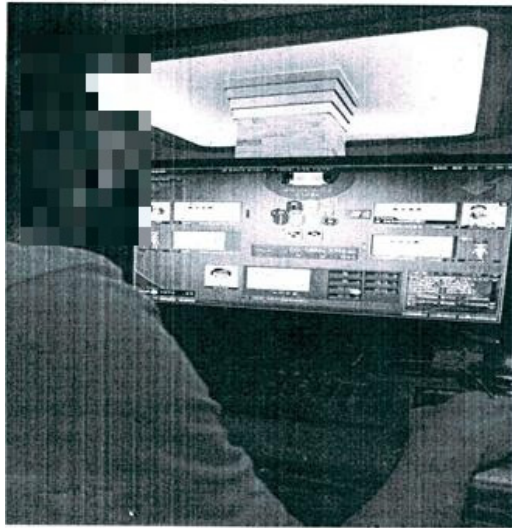
조정대상보도 1

■ **중앙Sunday** : 『게임머니 환전 ‘머니상’에 걸리면 도박 폐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7일자 8면)

■ **내 용** : 게임머니 환전 ‘머니상’에 걸리면 도박 폐인

#1. “빚이 5억 원입니다.” 김 모(45) 씨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했다. 직장을 잃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된 것도 모자라 폐결핵까지 걸렸다. 어두운 PC 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줄담배를 피웠기 때문이라. 최근에는 뇌종양까지 생겨 전전공공하고 있다. 김씨는 “웹보드 게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고 한탄했다. 처음 시작한 건 14년 전. 누구나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재미 삼아 하던 고스톱·포커 게임이었다. 하지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상을 만나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환전상을 알고부터 게임머니가 곧 현금이 됐고 게임이 직업이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게임용 아바타 환불 건으로 NHN·한계임을 상대로 소송을 건 상태다. 4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중략)

게임회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게임 홍보 담당 황○○ 과장은 “게임회사들도 불법환전상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입장”이라며 “다양한 근절 대책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고 있지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고액 베팅 금지 등 문화부 지침 이행 ▶불법환전 신고센터 등 업계 공동 대응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 대책을 시행 중이다.

단속의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불법 환전상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시로 바꿔 수사상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가 아닌 합법 게임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조정대상보도 2

- 인터넷 중앙Sunday : 『게임머니 환전 ‘머니상’에 걸리면 도박 폐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7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사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4월 12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그들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4. 0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사 례 39

신청인의 촬영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직원으로 근무하는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을 임의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465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이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4. 10.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 인상에 대한 기사에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신청인의 초상 및 이름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촬영 당시 명백하게 촬영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신청인이 요금표만 찍겠다는 약속을 한 후, 이를 어기고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청인은 전 남편의 폭력 성향이 심하여 신청인의 취업 및 근무지를 전 남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신문에 신청인의 초상과 이름이 여과 없이 보도되어 피해가 크다면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이투데이 :**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 인상』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7일자)
- **내 용 :**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330원 인상된 27일 오전 신공항 톨게이트의 요금소에 가격 조정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대교 등 전국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노선별로 100~4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4월 30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4. 2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사 례 40

영화 홍보 차 내한한 미국 영화배우 월 스미스와 사진을 찍고 있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592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파이미디어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5. 13.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미국 영화배우 월 스미스의 내한 행사를 보도하며 팬으로서 함께 사진을 촬영하던 신청인의 초상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공의 이익과 전혀 관련 없는 개인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무단으로 보도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했다.

조정대상보도

- **티비리포트 :** 『월 스미스 ‘아리따운 여성팬과 셀카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 **내 용 :** 할리우드 배우 월 스미스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외화 ‘애프터 어스’(M. 나이트 샤말란 감독) 공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팬들과 만남을 갖고 있다.

월 스미스, 제이든 스미스 부자가 출연하는 ‘애프터 어스’는 3072년 인류에게 버림받아 황폐해진 지구에 불시착한 아버지와 아들이 공격적으로 진화한 생명체들에 맞서 생존이 걸린 극한의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로 오는 30일 전 세계 최초 개봉한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6월 5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5. 2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사 례 41

촬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빙수를 먹고 있는 신청인들의 초상을 임의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부산조정53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외 2인
피신청인 : 제이씨엔을산중앙방송주식회사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13. 08. 19.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지역 맛집을 소개하면서 신청인들이 팔빙수를 먹는 장면을 방영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촬영 당시 명시적으로 촬영을 거부하였고, 특히 신청인1의 경우 눈 성형 수술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인들을 만나지 않고 있었는데 이 방송으로 인해 주변에서 수술 부작용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는 등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각 1,5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게 700,000원, 신청인 2와 신청인 3에게 각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 **JCN 울산중앙방송 :** 김PD의 맛짱 프로그램 『팔빙수편』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18일자 17:29) (2013년 7월 18일자 10:28)
- **내 용 :** (내용 생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인 3에게 각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3. 8. 31.까지 신청인 1에게 금 700,000원, 신청인 2 및 3에게 각 금 3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2.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만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8. 2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신청인 1에게 손해배상금 700,000원, 신청인 2와 신청인 3에게 손해배상금 각 300,000원 지급

사 례 42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행에 관해 보도하면서 마트에서 시식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강원조정20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삼척문화방송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13. 10. 24.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동해시 관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예고에 관해 보도하면서 마트에서 시식 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방영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촬영 당시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이후 다른 내용 보도 시에도 신청인의 초상이 담긴 영상을 여러 차례 재사용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조정대상보도를 포함하여 신청인이 보도된 영상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며, 향후 재방송 및 인터넷 VOD영상에도 방송되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삼척MBC-TV :** MBC 뉴스데스크(삼척) 프로그램 『대형마트 영업제한 행정예고, 다음달 시행 예정』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9일자 20:40)
- **내 용 :** 강원도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와 관련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도내 18개 시군에 전달했습니다.

표준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가 점포가 의무휴업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세무 당국이 발행한 농수산물 매출 증명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동안 농산품의 범위 내 매출액 비중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발생했던 논란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원의 지적을 반영해, 둘째와 넷째주로 못 박았던 의무휴업일을 대형마트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도는 빠르면 다음 달 중 각 시군의 조례가 재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삼척문화방송(삼척MBC-TV)은 신청인에게 2013년 11월 30일까지 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2013년 11월 8일까지 조정대상방송을 포함하여 신청인이 보도된 영상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향후 재방송 및 인터넷 VOD 영상에도 방송되지 않도록 한다.
3. 제항 내지 제2항을 피신청인이 이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11. 0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500,000원 지급

사 례 43

소아암 치료법에 관해 보도하면서 환자인 신청인 자녀 및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728 손배청구

신 청 인 : 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채널에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3. 12. 04.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소아암에 양성자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양성자 치료를 받고 있는 신청인의 자녀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가족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촬영 당시 초상을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위 보도로 인해 피신청인으로부터 금전상의 이득을 얻은 것이 없음에도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촬영에 응했다는 주변의 오해도 받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해당 방송을 여러 차례 재방송하고 타 방송사에 이를 재판매 하기도 하여 이 내용이 확산된 피해를 입었다며 6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채널 A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조정대상방송에서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 방송 부분을 삭제하고, 해당 프로그램 다시 보기 화면에 일정한 안내 문구를 게시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게시된 다음과 네이버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방송분이 게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향후 신청인이 조정대상 프로그램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었다고 통지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경우 피신청인이 배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채널 A :** 이영돈PD, 논리로 풀다 프로그램 『9회 - 암 4부』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1일자 21:50, 7월 25일자 00:10, 7월 27일자 11:20, 7월 30일자 02:20, 8월 2일자 13:00)
- **내 용 :** (방송 내용 생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한은 2014년 1월 22일로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채널 A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조정대상방송에서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 방송 부분을 삭제하고, 해당 프로그램 다시 보기 화면에 ‘초상권 침해 문제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제기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였으므로 불법으로 다운받아 배포할 시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게시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게시된 다음과 네이버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방송분이 게시되지 않도록 2014년 1월 20일까지 조치를 완료한다. 또한 향후 신청인이 조정대상 프로그램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었다고 통지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경우 그 통지나 삭제를 요청받은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배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4. 피신청인이 위 3항 전단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일 100만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5.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 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금전적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1. 0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5,000,000원 지급

제 3 장 : 음성권 침해 사례

사 례 44

시중에 판매되는 원액기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쇼호스트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 2013서울조정2(병합)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주식회사 아이엠비씨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1. 04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원액기로 짠 주스의 영양소가 낮다는 취지의 방송에서 원액기를 판매한 쇼호스트인 신청인의 음성과 초상을 방영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음성과 초상권 이용에 승낙한 사실이 없고, 음성 변조나 모자이크 처리 등도 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이 방송으로 인해 왜곡된 판매 방송을 하는 쇼호스트로 인식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iMBC의 조정대상 보도 동영상 중 신청인(초상 및 음성)이 나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향후 이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신청인에게 해당 방송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당사간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했다.

조정대상보도 1

■ **MBC-TV** : 불만제로 UP 프로그램 『[5회] 고소한 실험 - 원액기 열풍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8일자 20:50)

■ **내 용** : (전략)

▷ 음성 (00:36:13~00:36:18)

“그 안에 노란색 정말 보라색 영양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짜주는 거예요.”

▷ 음성 (00:36:23)

“네”

▷ 손, 얼굴 노출 (00:36:26~00:36:30)

석류 씨를 들고 있는 신청인 오른쪽 손. 이어서, 모자이크처리 없이 인식 가능한 얼굴 부분만 살짝 초점이 흐릿한 채로 신청인이 석류원액을 마시는 모습

▷ 얼굴만 흐릿하게 상반신 움직임 전체 노출 (00:42:56~00:42:58)

▷ 음성, 손, 상반신 움직임 노출 (00:46:43~00:46:56)

“이게 여러분 실처럼 찌꺼기가 실 됐어요. 바느질 하겠어요. 이 껌질에 이 실 보이세요? 이걸 소화 안 되는 거 잿아요? 이걸 소화 안 되는 거 잿아요? (반복사용)
이것만 버리고 나머지 앞으로 다 짰어요. 한 잔을 신선하게“

(후략)

조정대상보도 2

- **IMBC** : 『[다시보기] 고소한 실험 - 원액기 열풍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8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 및 사건 조정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013년 1월 18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이엠비씨는 2013년 1월 1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해당 조정대상보도 동영상 중 신청인(초상 및 음성)이 나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향후 이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방송과 관련, 유감을 표명한다.
4.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이엠비씨가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1. 1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사 례 45

대학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을 다루면서, 이 사건과 무관한 해당 대학의 재학생인 신청인의 실명을 피해자의 가명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대전조정22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대전문화방송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13. 04. 16.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모 대학 교수의 제자 성추행 관련 보도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인터뷰 방송 화면에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신청인의 실명을 피해자의 가명으로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름이 비록 방송에서 성추행 피해자의 가명으로 기재되기는 했으나, 신청인은 동 대학 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주변인들로부터 성추행 피해자인 것처럼 오해 받는 상황이 발생했고, 피신청인이 J교수라고 가해자를 기재한 것을 보면 피해자도 이니셜 표기로 대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이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 이름으로 가명 처리를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신청인은 1차 심리 때 피신청인의 유감표명이 있었으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소송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며 조정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대전MBC-TV :** 시사플러스 프로그램 『제자 성추행, 교수사회 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2일자 23:15)
- **내 용 :** ▷ 이○○(가명/성추행 피해자) : 대체적으로 실기수업이다 보니까, 뒤에 서 있어서 어떻게 접촉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잠깐 비켜봐라, 하면서 살짝 끌어안는 느낌을 준다던가...

- ▷ 김△△(가명/성추행 피해자) : 술을 먹으러 가면 강압적으로 나오시고, 1, 2학년 과대표들은 더 (집에) 못 가게 해서 노래방에 가서 브루스까지 썼고...
- ▷ 이○○(가명/성추행 피해자) : 친구들한테 들었던 말들이었어요. 선배들 말이 맞았다.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더 그러더라, 만지더라, 자꾸 접촉을 해온다...
- ▷ ○○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생 : 졸업생 반응은 놀랍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사실. 굶을 대로 굶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 ▷ C교수(○○대학교) : 지금까지 상황들이 너무 사실과 다르고, 너무 왜곡됐고, 과장됐고. 부끄러운 행동한 적이 없어요.
- ▷ 김○○(가명/성추행 피해자) : 노래방에서 교수가 몸을 더듬는 것 같아서 도망을 다녔는데도 저를 계속 쫓아와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끔 자기 몸으로 저를 가린 다음에 제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학생의 엉덩이도 만졌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남자 학우들의 주요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 ▷ J교수(△△대학교) : 저는 완전히 필름이 끊겨가지고 만취한 상태였고, 저는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여학생을 몰래 으스스한 곳으로 불러내서 추행했다고 하는 이런 것과 다르지 않냐... 한 번 취해가지고 실수한 건데...
- ▷ 김○○(가명/성추행 피해자) : 작년 9월 이 교수가 부임한 이후에 9월 말 경에 저에게 행한 것과 동일한 수위의 추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 당시 교수가 작성하고 서명까지 한 각서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스스로 교수직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 가해 교수는 당시 술자리에 있던 학생들을 불러서 저를 찾아내려고 계속 시도를 했고, 법조계가 좁다, 그런 태도로는 법조계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등의 얘기를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 저는 신입생이었고 앞으로 입학할 해서 이분을 빼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저에게 왜 이러시냐고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 ▷ 이○○(가명/성추행 피해자) : 저희 생계를 진 분이잖아요 그분들이 학점이든 나중에 추후에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생활이든. 그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 ▷ △△대학교 학생처 관계자 : 신문에 난대로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저희 손에서는 떠났어요.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사 례 46

신청인들이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했으나 경찰의 부실수사로 무혐의 송치됐다고 잘못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성명을 그대로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강원조정12·13, 2013강원조정14·15(병합)

각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외 3인

피신청인 :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13. 06. 26.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했지만 경찰의 부실수사로 무혐의 송치됐다고 하면서 신청인들의 성명이 적시된 플랜카드 사진을 그대로 기사에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기사 작성 전 신청인들에게 인터뷰 요청도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성명을 기사에 그대로 노출시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 및 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를 게재함과 동시에 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인터넷 강원도민일보의 조정대상기사 및 신청인들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향후 제3자에 의해 재보도 되었을 경우 삭제요청을 하도록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강원도민일보 : 『“부동산 사기 부실수사… 경찰 징계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12면)
- 내 용 : 사법정의 국민연대 시위 평창경찰서 “재조사 하겠다”



▲ 사법정의 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 회원 10여명은 11일 평창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갖고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한 홍 모 씨 등 4명을 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 이들을 돌봐준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평창/신현태

사법정의 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 회원 10여명은 11일 평창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갖고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한 홍 모 씨 등 4명을 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 이들을 돌봐준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사법연대에 따르면 홍씨 등 4명은 최 모(48·여·평창군 ○○면)씨에게 “펜션을 매수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다”는 등의 공갈로 시가 4억여 원짜리 펜션을 8억 3,000여 만 원에 사도록 해 금품을 강탈하고 이를 고소해 조사를 벌인 평창경찰서의 경찰관은 부실수사로 홍씨를 무혐의 송치했다는 것. 이에 따라 사법연대는 홍씨 등 4명을 구속의견으로 송치할 것과 담당 경찰관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평창경찰서 관계자는 “고소내용에 대한 충실한 조사가 이뤄졌으나 사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 다시 한 번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정대상보도 2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 『“부동산 사기 부실수사… 경찰 징계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강원도민일보 (12면-원주·횡성·영월·평창·정선)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1)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사법정의 국민연대시위’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1)〉

가. 제 목 :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이 지난 2013년 6월 12일 「“부동산 사기 부실수사…경찰 징계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사법정의 국민연대 회원 10여 명은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한 홍 모 씨 등 4명을 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 이들을 돌봐준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홍 모 씨 등 4명은 최 모 (48.여.평창군 ○○면)씨에게 펜션을 강매하는 등 공갈협박 및 금품을 강탈한 사실이 없으며, 최 모 씨가 자신의 기도터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매입을 위하여 김 모 씨와 박 모 씨 부부는 평소 10억에 매매하려던 펜션을 8억 3000여 만 원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무속인 홍 모 씨는 이 거래에 어떠한 관련이 없으며, 홍 모 씨 또한 평소 알고 지내던 최 모 씨가 펜션을 구매하는데 있어 어떠한 주장을 한 것이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펜션을 구매한 최 모 씨가 7개월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한 사실도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최 모 씨가 증거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였기에 무혐의 송치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평창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어떠한 유착관계가 전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아래의 반론보도문 (2)를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의 홈페이지 지역-평창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2)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반론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반론보도문 (2)를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

가. 제 목 :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이 지난 2013년 6월 12일「“부동산 사기 부실수사…경찰 징계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사법정의 국민연대 회원 10여명은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한 홍 모 씨 등 4명을 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 이들을 돌봐준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홍 모 씨 등 4명은 최 모 (48.여.평창군 ○○면)씨에게 펜션을 강매하는 등 공갈협박 및 금품을 강탈한 사실이 없으며, 최 모 씨가 자신의 기도터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매매를 원하여 김 모 씨와 박 모 씨 부부는 평소 10억에 매매 하려던 펜션을 8억 3000여 만 원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무속인 홍 모 씨는 이 거래에 어떠한 관련이 없으며, 홍 모 씨 또한 평소 알고 지내던 최 모 씨가 펜션을 구매하는데 있어 어떠한 주장을 한 것이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펜션을 구매한 최 모 씨가 7개월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한 사실도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최 모 씨가 증거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였기에 무혐의 송치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평창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어떠한 유착관계가 전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본지는 지난 6월 12일자 『“부동산 사기 부실수사…경찰 징계해야”』제하의 기사에서 사법정의 국민연대 회원 10여명은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한 홍 모 씨 등 4명을 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 이들을 돌봐준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 홍△△, 김○○, 박○○은 “경찰조사결과 최 모 씨가 증거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였기에 무혐의 송치가 된 것이다”라고 전해왔으며, 평창경찰서 담당 경찰관과의 유착관계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3. 7. 5.자 <강원도민일보> 12면에 보도하되, 제목 활자는 2013. 6. 12.자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부동산 사기 부실수사…경찰 징계해야”』 활자와 동일한 크기와 글씨체로 2단 이상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2013. 7. 5. 09:00부터 7. 7. 09:00까지 2일간 <강원도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ado.net/>) 지역-평창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제목 및 본문활자는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한다. 또한 초기화면 보도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인터넷 조정대상기사(<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30179>) 및 신청인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향후 제3자에 의해 재보도 되었을 경우 삭제요청을 하도록 한다.
5. 피신청인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는 신청인들에게 2013년 7월 31일까지 각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을 피신청인이 이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7. 0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강원도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12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3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 각 1,000,000원 지급

사 례 47

취업 때문에 대학 졸업을 미루는 실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방송에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466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4. 10.

사 건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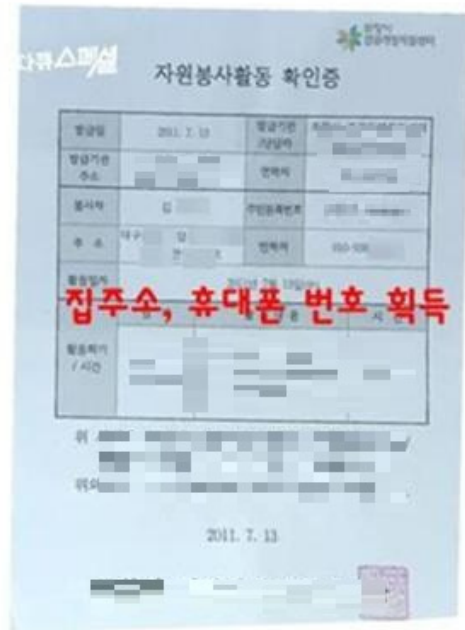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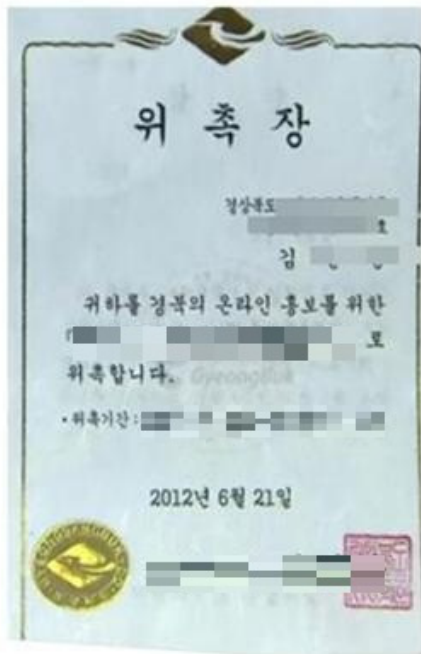
- 피신청인은 좁은 취업문 때문에 대학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이 많아지는 실상에 대한 방송에서 신청인의 대학생활과 관련된 상장과 수료증에 기재되어있는 주민등록번호, 본적지, 현거주지, 핸드폰 번호 및 기타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들을 모자이크처리 없이 그대로 방영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개인 신상이 모두 방송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면서 40,000,000원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함과 더불어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학번)가 노출된 화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며, 추후 해당 조치가 되지 않은 영상이 포털(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등 인터넷에서 발견될 경우(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MBC TV** : 다큐스페셜 프로그램 『대학 5학년, 불편한 청춘』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8일자 23:15)
- **내 용** : (수료증, 임명장, 상장 등이 바닥에 쌓이는 장면)

▷ 멘트 : ○○씨가 지난 4년 동안 쌓은 스펙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했을까 싶은데요.

(방송 화면)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4월 30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원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학번)가 노출된 화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며, 추후 해당 조치가 되지 않은 영상이 포털(블로그, 카페 등) 등 인터넷에서 발견될 경우(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한다.
3. 신청인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4. 2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

사 례 48

트위터 상에서 특정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신청인의 트위터 아이디 등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609 손해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5. 15.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일부 지식인들의 성희롱에 대한 기사에서 성추행 피해자인 신청인의 트위터 아이디를 그대로 기사에 노출시켰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이디가 추후 삭제가 불가능한 종이신문에 그대로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3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주간동아 :** 『진보 지식인들 진짜 그럴래』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일자 28~29면)
- **내 용 :**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고위층 성접대로 말썽을 일으키질 않나, 국회의원이 회의하면서 여성 나체 사진을 보질 않나, 국제○○○○ 인권위원을 지낸 이가 카카오톡으로 딸뻘의 젊은 여성에게 성희롱을 하질 않나. 그런데 거기 아무 상관도 없는 제3의 남자(나는 고○○, 고△△ 두 사람이 성이 같은 남자라는 사실밖에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대한민국 시계가 잠시 씨족사회로 뒷걸음질 쳤나 의아했다)가 피해 여성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질 않나. 그뿐이 아니다. 가수 조○○은 거기에 기름을 붓는다.

조〇〇은 최근 한 TV 연예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 리포터 무릎에 자꾸 손을 얹으려고 시도하면서 몇 번이나 그녀에게 닦달하듯 “사귄래?”, “우리 사귀자”라는 명백한 성희롱을 했다. 우연히 아침에 내 두 눈으로 직접 본 사실이다. 그러더니 조〇〇의 여자친구가 29명이 넘는다는 기사가 나왔다.

아무 상관없는 도덕적 엄숙주의 논란

당시 TV를 보며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신문기자 시절 그를 인터뷰한 경험이 있어서 그가 전형적인 ‘꼰딱남’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았다. 그런데 TV 인터뷰 도중에도 여전히 ‘꼰딱대는’ 모습을 보니 하도 기가 막혀 “나이가 70은 넘었을 테니 ‘노망’ 든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잊어버렸다. 한 사람의 시청자로서 나는 매우 불쾌했는데 당한 여성은 어떨는지 모르겠다. 당사자가 불쾌하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삼기 힘든 것이 바로 성희롱 문제다.

사정이 이러니 여성 처지에서 보자면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여성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에서 이 지경이니 거국적인 특단의 조치라도 내려야 할 것 같다. 하긴 여성 대통령선거(대선) 후보한테 생식기 운운하는 교수도 있었으니 오죽하겠는가.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니 그 말을 했던 교수의 요즘 꿈자리가 어떨지 궁금하다.

그럼 문제의 남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자. 먼저 인권운동가라는 고〇〇 교수. 그는 상대 여성이 그가 한 말들을 폭로하자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다. 변명하자면, 나는 당시 상대방도 그런 대화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과 글을 바로 트위터에 올렸다.

그가 그녀에게 했다는 성희롱적 발언을 시시콜콜 따지지 않겠다. 그런 것들은 대등한 관계의 남녀 성인이 서로 합의했다면 어쩔 수 없는 분야에 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와 관계없는 타인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문제는 “상대방도 그런 대화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그의 변명에 있다. 그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을까. 더구나 피해 여성은 아버지꼴의 50대 남성인 그를 인권운동가로 존경했다고 한다. 남녀 간 서로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다. 여자의 ‘No’는 ‘Yes’라는, 남성의 뿌리 깊은 성차별적 착각이 성희롱과 강간, 성폭력을 부른다.

또 하나. 그는 엄연히 유부남이다. 그러나 한국 남자들은 자기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늘 잊고 사는 것 같다. 성희롱을 일삼으며 성적 자유를 맘껏 누리는 유부남들, 자기 아내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아내에게도 자기와 똑같은 성적 자유를 허용하는지 여론조사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이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유부남들은 여성문제에 관한 한 정말 문제가 많다.

2007년 5월 서울 을지로에서 열린 국제○○○○ 연례보고서 발표회에서 당시 국제○○○○한국 지부 이사장이 글로벌 인권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아래).



20대 여성을 성희롱하는 내용으로 트위터 글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고○○ ○○대 교수가 이후 자신의 SNS에 올린 사과문.



제발 여자에 깔떡대지 마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검색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뒤 거짓해명으로 물의를 일으킨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또 이런 경우에 꼭 나오는 논란이 ‘도덕적 엄숙주의’다. 진보 남성에게만 비판이라도 할라치면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인데, 왜 진보 남성들에게만 도덕적 엄숙주의를 강요하는 불멘소리다. 그러나 성희롱 문제와 도덕적 엄숙주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문제는

그 사건이 성희롱이나 아니냐에 있지, ‘엄숙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자유롭게 성을 구가하는 여성이라도 그녀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해서 안 되는 것이다.

진보 남성들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불평하는 남성들, 정말 무엇이 진보인지 다시 공부해야 한다. 여성은 가장 대표적인 약자다. 여성문제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인권이 어찌고저찌고 떠드는 것은 말짱 개소리다. 여성문제가 인권문제고, 인권문제가 여성문제인 것이다. 그러니 성도덕에서는 보수적 남성들이 차라리 더 낫다는 얘기도 나온다.

두 번째 남자 고△△으로 가보자. 나는 그가 한겨레 기자 시절 썼던 글을 애독하던 한 사람이다. 그는 고○○ 교수의 성희롱 논란을 보면서 피해자의 과거 기록을 뒤져 리트위트해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다. 이번 논란과 상관없는 과거 글들로 피해 여성의 평소 처신을 문제삼는 데 대해 누리꾼의 비난이 잇따르자 그는 “사건 피해자가 강인하고 리버럴하며 독립적 여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리트위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건 또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인가. ‘강인하고 리버럴하며 독립적인 여성’은 성희롱을 당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그의 말에서 진보 남성들이 꿈꾸는 이상형의 여자 모습이 그려진다. 고△△의 논리대로라면 △리버럴(그는 이 말을 개방적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 같다)한 여성은 누구에게나 성희롱을 허용하고 △성희롱을 개의치 않을 정도로 ‘강인하며’ △성희롱을 당해도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거나 상의하지 않는 ‘독립적인’ 여성인 것 같다.

나는 직업으로 글을 쓰는 고△△에게 진정으로 충고를 하나 하고 싶다. 단어 뜻 제대로 알고 쓰라고. △‘리버럴’한 여성은 남자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여성이고 △‘강인한’ 여성은 남자들에게 언감생심 성희롱할 생각은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강한 여성을 의미하며 △‘독립적인’ 여성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표 ‘꼰떡남’ 조○○. 그는 만나는 모든 여성을 나이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로맨스 상대로 보는 것 같다. 그런 걸 페미니스트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라고 표현한다. 그가 얼마나 절륜한 정력을 자랑하는지는 내 알 바 아니지만, 바라건대 제발 여자한테 그만 좀 꼰떡대면 좋겠다. 노추를 넘어 밥맛이다. 대한민국 남자들,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6월 26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6. 1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제 6 장 : 재산상 손해 사례

사 례 49

신청인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강화마루가 층간 소음 차단에 효과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481 정정청구

신 청 인 : ○○ ○○○○(주)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3. 04. 17.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급증하는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방송에서 신청인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강화마루가 층간 소음 차단에 효과가 없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 제조한 강화마루는 다른 바닥재보다 소음저감 효과가 높다는 여러 관련 실험 결과가 있으므로 방송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강화마루의 효과를 광고하는 PR보도를 함과 동시에 KBS미디어 및 피신청인과 콘텐츠 공급계약을 통해 외부에 제공하는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모두 삭제하여, 다시 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중 문제된 ‘강화바닥재(또는 강화마루)’ 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재편집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KBS-2TV** :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 『급증하는 층간소음 문제』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일자 20:50)

- **내 용** : (전략)

▷ 내레이션 : 넘버원에서 소음 관련한 속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끄러운 음악이 있는 곳이라면 한번쯤 설치해본 계란판!! 정말 계란판 효과 있을까요? 정답은, 효과 없음!

자, 두 번째 방법은 강화바닥재! 딱딱한 바닥재가 위층의 소음을 차단해 줄 거라 생각
되지만~ 효과 없습니다~!!



<소음 '차단'의 효과없음을 고지>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에서는 무용지물~ 비싼 시공비용을 들여, 바닥재를 하는 것 대신 저렴한 매트나 슬리퍼를 사용하는 것이 소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 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강화바닥재 ‘층간소음 효과’ 관련 정정보도문

가.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2013년 4월 1일자(377회차)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에서 “층간소음을 해결해 주는 도구는 두꺼운 슬리퍼”편에서 강화바닥재나 강화마루가 층간소음 차단에 효과가 없다고 방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업체 등에 확인한 결과 강화마루는 다른 바닥재에 비하여 바닥 소음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층간 소음 차단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시청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해당업체 등에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제작진은 정중히 사과드리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내용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별지〉 기재 방송대본을 2013년 5월 27일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에 방송한다.
2. 피신청인은 2013년 5월 16일까지 KBS인터넷홈페이지 및 피신청인과 콘텐츠 공급계약을 통해 외부에 제공하는 이 사건 조정대상방송을 모두 삭제하여, 다시 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한다. 단, 이 사건 조정대상방송 중 ‘강화바닥재(또는 강화마루)’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재편집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단, 공식 공급계약에 의해 콘텐츠를 공급하였으나 삭제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2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5. 09.

〈별 지〉

〈 위기탈출 넘버원 〉 제 384회

- MC : 김○○ / 장○○ / 김△△

#1. 오프닝

[MC 위치]

김○○ // 장○○ // 김△△

김○○ : 몸도 튼튼! 안전도 튼튼! 여기는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위기탈출~

다같이 : (오른쪽 엄지손가락 내밀며) 넘버~원!

- 다 같이 환호 & 박수

김○○ : ○○씨, 어젯밤에 잠 잘 못 잤죠?

장○○ : (놀라) 어떻게 알았어요?

김△△ : 에이~ 남자친구랑 밤새.... (놀리듯) 전화했구나!!!

장○○ : (실망) 그랬으면 기분이라도 좋죠. 실은... 밤새!!!

김△△ : 밤새!!

장○○ : 층간소음 때문에 한 숨도 못 잤어요.... 휴우~

김△△ : 그럴 때는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두꺼운 슬리퍼를 신으면 좋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윗집에 선물하세요!!

장○○ : 아! 그렇구나~ 또 좋은 방법 없을까요?

김○○ : 있죠!! 집에 바닥재 선택하실 때 <강화마루>도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 : (좋아하며) 어머!! 나도 신혼집 고를 때 꼭!! 참고 해야겠다!! △△씨는요?

김△△ : 이미 깔았자~ ^^ 김○○씨는요?

김○○ : (한숨) 바닥재만 잘 고르면 뭐합니까? 아직 신부감을 못 골랐는데... 제가 노총각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그날을 위해!! 위기탈출 넘버원!! 시작해볼까요??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KBS-2TV** :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 『강화마루도 층간 소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7일자 20:50)
- **내 용** : <조정성립사항의 별지 참조>

사 례 50

유흥업소 여종업원 살인사건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간판이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367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이채널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3. 09. 10.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유흥업소 여종업원 살인사건과 관련한 방송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 업소와는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간판을 방영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유흥업소 자료화면으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옆 간판과 정면 간판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사용되어 손님들로부터 신청인 가게에 종사하던 여종업원이 살인사건의 피해자인가 하는 질문을 받는 등 부득이 가게 간판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3,5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도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e 채널 : 대한민국 사건파일 No.5 프로그램 『11화 - 진실게임, 죽은 자는 알고 있다』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3일자 23:00)
- 내 용 : ▷ 리포트 : 밝혀진 사망자의 신원은 30살의 여성 곽 모씨.



<신청인 업소 네온 사인 간판>

▷ 리포트 :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그녀는 가족과도 연락이 끊겨 실종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는데...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